

연구총서 10-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The Trend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Violent Crimes in  
Korea

박형민 · 황정인 · 탁종연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황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공무원, 대전지방경찰청 경정

■ 탁종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발간사

폭력범죄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특수한 성격의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더 심각한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유형의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폭력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왜곡되게 보고될 수 있는 폭력범죄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관찰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폭력범죄의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으며, 폭력범죄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의 활동 내용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연구를 통해 갈등이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폭력범죄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구를 수행한 박형민 부연구위원, 황정인 경정, 탁종연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밤을 지새며 현장관찰을 도와주신 박주상 박사, 김연수 박사, 장정현 박사, 최관 박사님과 검찰청 기록조사를 도와주신 이은주 인턴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일수



# CONTENTS

국문요약 .....	17
<b>제1장 서 문</b> .....	23
제1절 문제제기 .....	25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특성 .....	27
1. 공식통계 분석 .....	27
2.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28
3. 현장관찰 .....	29
4. 경찰관 설문조사 .....	30
<b>제2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b> .....	33
제1절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 .....	35
제2절 폭력범죄의 특성 .....	40
1. 발생계절 및 시간 .....	40
2. 발생 장소 .....	46
3. 범죄자 수 .....	48
제3절 폭력 범죄자의 특성 .....	50
1. 사회경제적 특성 .....	50
2. 범죄자 상태 .....	59
3. 범행동기 .....	61
4. 전과 .....	63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처리과정의 특성 .....	66
1. 수사 단서 .....	66

2. 검찰 처리 현황 .....	67
제5절 피해자 .....	70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7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73
제6절 소결 .....	75
<b>제3장 폭력범죄 및 가해자·피해자 특성 .....</b>	<b>77</b>
제1절 사건의 특성 .....	81
1. 발생 계절, 시간 .....	81
2. 장소 .....	84
3. 상호작용 .....	85
4. 공범 .....	86
제2절 가해자 특성 .....	88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89
2. 전과 .....	93
3. 범행당시 상태 .....	95
4. 당사자간 평소 관계 .....	96
5. 동기 .....	99
6. 가해자 행위 및 피해상황 .....	101
7. 범행 후 태도 및 검거 .....	103
제3절 피해자 특성 .....	105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105
2. 범행당시 피해자 상태 .....	106
3.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	107
4. 피해상황 .....	108
5.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 .....	108
제4절 소결 .....	109

<b>제4장 폭력 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b> .....	111
<b>제1절 검찰처리유형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b> .....	113
1. 사회경제적 특성 .....	113
2. 전과 .....	115
3. 상호작용 .....	117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	119
5. 가해자 태도 .....	122
<b>제2절 성별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b> .....	123
1. 사회 경제적 특성 .....	123
2. 전과 .....	125
3. 상호작용 .....	126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	128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	131
<b>제3절 연령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b> .....	133
1. 사회경제적 특성 .....	133
2. 전과 .....	134
3. 상호작용 .....	136
4. 가해자 행위 및 피해 .....	138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	140
<b>제4절 과거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b> .....	142
1. 사회경제적 특성 .....	142
2. 전과 .....	143
3. 가해자 행동 및 피해 .....	145
4. 가해자 태도 및 검거 .....	148
<b>제5절 음주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b> .....	149
1. 사회경제적 특성 .....	149
2. 전과 .....	151

3. 상호작용 .....	152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	155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	158
제6절 소결 .....	159
<b>제5장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b>	<b>163</b>
제1절 현장관찰의 진행 과정 .....	165
1. 현장관찰 전 준비사항 .....	165
2. 현장 들어가기 .....	171
3. 현장관찰 .....	174
4. 심층면접과 기록검토 .....	181
5. 연구의 타당도 점검 .....	183
6. 연구자료 정리방법 .....	185
7. 연구진의 주관성 .....	187
제2절 연구결과 .....	188
1. 언제 어디서 싸우나? .....	188
2.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 .....	190
3. 왜 싸우는가?: 음주와 시빗거리 .....	194
4. 경찰에 알려지게 되는 과정과 이유 .....	202
5. 경찰관서에서의 폭행 당사자들의 태도와 대응 .....	204
6. 합의한 이유 .....	205
7. 경찰의 처리방식 .....	215
제3절 소결 .....	221
1. 폭력의 원인 .....	221
2. 폭력사건의 처리방식 .....	225
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자조사 통계의 오류 .....	226
4. 의의 및 한계 .....	227

<b>제6장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b> .....	229
제1절 경찰관 설문조사의 목적 .....	231
제2절 연구방법 .....	232
1. 표본 .....	232
2. 설문내용 .....	234
제3절 연구결과 .....	235
1. 폭력의 시간과 장소 .....	235
2.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 .....	236
3. 폭력의 원인 .....	239
4. 당사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 .....	241
5. 폭력의 처리결과 .....	242
6.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	245
제4절 소결 .....	247
<b>제7장 요약 및 결론</b> .....	249
제1절 연구요약 .....	251
1. 공식통계상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	251
2.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의 특성 .....	252
3. 폭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	253
4.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본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	255
5.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	256
제2절 결론 .....	256
1. 음주폭력의 하위문화 .....	256
2. 음주를 통한 긴장의 증폭 .....	258
제3절 제언 .....	259
<b>참고문헌</b> .....	261

Abstract .....	263
덧붙임 1. 연구보조원을 위한 참고자료 .....	269
덧붙임 2. 지구대 및 파출소 폭력사건 현장관찰 조사표 .....	272
덧붙임 3. 폭력연구 관찰기록표 .....	279

## 표 차례

〈표 2-1〉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	38
〈표 2-2〉 폭력범죄 계절별 발생현황 .....	42
〈표 2-3〉 범죄 발생시간 (1999~2008) .....	44
〈표 2-4〉 폭력 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 (1999~2008) .....	46
〈표 2-5〉 폭력 범죄 발생장소 (1999~2008) .....	48
〈표 2-6〉 폭력 범죄의 공범 수 .....	50
〈표 2-7〉 폭력 범죄자 성별 .....	51
〈표 2-8〉 폭력 범죄자 범행 시 연령 .....	53
〈표 2-9〉 폭력 범죄자의 교육수준 .....	55
〈표 2-10〉 폭력 범죄자의 직업별 분포 .....	57
〈표 2-11〉 폭력 범죄자의 생활수준 .....	59
〈표 2-12〉 폭력 범죄자 범행 시 정신상태 .....	61
〈표 2-13〉 폭력 범죄자 범행 동기 .....	63
〈표 2-14〉 폭력 범죄자 전과 .....	65
〈표 2-15〉 폭력 범죄의 수사 단서 .....	67
〈표 2-16〉 폭력 범죄자 조치 상황 .....	68
〈표 2-17〉 폭력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결과 .....	69
〈표 2-18〉 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	72
〈표 2-19〉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74
〈표 3-1〉 폭력범죄 사례의 분포 .....	80
〈표 3-2〉 발생 계절 .....	81
〈표 3-3〉 죄명, 장소별 발생계절 .....	82
〈표 3-4〉 발생 시간 .....	83
〈표 3-5〉 죄명, 장소별 발생시간 .....	83
〈표 3-6〉 범행 장소 .....	84
〈표 3-7〉 죄명, 장소별 범죄 발생 장소 .....	85

〈표 3-8〉 가해자-피해자간 상호작용 여부 .....	86
〈표 3-9〉 죄명, 장소별 가해자-피해자간 상호작용 여부 .....	86
〈표 3-10〉 범죄자수 .....	86
〈표 3-11〉 죄명, 장소별 범죄자수 .....	87
〈표 3-12〉 공범자의 성별 .....	88
〈표 3-13〉 죄명, 장소별 공범자의 성별 .....	88
〈표 3-14〉 가해자 및 피해자 분포 .....	89
〈표 3-15〉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징 .....	90
〈표 3-16〉 가해자의 주거지와 교육수준 .....	91
〈표 3-17〉 가해자 직업 .....	92
〈표 3-18〉 가해자 전과횟수 .....	94
〈표 3-19〉 가해자 범행 시 음주 상태 .....	95
〈표 3-20〉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 및 감정 .....	97
〈표 3-21〉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 .....	98
〈표 3-22〉 갈등의 원인 제공자 .....	99
〈표 3-23〉 가해자 범행동기 .....	100
〈표 3-24〉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	101
〈표 3-25〉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	102
〈표 3-26〉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	103
〈표 3-27〉 검거경위 .....	104
〈표 3-28〉 피해자 사례 수집 장소 .....	105
〈표 3-29〉 피해자 사회경제적 특성 .....	106
〈표 3-30〉 범행 시 음주 상태 .....	107
〈표 3-31〉 피해자의 피해 정도 .....	108
〈표 3-32〉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	109
〈표 4-1〉 검찰 처리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	114
〈표 4-2〉 검찰 처리유형별 전과횟수 .....	116
〈표 4-3〉 검찰 처리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 및 갈등 존재 여부 .....	117
〈표 4-4〉 검찰 처리유형별 내용 및 갈등의 원인 제공자 .....	118

〈표 4-5〉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120
〈표 4-6〉 검찰 처리유형별 도구사용여부	121
〈표 4-7〉 검찰 처리유형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122
〈표 4-8〉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123
〈표 4-9〉 성별 사회 경제적 특성	124
〈표 4-10〉 성별 전과횟수	125
〈표 4-11〉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 존재 여부	127
〈표 4-12〉 성별 갈등의 주된 내용 및 원인 제공자	127
〈표 4-13〉 성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129
〈표 4-14〉 성별 범행 시 사용한 도구	130
〈표 4-15〉 성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131
〈표 4-16〉 성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132
〈표 4-17〉 성별 검거 경위	132
〈표 4-18〉 연령별 교육수준	133
〈표 4-19〉 연령별 전과횟수	135
〈표 4-20〉 연령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 존재 여부	136
〈표 4-21〉 연령별 갈등의 주된 내용 및 원인 제공자	137
〈표 4-22〉 연령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138
〈표 4-23〉 연령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139
〈표 4-24〉 연령별 범행 시 사용한 도구	140
〈표 4-25〉 연령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141
〈표 4-26〉 연령별 검거 경위	141
〈표 4-27〉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교육수준	143
〈표 4-28〉 사건전 상호작용 유무별 전과횟수	144
〈표 4-29〉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145
〈표 4-30〉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146
〈표 4-31〉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147
〈표 4-32〉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148
〈표 4-33〉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검거 경위	149

〈표 4-34〉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0
〈표 4-35〉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전과 .....	151
〈표 4-36〉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	153
〈표 4-37〉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갈등의 주된 내용 및 원인 제공자 .....	154
〈표 4-38〉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	155
〈표 4-39〉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시 사용한 도구 .....	156
〈표 4-40〉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피해 정도 .....	157
〈표 4-41〉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	158
〈표 4-42〉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검거 경위 .....	159
〈표 5-1〉 참여관찰 경찰관서의 특성 .....	172
〈표 5-2〉 경찰서별 관찰일정 .....	177
〈표 5-3〉 4개 파출소와 지구대의 7월 한 달간 폭력신고사건 처리결과 .....	221
〈표 6-1〉 응답 경찰관들의 인적 특성 및 근무부서 .....	233
〈표 6-2〉 가장 최근에 접한 폭력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간 .....	235
〈표 6-3〉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특성 .....	237
〈표 6-4〉 폭력의 구체적인 모습 .....	239
〈표 6-5〉 폭력의 원인과 당사자 관계 .....	240
〈표 6-6〉 폭력당사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 .....	241
〈표 6-7〉 폭력사건의 처리결과와 이유 .....	242
〈표 6-8〉 피해자와 가해자의 폭력피해 정도와 폭력사건의 처리결과 .....	243
〈표 6-9〉 가해자의 경찰에 대한 태도와 폭력사건의 처리결과 .....	244
〈표 6-10〉 당사자들의 경찰관 공격정도와 정식처리결과 .....	245
〈표 6-11〉 폭력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	246

## 그림 차례

〈그림 2-1〉 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	39
〈그림 2-2〉 폭력범죄의 검거 건수 .....	39
〈그림 2-3〉 폭력범죄의 검거인원 .....	40
〈그림 5-1〉 2010년 7월 4개 자·파출소에 신고 된 폭력사건의 시간대별 분포도 ...	189
〈그림 5-2〉 폭력사건의 발생순서도 .....	222
〈그림 5-3〉 일선 경찰의 폭력사건 처리순서도 .....	225



폭력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식통계상으로 폭력범죄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연구 목적상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그런데 이들 폭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공식통계조사와 범죄피해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통계는 숨은 범죄의 양이 매우 크다는 사실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대다수를 놓치게 되고, 범죄피해조사는 보고자의 기억의 오류나 왜곡 등 자기응답식조사의 한계로 인해 편이(bias)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현장 관찰조사, 경찰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특히 현장관찰은 범죄학 분야에서 매우 드물게 선택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약 5주에 걸쳐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 방문하여 폭력범죄자의 특성 및 처리과정에 대해 관찰하였다.

## 1. 공식통계상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공식통계상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는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길거리나 업무지구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남성 20대 또는 30대가 많으며,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폭력범죄를 인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매우 많으며,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다.

## 2. 제3장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의 특성

수사 및 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입건하여 처리한 사건들로서 주로 봄이나 여름에 발생하며, 심야나 새벽시간(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범이 있는 범죄이며, 또 이들 중 1/3가량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은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순수 가해자는 회사원과 학생이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무직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순수 가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과횟수가 많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순수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화가난 상태(분노)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행위로 발전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나 행위들은 순수 가해자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3. 폭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폭력범죄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규제한 법률에 따라 그 특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 당사자들끼리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음주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30대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20세 이하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전과가 없거나 1회에 불과한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범죄자 중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경우 불기소처리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인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극단값들이 많았다.

남성들은 20대와 30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들은 20세 이하와 50대-60대 가해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여성들은 갈등여부, 호감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전부터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은 남성에게는 모욕이나 비하로 인한 갈등과 업무상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았던 반면, 여성에게는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가 원인이었던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들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의를 원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여성들은 갈등이 오래 지속된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고, 싸움 이후에도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 이전에 상호작용이 없었거나 당일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으나, 30대 이상의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우와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역시 30대에 비해 많았다. 20대 이하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전 서로 아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전과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사건 중에 협박, 위협, 도구사용 등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비율도 2/5가량 되었다.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과 싸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모르는 사람과 싸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대와 40대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주자들은 애정문제, 가정불화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갈등의 제공자는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경우 가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술을 마시고 싸운 경우 맥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싸웠다. 이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술을 마시고 싸운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 4.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본 폭력범죄의 특성

한국의 폭력사건은 거시적으로는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은 술에 취한 젊은 남자들이 술집이나 술집거리에서 야간에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위문화의 독특한 가치체계와 행위규범에 따라 술은 마시고 가벼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있을 수 있는 실수로서 상대방의 용서만 구하면 기본적으로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조차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의 폭력사건은 주로 술에 취한 당사자에게 부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나이에 대한 대접을 소홀하게 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정의에 위반하여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때 폭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나이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때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다.

#### 5.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경찰관들의 처리방식은 기본적으로 화해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우선 자신들이 인지한 폭력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심각성이 높은 사건은 바로 공식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거나 직접 합의를 유도하고, 실제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벼운 경고나 지도장 발부 등만 할 뿐 공식적인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결과나 면접내용을 종합해볼 때 경찰관들이 인지한 사건 중 정식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0%이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제1장

서 문



# 01 서문

## 제1절 문제제기

폭력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는 살인, 방화, 강간 등과 같이 심각한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으로는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과 피해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폭력범죄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폭력범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폭력범죄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다툼에서 시작하여 어찌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시시하게’ 종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 중에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폭력범죄는 학계나 실무계의 관심을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범죄는 그 피해가 아무리 적고 사소하다 하더라도 다른 심각한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폭력범죄인 살인의 경우 폭력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절반가까이 되고 있으며(박형민, 2003), 경미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이 범죄로

인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폭행과 상해 등의 죄명으로 규제되는 폭력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일선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거의 매일 이와 같은 범죄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폭력범죄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범죄학적 과제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폭력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며, 폭력에 대한 의식조사 등만 일부 수행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이고 사소한 폭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살인과 같이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여 변사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범죄 암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개인들간의 폭력행위는 그 수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공식통계상의 폭력범죄는 2008년 현재 폭행 107,947건, 상해 86,924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7,227건 등의 발생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러한 공식 통계는 실제 범죄의 극히 일부분만 나타낼 뿐이다. 또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피해조사에서 폭력범죄의 현황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어렵다.<sup>1)</sup>

그렇다면 폭력범죄의 실태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즉 본 연구는 일상생활 중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소한 폭력사건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후 폭처법이라 줄여 사용하기도 함) 등으로 규제되는 범죄’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1) 범죄피해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폭력사건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폭력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설문 조사원에게 자신의 폭력경험을 모두 상세히 보고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응답자가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의 맞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약 1년 후에 조사원이 나눠준 설문지에 이를 그대로 기록하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조사에서는 응답자 자신이 음주를 했는지, 쌍방폭행사건의 한 당사자는 아니었는지 여부 등은 중요한 내용을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폭력범죄의 실태를 현실에 가깝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동원하여 폭력범죄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하나의 자료들은 그 한계가 명확하여 폭력범죄의 일면만을 보여줄 뿐이지만, 여러 면들이 동시에 제시된다면 폭력범죄의 모습을 사실에 가깝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식통계 분석, 수사및재판기록 분석, 현장관찰조사, 경찰관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폭력범죄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일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에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의 전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 1. 공식통계 분석

먼저 범죄에 관한 가장 일차적인 접근방법인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식통계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통계를 분석하였다.

공식범죄통계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즉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통계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시민과 경찰단계에서 걸러지고 남은 소수의 사건들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즉, 공식통계에는 피해자가 폭력사건으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폭력사건으로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사건, 소위 입건된 사건만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폭력사건들은 경찰관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른바 숨

은 범죄(hidden crimes)로 남게 되며, 현실적으로 폭력범죄의 암수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실제 폭력범죄의 일부분일 뿐이며,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실태는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이것이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된 폭력범죄의 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전체 폭력범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드러난 폭력범죄의 전수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년 같은 틀로 집계되는 공식통계는 통시적인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공식통계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한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공식통계를 자료로한 분석은 제2장에서 다루었다.

## 2.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다음으로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사 및 재판기록은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한 범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경찰 및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대부분의 정보를 집적해 놓은 자료이다. 즉 폭력범죄가 발생하여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이후에는 수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범죄자가 체포되어 처분이 완료되기까지의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및 재판기록의 분석은 이러한 공식문서의 내용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역시 표본의 측면에서 공식통계와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공식 기록은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폭력범죄의 일부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기록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공식통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식통계 작성자가 간과하여 중요시하지 않은 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 맞는 분석틀을 가지고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범죄자들과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면접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범죄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각각의 입장에서 청취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진술들과 사건 당시의 정황, 심리적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나 맥락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은 원자료(raw data)를 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간의 교차분석 등 공식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기록의 분석을 통해 폭력범죄의 특성과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해 보다 세밀한 기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폭력범죄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각 1곳의 검찰청을 선정하여 2009년에 발생한 폭력사건 중 해당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 목록의 사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수사기록을 양화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록조사를 위해 선정된 검찰청은 제5장에서 분석된 현장관찰조사의 조사지역과 연계를 가진 지역이다. 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3곳의 경찰서 산하의 8개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과정을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는데, 기록조사의 대상이 된 검찰청은 현장관찰을 수행한 각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검찰청이다.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분석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루었다.

### 3. 현장관찰

폭력범죄의 실태를 나타내는 데에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폭력범죄가 일선 경찰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어 처리되는 폭력범죄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식통계에 나타나는 폭력범죄와 그렇지 않은 폭력범죄의 편차를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폭력범죄가 상당히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유추할 수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었지만 공식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부분은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진들은 일선 경찰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대한 현장관찰을 수행하여 폭력범죄가 일선 경찰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범죄통계와 피해조사자료 사이의 차이가 단순히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경찰단계에서 상당수가 걸러지기 때문이었다(탁종연, 2006; 황지태, 2010). 따라서 시민들이 신고한 폭력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식통계로 기록되거나 제외되는지, 경찰이 인지한 폭력사건 중 어느 정도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지,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과 과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탐구는 폭력범죄 전체 윤곽을 그려내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현장관찰의 결과는 제5장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현장관찰이라는 방법은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본 연구진이 현장관찰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행착오는 이후의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현장관찰의 준비 및 진행과정을 제5장에서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 4. 경찰관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폭력사건을 일선에서 접하는 경찰관들이 인식하는 폭력사건의 실태와 처리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는 제5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장관찰을 통해 폭력사건의 처리실태와 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으나, 연구방법의 특성상 일부 지역의 사례만을 다룰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한 폭력사건의 처리실태와 과정이 선정된 지역의 특수성 때문인지, 모든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인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할 수 밖

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돕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폭력사건 처리과정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는 이와같은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즉 질적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을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6장에서 수행되었다.



## 제2장

#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식통계상으로 폭력범죄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연구 목적상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식통계상에 나타나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 발생의 추세 및 범죄자,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폭력범죄 내에서 죄명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제1절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

먼저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발생 건수를 합하여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지난 10년간 폭력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1999년 273,471건, 2000년 319,602건, 2001년 322,053건, 2002년 270,218건, 2003년 279,732건, 2004년 270,644건, 2005년 274,311건, 2006년 244,438건, 2007

년 247,778건, 2008년 252,098건 등으로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상해범죄는 1999년 30,836건, 2000년 33,002건, 2001년 32,598건, 2002년 29,373건, 2003년 30,955건, 2004년 31,701건, 2005년 31,238건, 2006년 79,542건, 2007년 93,178건, 2008년 86,924건 등의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30,000건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폭행범죄 역시 상해범죄와 발생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1999년 12,201건, 2000년 16,836건, 2001년 17,224건, 2002년 16,094건, 2003년 18,721건, 2004년 17,382건, 2005년 19,463건, 2006년 64,235건, 2007년 97,598건, 2008년 107,947건 등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약간의 증가추세이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폭행범죄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해범죄보다 발생건수가 크게 낮았으나, 2006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2007년부터는 상해범죄 발생 건수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발생 추세는 1999년 230,434건, 2000년 269,764건, 2001년 272,231건, 2002년 224,751건, 2003년 230,056건, 2004년 221,561건, 2005년 223,610건, 2006년 100,661건, 2007년 57,002건, 2008년 57,227건 등으로 2000년과 2001년에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 감소하여 200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2006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발생 건수를 합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를 살펴 보았을 때, 2002년 이후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식통계상 2006년 이후 상해와 폭행이 증가하고 폭처법 위반 사건이 감소한 것은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크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이 달라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2005년까지는 폭처법위반사건으로 처리되었던 많은 사건이 2006년 이후에는 상해 또는 폭행사건으로 처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폭력범죄자의 검거 건수를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폭력범죄의 검거 건수는 1999년 270,000건, 2000년 297,985건, 2001년 298,445건, 2002년 254,965건, 2003년 260,775건, 2004년 259,217건, 2005년 252,168건, 2006년 230,141건, 2007년 235,255건, 2008년 240,235건 등으로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 크게 감소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상해범죄의 검거 건수 역시 1999년 30,798건, 2000년 32,251건, 2001년 31,978건, 2002년 29,090건, 2003년 30,533건, 2004년 30,944건, 2005년 29,806건, 2006년 77,495건, 2007년 89,750건, 2008년 83,841건 등으로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폭행범죄 검거 건수도 1999년 11,607건, 2000년 15,125건, 2001년 15,569건, 2002년 14,696건, 2003년 15,838건, 2004년 16,353건, 2005년 17,956건, 2006년 60,641건, 2007년 92,486건, 2008년 102,915건 등으로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폭처법 검거건수도 1999년 227,595건, 2000년 250,609건, 2001년 250,898건, 2002년 211,179건, 2003년 214,404건, 2004년 211,920건, 2005년 204,406건, 2006년 92,005건, 2007년 53,019건, 2008년 53,479건 등으로 발생 추세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은 1999년 459,689명, 2000년 509,430명, 2001년 509,788명, 2002년 426,565명, 2003년 425,860명, 2004년 352,864명, 2005년 377,193명, 2006년 342,736명, 2007년 385,602명, 2008년 389,980명 등으로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은 발생 추세 및 검거 추세와 동일하지만, 2002년 이후 감소하는 폭은 발생 추세나 검거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2-3〉 참조).

그리고 폭력 범죄 각 법률유형에 대한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상해범죄 검거인원은 1999년 41,751명, 2000년 43,599명, 2001년 43,822명, 2002년 38,360명, 2003년 40,989명, 2004년 32,607명, 2005년 38,169명, 2006년 101,425명, 2007년 124,945명, 2008년 116,663명 등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폭행범죄 검거인원은 1999년 15,758명, 2000년 20,846명, 2001년 21,712명, 2002년 19,816명, 2003년 21,017명, 2004년 17,522명, 2005년 22,896명, 2006년 77,680명, 2007년 127,656명, 2008년 142,902명 등의 추세를 나타내어 200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큰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변화가 없다가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폭처법 검거인원은 1999년 402,180명, 2000년 444,985명, 2001년 444,254명, 2002년 368,389명, 2003년 363,854명, 2004년 302,735명, 2005년 316,128명, 2006년 163,631명, 2007년 133,001명, 2008년 130,415명 등으로 2006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표 2-1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폭력 범죄	발생건수	273,471	319,602	322,053	270,218	279,732	270,644	274,311	244,438	247,778	252,098
	발생비	586.64	679.89	680.04	567.43	584.49	563.38	569.84	506.11	511.34	518.64
	검거건수	270,000	297,985	298,445	254,965	260,775	259,217	252,168	230,141	235,255	240,235
	검거인원	459,689	509,430	509,788	426,565	425,860	352,864	377,193	342,736	385,602	389,980
상해	발생건수	30,836	33,002	32,598	29,373	30,955	31,701	31,238	79,542	93,178	86,924
	발생비	66.15	70.2	68.83	61.68	64.68	65.99	64.89	164.69	192.29	178.83
	검거건수	30,798	32,251	31,978	29,090	30,533	30,944	29,806	77,495	89,750	83,841
	검거율	99.88	97.72	98.1	99.04	98.64	97.61	95.42	97.43	96.32	96.45
	검거인원	41,751	43,599	43,822	38,360	40,989	32,607	38,169	101,425	124,945	116,663
폭행	발생건수	12,201	16,836	17,224	16,094	18,721	17,382	19,463	64,235	97,598	107,947
	발생비	26.17	35.82	36.37	33.8	39.12	36.18	40.43	133.0	201.41	222.08
	검거건수	11,607	15,125	15,569	14,696	15,838	16,353	17,956	60,641	92,486	102,915
	검거율	95.13	89.84	90.39	91.31	84.6	94.08	92.26	94.4	94.76	95.34
	검거인원	15,758	20,846	21,712	19,816	21,017	17,522	22,896	77,680	127,656	142,902
폭처법	발생건수	230,434	269,764	272,231	224,751	230,056	221,561	223,610	100,661	57,002	57,227
	발생비	494.32	573.87	574.84	471.95	480.69	461.21	464.52	208.42	117.64	117.73
	검거건수	227,595	250,609	250,898	211,179	214,404	211,920	204,406	92,005	53,019	53,479
	검거율	98.77	92.9	92.16	93.96	93.2	95.65	91.41	91.4	93.01	93.45
	검거인원	402,180	444,985	444,254	368,389	363,854	302,735	316,128	163,631	133,001	130,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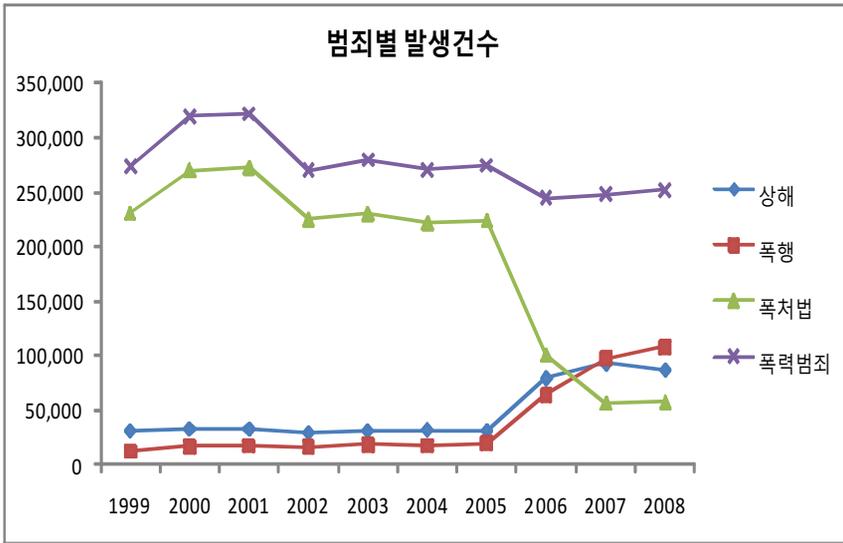


그림 2-1 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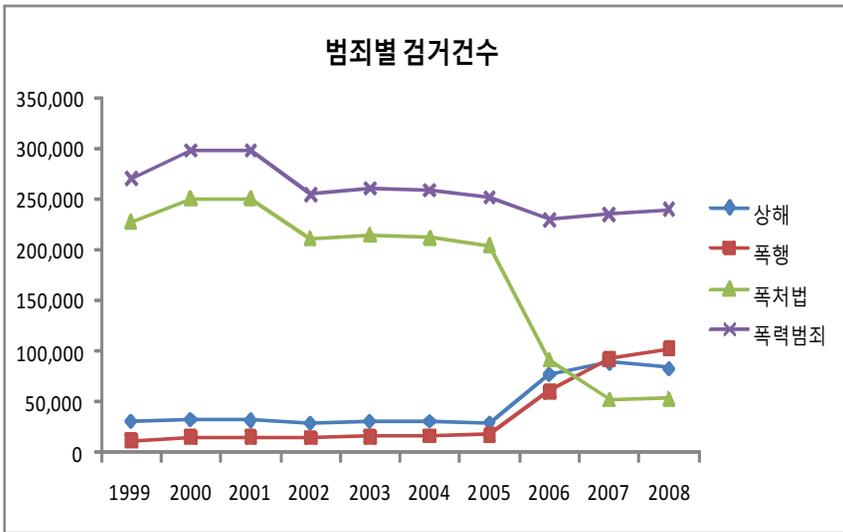


그림 2-2 폭력범죄의 검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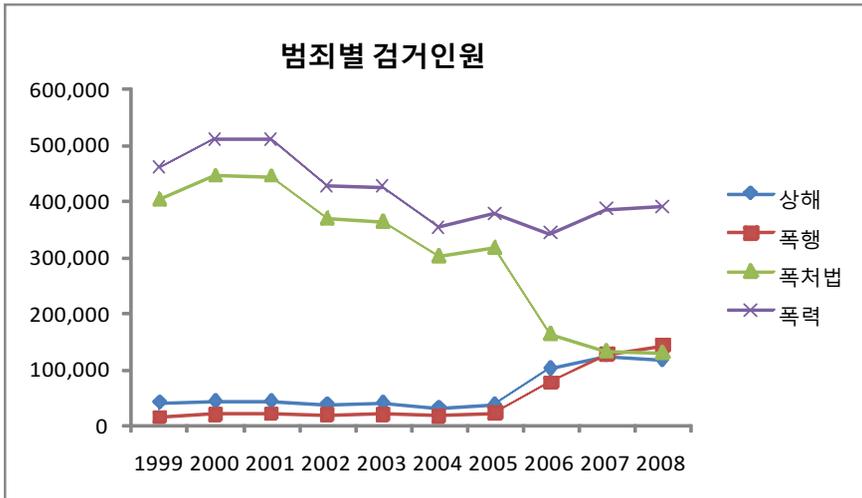


그림 2-3 폭력범죄의 검거인원

## 제2절 폭력범죄의 특성

### 1. 발생계절 및 시간

상해범죄의 계절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5.7%, 2001년 23.9%, 2002년 24.6%, 2003년 24.5%, 2004년 23.9%, 2005년 24.4%, 2006년 23.5%, 2007년 20.6%, 2008년 24.4%, 2009년 23.4%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33.4%, 2001년 32.7%, 2002년 32.3%, 2003년 30.2%, 2004년 31.8%, 2005년 31.2%, 2006년 30.7%, 2007년 31.4%, 2008년 27.5%, 2009년 27.4%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을에 발생한 사건은 2000년 24.2%, 2001년 24.3%, 2002년 24.7%, 2003년 25.8%, 2004년 26%, 2005년 24.6%, 2006년 26.4%, 2007년 33.5%, 2008년 25.3%, 2009년 26.4%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겨울에 발생한 사건은 2000년 16.0%, 2001년 18.3%, 2002년 17.7%, 2003년 18.9%, 2004년 17.6%, 2005년 19.2%, 2006년 18.9%, 2007년 13.9%, 2008년 22.1%, 2009년 22.2%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상해범죄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행범죄의 경우에도, 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4.5%, 2001년 24.4%, 2002년 25.2%, 2003년 25%, 2004년 23.3%, 2005년 24.6%, 2006년 22.6%, 2007년 19.6%, 2008년 23.9%, 2009년 23.2%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32.1%, 2001년 30.8%, 2002년 30.3%, 2003년 29.3%, 2004년 31.3%, 2005년 30.3%, 2006년 30.7%, 2007년 31.1%, 2008년 27.2%, 2009년 26.6%, 가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5.8%, 2001년 25.5%, 2002년 24.8%, 2003년 24.9%, 2004년 26.3%, 2005년 25%, 2006년 27.3%, 2007년 34.7%, 2008년 26.4%, 2009년 27.5%,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17.0%, 2001년 18.9%, 2002년 19.0%, 2003년 20.4%, 2004년 18.3%, 2005년 19.5%, 2006년 18.7%, 2007년 14.0%, 2008년 21.9%, 2009년 22.2% 등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폭행범죄의 계절별 발생 분포는 2008년 이후 계절별 격차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해범죄와 마찬가지로 여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처범의 경우에는 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3.6%, 2001년 23.8%, 2002년 24.5%, 2003년 25.6%, 2004년 24.9%, 2005년 25.1%, 2006년 23.8%, 2007년 30.4%, 2008년 24.9%, 2009년 23.6%,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6.7%, 2001년 26.2%, 2002년 26.5%, 2003년 24.1%, 2004년 25.8%, 2005년 25.6%, 2006년 25.2%, 2007년 15.4%, 2008년 26.8%, 2009년 26.4%, 가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7.4%, 2001년 25.7%, 2002년 25.4%, 2003년 25.7%, 2004년 26.3%, 2005년 24.9%, 2006년 26.5%, 2007년 15.7%, 2008년 25.4%, 2009년 26.9%,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21.9%, 2001년 23.8%, 2002년 22.9%, 2003년 24%, 2004년 22.6%, 2005년 23.8%, 2006년 23.9%, 2007년 37.7%, 2008년 22.2%, 2009년 22.4% 등의 분포를 나타내어, 대체로 겨울에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미미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계절별 격차는 다른 범죄에 비해 크지는 않았다.

표 2-2 폭력범죄 계절별 발생현황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상 해	봄	3월	7.3	7.7	7.1	6.6	7.1	7.7	7	2.8	7.6	7.1
		4월	8.4	7	7.9	8.2	7.7	7.7	7.6	7.4	8.1	7.9
		5월	10	9.2	9.6	9.7	9.1	9	8.9	10.4	8.7	8.4
		소계	25.7	23.9	24.6	24.5	23.9	24.4	23.5	20.6	24.4	23.4
	여름	6월	10.9	10.8	10.4	9.3	10.2	10.5	9.9	10.3	8.8	9.2
		7월	11.8	11	11.3	10.9	11.2	10.9	10.3	10.7	9.5	9.6
		8월	10.7	10.9	10.6	10	10.4	9.8	10.5	10.4	9.2	8.6
		소계	33.4	32.7	32.3	30.2	31.8	31.2	30.7	31.4	27.5	27.4
	가을	9월	9.7	9.2	9.5	9.4	9.5	8.6	9.7	11.4	7.5	9.4
		10월	8.0	8.0	8.2	9.1	9.3	8.5	8.6	11.2	9.6	8.9
		11월	6.5	7.1	7.0	7.3	7.2	7.5	8.1	10.9	8.2	8.1
		소계	24.2	24.3	24.7	25.8	26	24.6	26.4	33.5	25.3	26.4
	겨울	12월	5.9	6.5	6.3	6.4	6.3	6.7	7.0	9.3	7.1	8.4
		1월	5.1	6.4	5.7	6.9	5.7	6.4	7.3	2.4	8.4	7.9
		2월	5.0	5.4	5.7	5.6	5.6	6.1	4.6	2.2	6.6	5.9
		소계	16	18.3	17.7	18.9	17.6	19.2	18.9	13.9	22.1	22.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 행	봄	3월	6.9	8.2	8.0	7.0	6.9	8.0	6.7	2.6	7.4	7.1
		4월	7.9	7.1	7.6	8.4	7.6	7.6	7.0	6.9	8.0	7.8
		5월	9.7	9.1	9.6	9.6	8.8	9.0	8.9	10.1	8.5	8.3
		소계	24.5	24.4	25.2	25.0	23.3	24.6	22.6	19.6	23.9	23.2
	여름	6월	10.2	9.8	9.4	9.1	10.6	10.3	9.8	10.1	8.7	9.0
		7월	11.0	10.7	10.2	10.7	10.9	10.2	10.5	10.4	9.4	9.2
		8월	10.9	10.3	10.7	9.5	9.8	9.8	10.4	10.6	9.1	8.4
		소계	32.1	30.8	30.3	29.3	31.3	30.3	30.7	31.1	27.2	26.6
	가을	9월	10.3	9.5	9.1	9.1	9.7	8.5	10.3	11.4	7.8	9.6
		10월	8.0	8.4	8.6	8.9	9.0	8.5	8.8	12.1	9.8	9.5
		11월	7.5	7.6	7.1	6.9	7.6	8.0	8.2	11.2	8.8	8.4
		소계	25.8	25.5	24.8	24.9	26.3	25	27.3	34.7	26.4	27.5
	겨울	12월	6.6	6.6	7.5	6.1	7.5	7.2	7.2	10.2	8.2	9.2
		1월	5.3	6.2	5.7	8.2	5.2	5.9	6.7	1.9	7.4	7.3
		2월	5.1	6.1	5.8	6.1	5.6	6.4	4.8	1.9	6.3	5.7
		소계	17.0	18.9	19.0	20.4	18.3	19.5	18.7	14.0	21.9	22.2

## 제2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봄	3월	7.6	8.6	8.1	8.0	8.3	8.8	7.9	16.0	8.0	7.2
		4월	7.7	7.1	7.7	8.6	8.2	7.7	7.7	8.2	8.0	8.1
		5월	8.3	8.1	8.7	9.0	8.4	8.6	8.2	6.2	8.9	8.3
		소계	23.6	23.8	24.5	25.6	24.9	25.1	23.8	30.4	24.9	23.6
	여름	6월	8.4	8.5	8.6	7.6	8.3	8.7	8.3	5.6	8.5	9.1
		7월	8.9	8.7	8.9	8.4	9.1	8.7	8.3	5.1	9.5	9.1
		8월	9.4	9.0	9.0	8.1	8.4	8.2	8.6	4.7	8.8	8.2
		소계	26.7	26.2	26.5	24.1	25.8	25.6	25.2	15.4	26.8	26.4
	가을	9월	9.8	8.7	8.8	8.5	9.1	7.9	8.9	5.0	7.4	9.6
		10월	9.2	8.7	8.7	9.3	9.2	8.6	9.0	5.2	9.2	9.3
		11월	8.4	8.3	7.9	7.9	8.0	8.4	8.6	5.5	8.8	8
		소계	27.4	25.7	25.4	25.7	26.3	24.9	26.5	15.7	25.4	26.9
	겨울	12월	8.5	8.5	7.5	8.1	7.8	8.3	8.2	4.5	7.5	9.2
		1월	7.2	8.5	8.1	9.1	7.7	8.2	9.5	17.6	8.1	7.3
		2월	6.2	6.8	7.3	6.8	7.1	7.3	6.2	15.6	6.6	5.9
		소계	21.9	23.8	22.9	24	22.6	23.8	23.9	37.7	22.2	22.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력범죄의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시간으로서 1999년 26.2%, 2000년 26.4%, 2001년 25.6%, 2002년 24.9%, 2003년 24.8%, 2004년 26.9%, 2005년 27.8%, 2006년 14.6%, 2007년 12.4%, 2008년 12.4% 등의 발생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전시간으로 1999년 11.4%, 2000년 11.7%, 2001년 11.7%, 2002년 11.0%, 2003년 11.0%, 2004년 12.0%, 2005년 12.6%, 2006년 6.7%, 2007년 5.5%, 2008년 5.5% 등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는 오전시간과 오후시간에 발생한 상해사건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에 밤시간에 발생한 사건의 비율이 2006년 35.0% 2007년 39.1%, 2008년 38.3% 등으로 급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폭행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시간대로서 1999년 24.6%, 2000년 24.0%, 2001년 23.7%, 2002년 22.8%, 2003년 22.9%, 2004년 27.3%, 2005년 27.7%, 2006년 13.5%, 2007년 11.4%, 2008년 11.6%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오전 시간대에 1999년 10.9%, 2000년 10.2%, 2001년 10.8%, 2002년

10.6%, 2003년 10.1%, 2004년 11.4%, 2005년 11.8%, 2006년 5.8%, 2007년 4.7%, 2008년 4.9%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역시 상해와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에는 오후와 오전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대신 밤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폭처법은 밤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 1999년 52.2%, 2000년 51.9%, 2001년 49.6%, 2002년 48.3%, 2003년 48.4%, 2004년 58.3%, 2005년 59.2%, 2006년 50.4%, 2007년 41.0%, 2008년 39.1% 등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된 것과 관련된다. 이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②에서는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은 폭처법으로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야간’ 규정이 삭제되어 이전에 폭처법으로 규제되었던 많은 폭력범죄가 형법의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규제된 것이다. 이것은 앞에 제시된 <표 2-1>에서 2006년 이후 폭처법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상해 또는 폭행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표 2-3 범죄 발생시간 (1999~2008)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새벽	1.8	1.8	2.2	2.0	2.0	2.4	2.5	5.5	6.3	6.3
	아침	4.6	4.7	5.0	4.9	5.0	5.8	6.0	3.2	2.9	2.9
	오전	11.4	11.7	11.7	11.0	11.0	12.0	12.6	6.7	5.5	5.5
	오후	26.2	26.4	25.6	24.9	24.8	26.9	27.8	14.6	12.4	12.4
	저녁	5.6	5.2	5.0	4.7	4.9	5.4	5.6	5.8	5.9	5.8
	밤	3.3	2.6	2.3	3.1	2.9	1.9	2.0	35.0	39.1	38.3
	미상	9.0	8.9	10.6	13.0	13.0	6.2	2.6	7.4	9.5	1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새벽	2.2	2.7	2.7	2.9	2.6	2.7	2.9	6.0	6.8	6.7
	아침	4.3	4.5	4.8	4.4	4.5	5.6	5.9	2.9	2.6	2.7
	오전	10.9	10.2	10.8	10.6	10.1	11.4	11.8	5.8	4.7	4.9
	오후	24.6	24.0	23.7	22.8	22.9	27.3	27.7	13.5	11.4	11.6
	저녁	5.6	5.6	5.4	5.1	5.1	5.8	6.0	5.9	6.0	5.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밤	5.8	5.7	5.2	7.6	9.3	3.2	3.3	38.1	42.4	41.8
	미상	10.4	12.6	12.5	12.7	12.0	4.8	2.6	8.0	9.6	9.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새벽	6.2	7.1	7.2	7.2	6.7	8.4	8.4	7.9	7.3	6.8
	아침	0.9	0.9	0.9	1.0	0.9	1.1	1.0	1.6	2.4	2.6
	오전	2.8	2.7	3.0	2.8	2.7	1.8	1.7	3.1	4.3	4.5
	오후	5.2	5.3	5.1	5.2	5.5	4.8	4.7	8.0	12.2	12.4
	저녁	4.9	4.7	4.3	4.1	4.3	5.8	6.1	6.8	5.8	5.9
	밤	52.2	51.9	49.6	48.3	48.4	58.3	59.2	50.4	41.0	39.1
	미상	19.4	18.8	21.3	22.9	22.9	13.0	12.0	10.6	10.2	11.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새벽: 04:00 ~ 06:59, 오전: 09:00 ~ 11:59, 오후: 12:00 ~ 17:59, 저녁: 18:00 ~ 19:59, 아침: 07:00 ~ 08:59, 밤: 20:00 ~ 03:59

폭력 범죄의 요일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상해와 폭행의 경우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상해의 경우 토요일이 2006년 14.9%, 2007년 15.2%, 2008년 15.5%, 일요일이 2006년 14.3%, 2007년 14.5%, 2008년 14.5% 등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폭행의 경우도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이 2006년 15.5%, 2007년 16.0%, 2008년 16.0%,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 2006년 14.6%, 2007년 14.6%, 2008년 14.9% 등으로 2006년 이후 다른 요일에 비해 다소 발생 비율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폭처법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 1999년 15.2%, 2000년 15.7%, 2001년 15.8%, 2002년 15.9%, 2003년 15.6%, 2004년 15.7%, 2005년 15.3%, 2006년 15.9%, 2007년 17.2%, 2008년 16.6% 등으로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 역시 1999년 14.9%, 2000년 15.3%, 2001년 15.3%, 2002년 15.2%, 2003년 15.1%, 2004년 15.3%, 2005년 15.7%, 2006년 15.9%, 2007년 15.7%, 2008년 16.4% 등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생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4 폭력 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 (1999~2008)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일	12.3	12.6	12.5	12.7	12.4	12.4	12.4	14.3	14.5	14.5
	월	14.4	14.4	14.3	14.1	14.8	14.3	14.1	12.8	13.1	12.7
	화	14.8	14.6	14.8	14.7	15.1	14.5	14.4	14.2	14.2	14.2
	수	14.6	14.2	14.5	14.6	14.4	14.2	14.1	14.1	13.9	13.8
	목	14.8	14.2	13.9	14.6	14.0	14.2	14.6	14.2	14.0	13.9
	금	14.4	14.8	14.8	14.5	14.6	14.4	14.9	14.5	14.3	14.4
	토	14.2	14.5	14.6	14.2	14.2	14.0	13.8	14.9	15.2	15.5
	미상	0.0	0.2	0.1	0.1	0.1	1.6	1.3	0.6	0.5	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일	13.8	14.3	14.3	14.1	13.5	13.5	13.8	14.6	14.6	14.9
	월	14.3	13.7	13.6	13.6	13.7	13.7	14.0	12.5	12.6	12.2
	화	14.3	14.6	14.2	14.0	15.2	13.9	13.8	14.1	14.0	14.2
	수	14.0	14.0	14.7	14.0	14.2	13.9	13.8	14.0	13.8	13.8
	목	13.9	13.9	14.0	14.8	14.2	14.0	14.0	13.9	13.8	14.0
	금	14.5	14.5	13.8	14.3	14.0	14.1	14.4	14.6	14.5	14.3
	토	14.7	14.4	14.7	14.6	14.7	14.5	14.5	15.5	16.0	16.0
	미상	0.1	0.2	0.2	0.2	0.2	1.6	1.3	0.4	0.3	0.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일	15.2	15.7	15.8	15.9	15.6	15.7	15.3	15.9	17.2	16.6
	월	12.8	12.8	12.6	12.6	12.8	12.6	12.4	12.4	12.8	12.4
	화	14.1	14.0	14.2	13.9	14.4	14.1	14.1	16.7	13.4	13.7
	수	14.2	13.7	13.7	13.8	13.6	13.9	13.6	13.5	13.3	12.7
	목	14.3	13.8	13.9	14.0	13.7	13.8	13.7	13.6	12.9	13.2
	금	14.0	14.2	14.0	14.0	14.1	13.9	14.4	14.0	13.8	14.2
	토	14.9	15.3	15.3	15.2	15.1	15.3	15.7	15.9	15.7	16.4
	미상	0.0	0.1	0.2	0.2	0.3	0.5	0.4	0.6	0.5	0.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 발생 장소

폭력 범죄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1999년 33.8%, 2000년 33.7%, 2001년 35.2%, 2002년 36.0%, 2003년 36.0%, 2004년 34.5%, 2005년 35.5%, 2006년 42.6%, 2007년 42.6%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상점, 시장노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광산, 창고 등을 포괄하는 업무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1999년 20.1%, 2000년 20.6%, 2001년 19.6%, 2002년 19.6%, 2003년 19.1%, 2004년 24.8%, 2005년 24.6%, 2006년 21.9%, 2007년 22.0%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거주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1999년 19.4%, 2000년 18.2%, 2001년 17.6%, 2002년 16.9%, 2003년 17.3%, 2004년 17.9%, 2005년 18.0%, 2006년 15.4%, 2007년 15.2% 등으로 나타났다.

폭행의 경우에도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1999년 34.6%, 2000년 36.5%, 2001년 36.9%, 2002년 40.0%, 2003년 40.7%, 2004년 36.1%, 2005년 38.5%, 2006년 46.5%, 2007년 46.8%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업무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1999년 19.0%, 2000년 19.3%, 2001년 18.6%, 2002년 18.0%, 2003년 18.2%, 2004년 22.4%, 2005년 21.7%, 2006년 19.7%, 2007년 19.6% 등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거주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1999년 22.6%, 2000년 19.5%, 2001년 18.8%, 2002년 16.3%, 2003년 16.7%, 2004년 18.8%, 2005년 18.4%, 2006년 15.3%, 2007년 14.7% 등이었다.

폭처법 역시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42.8%, 2000년 43.4%, 2001년 43.7%, 2002년 44.9%, 2003년 43.5%, 2004년 44.0%, 2005년 44.7%, 2006년 42.9%, 2007년 44.5% 등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비율은 노상에서 발생한 상해나 폭행 사건의 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업무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1999년 21.2%, 2000년 21.6%, 2001년 21.6%, 2002년 21.0%, 2003년 20.1%, 2004년 21.2%, 2005년 21.4%, 2006년 22.8%, 2007년 21.6% 등이었으며, 거주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1999년 15.1%, 2000년 13.9%, 2001년 13.6%, 2002년 12.6%, 2003년 13.7%, 2004년 14.3%, 2005년 14.4%, 2006년 13.3%, 2007년 11.6%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상해, 폭행, 폭처법 모두 길거리나 업무지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범죄의 특성을 나타낸다. 제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폭력은 음주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 업무지구는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유흥접객업소, 시

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며, 길거리(노상)는 음주자들이 이동하는 공간인 것이다.

표 2-5 폭력 범죄 발생장소 (1999~2008)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상 해	거주 지구	19.4	18.2	17.6	16.9	17.3	17.9	18.0	15.4	15.2
	노상	33.8	33.7	35.2	36.0	36.0	34.5	35.5	42.6	42.6
	업무 지구	20.1	20.6	19.6	19.6	19.1	24.8	24.6	21.9	22.0
	교통 수단	1.2	1.3	1.3	1.4	1.4	1.3	1.2	1.1	0.8
	공공 기관	2.5	2.6	2.6	2.6	2.6	2.7	3.3	1.8	1.8
	기타	21.9	22.1	22.3	22	22.3	17.4	16	15.9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거주 지구	22.6	19.5	18.8	16.3	16.7	18.8	18.4	15.3	14.7
	노상	34.6	36.5	36.9	40.0	40.7	36.1	38.5	46.5	46.8
	업무 지구	19.0	19.3	18.6	18.0	18.2	22.4	21.7	19.7	19.6
	교통 수단	1.6	1.6	1.6	1.8	1.8	2.0	1.8	1.5	1.6
	공공 기관	2.6	2.0	2.3	1.9	1.7	3.0	2.8	1.3	1.2
	기타	18.2	19.7	20.6	20.6	19.5	16.3	15.3	14.3	14.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거주 지구	15.1	13.9	13.6	12.6	13.7	14.3	14.4	13.3	11.6
	노상	42.8	43.4	43.7	44.9	43.5	44.0	44.7	42.9	44.5
	업무 지구	21.2	21.6	21.6	21.0	20.1	21.2	21.4	22.8	21.6
	교통 수단	1.1	1.1	1.1	1.2	1.3	0.8	0.9	0.6	0.4
	공공 기관	0.9	0.8	0.9	0.8	1.0	0.9	1.0	1.5	2.4
	기타	17.5	18.1	17.9	18.3	19.0	17.4	16.3	17.4	18.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거주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업무지구: 상점, 시장노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광산, 창고  
 \*\*\* 교통수단: 고속도로,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구급 장소  
 \*\*\*\*\* 기 타: 흥행장, 유원지, 산야, 해상, 부대, 공지

### 3. 범죄자 수

폭력 범죄의 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단독범인 경우가 1999년 71.6%, 2000년 70.4%, 2001년 70.9%, 2002년 73.3%, 2003년 72.5%, 2004년

81.6%, 2005년 91.6%, 2006년 92.5%, 2007년 92.5%, 2008년 92.9% 등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범죄자가 2명인 경우는 1999년 25.3%, 2000년 26.0%, 2001년 25.3%, 2002년 23.6%, 2003년 24.0%, 2004년 4.9%, 2005년 5.4%, 2006년 4.9%, 2007년 4.9%, 2008년 4.6% 등으로 공범이 있다 하더라도 1명에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2004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폭행의 경우에도 단독범인 경우가 1999년 72.4%, 2000년 70.6%, 2001년 92.4%, 2002년 72.5%, 2003년 73.4%, 2004년 81.3%, 2005년 92.4%, 2006년 93.7%, 2007년 93.4%, 2008년 93.6%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범죄자가 2명인 경우는 1999년 23.7%, 2000년 24.5%, 2001년 2.9%, 2002년 23.1%, 2003년 22.7%, 2004년 4.4%, 2005년 4.8%, 2006년 4.1%, 2007년 4.4%, 2008년 4.1% 등으로 상해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폭처법의 경우에는 단독범인 경우가 1999년 58.5%, 2000년 57.5%, 2001년 58.7%, 2002년 60.4%, 2003년 61.6%, 2004년 66.4%, 2005년 77.3%, 2006년 60.2%, 2007년 36.6%, 2008년 40.2% 등에 불과하여 폭행, 상해에 비해 단독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대신 범죄자가 2명인 경우는 1999년 25.3%, 2000년 25.8%, 2001년 25.4%, 2002년 24.0%, 2003년 23.9%, 2004년 11.1%, 2005년 12.4%, 2006년 20.9%, 2007년 32.8%, 2008년 31.6%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폭처법에서 범죄자가 3명인 경우도 1999년 8.2%, 2000년 8.1%, 2001년 7.6%, 2002년 7.4%, 2003년 6.7%, 2004년 3.9%, 2005년 4.3%, 2006년 8.2%, 2007년 13.1%, 2008년 12.5% 등으로 폭행이나 상해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②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공범이 있는 경우 폭처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표 2-6 폭력 범죄의 공범 수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단독	71.6	70.4	70.9	73.3	72.5	81.6	91.6	92.5	92.5	92.9
	2명	25.3	26.0	25.3	23.6	24.0	4.9	5.4	4.9	4.9	4.6
	3명	1.7	1.8	1.6	1.2	1.3	0.8	0.7	0.8	0.8	0.7
	4명	0.3	0.2	0.3	0.3	0.2	0.2	0.2	0.2	0.1	0.1
	5명	0.1	0.1	0.1	0.1	0.1	0.0	0.0	0.0	0.0	0.0
	10명 이하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기타	0.6	1.1	1.4	1.1	1.5	12.0	1.6	1.2	1.4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단독	72.4	70.6	92.4	72.5	73.4	81.3	92.4	93.7	93.4	93.6
	2명	23.7	24.5	2.9	23.1	22.7	4.4	4.8	4.1	4.4	4.1
	3명	2.3	2.2	1.9	2.1	1.9	0.8	0.6	0.6	0.6	0.6
	4명	0.5	0.6	0.7	0.6	0.3	0.1	0.2	0.1	0.1	0.1
	5명	0.2	0.2	0.3	0.1	0.1	0.0	0.1	0.0	0.0	0.0
	10명 이하	0.1	0.1	0.1	0.1	0.1	0.2	0.1	0.0	0.0	0.0
	기타	0.3	1.4	1.3	1.0	1.2	12.7	1.6	1.1	1.1	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단독	58.5	57.5	58.7	60.4	61.6	66.4	77.3	60.2	36.6	40.2
	2명	25.3	25.8	25.4	24.0	23.9	11.1	12.4	20.9	32.8	31.6
	3명	8.2	8.1	7.6	7.4	6.7	3.9	4.3	8.2	13.1	12.5
	4명	3.5	3.4	3.2	3.3	2.9	1.6	1.7	3.2	5.7	5.5
	5명	1.6	1.6	1.5	1.5	1.3	0.8	0.9	1.8	2.9	2.9
	10명 이하	1.4	1.3	1.3	1.3	1.1	1.0	0.9	1.8	3.3	3.0
	기타	1.0	1.8	2.0	1.8	2.1	14.7	2.3	3.5	5.1	4.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제3절 폭력 범죄자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폭력 범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1999년 79.5%, 2000년 80.2%, 2001년 79.9%, 2002년 78.9%, 2003년 78.1%, 2004년 77.6%, 2005년 78.0%, 2006년 83.6%, 2007년 84.1%, 2008년 83.8% 등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은 1999년 19.4%, 2000년 18.7%, 2001년 19.0%, 2002년 19.1%, 2003년 19.6%, 2004년 19.5%, 2005년 19.8%, 2006년 15.3%, 2007년 14.7%, 2008년 14.7% 등으로 나타났다.

폭행 역시 남성의 비율이 1999년 80.1%, 2000년 80.2%, 2001년 80.3%, 2002년 79.3%, 2003년 78.8%, 2004년 79.6%, 2005년 80.2%, 2006년 84.4%, 2007년 84.3%, 2008년 83.4%, 여성의 비율이 1999년 19.0%, 2000년 18.9%, 2001년 18.7%, 2002년 18.7%, 2003년 19.2%, 2004년 18.7%, 2005년 18.4%, 2006년 14.7%, 2007년 14.6%, 2008년 15.2% 등으로 상해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폭처법의 경우도 남성의 비율이 1999년 84.6%, 2000년 84.6%, 2001년 83.9%, 2002년 83.0%, 2003년 82.3%, 2004년 82.4%, 2005년 82.7%, 2006년 78.8%, 2007년 75.1%, 2008년 74.8%, 여성의 비율이 1999년 13.0%, 2000년 12.8%, 2001년 13.6%, 2002년 13.9%, 2003년 14.5%, 2004년 15.2%, 2005년 15.1%, 2006년 18.3%, 2007년 20.7%, 2008년 20.5% 등으로 남성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상해나 폭행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2-7 폭력 범죄자 성별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남성	79.5	80.2	79.9	78.9	78.1	77.6	78.0	83.6	84.1	83.8
	여성	19.4	18.7	19.0	19.1	19.6	19.5	19.8	15.3	14.7	14.7
	미상	0.9	0.9	1.0	1.8	2.2	2.7	2.0	0.9	1.0	1.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남성	80.1	80.2	80.3	79.3	78.8	79.6	80.2	84.4	84.3	83.4
	여성	19.0	18.9	18.7	18.7	19.2	18.7	18.4	14.7	14.6	15.2
	미상	0.8	0.8	0.9	1.9	1.8	1.5	1.2	0.8	1.0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법	남성	84.6	84.6	83.9	83.0	82.3	82.4	82.7	78.8	75.1	74.8
	여성	13.0	12.8	13.6	13.9	14.5	15.2	15.1	18.3	20.7	20.5
	미상	2.2	2.4	2.3	2.9	3.0	2.3	2.0	2.8	4.0	4.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력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31~40세의 범죄자가 1999년 32.3%, 2000년 30.7%, 2001년 29.0%, 2002년 27.6%, 2003년 26.5%, 2004년 23.9%, 2005년 23.8%, 2006년 25.6%, 2007년 25.3%, 2008년 24.1%, 41~50세 범죄자가 1999년 27.9%, 2000년 28.9%, 2001년 30.1%, 2002년 31.3%, 2003년 31.8%, 2004년 32.5%, 2005년 33.0%, 2006년 33.3%, 2007년 33.0%, 2008년 32.6%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1999년과 2000년에는 31~40세의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41~50세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21세~30세 범죄자의 비율로서 1999년 14.6%, 2000년 14.5%, 2001년 14.6%, 2002년 13.9%, 2003년 13.8%, 2004년 12.1%, 2005년 11.4%, 2006년 16.0%, 2007년 16.6%, 2008년 16.7%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51~60세 범죄자는 1999년 12.7%, 2000년 12.8%, 2001년 13.1%, 2002년 13.2%, 2003년 13.5%, 2004년 14.1%, 2005년 15.4%, 2006년 13.7%, 2007년 14.6%, 2008년 15.5%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폭행 역시도 31~40세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31.1%, 2000년 30.3%, 2001년 28.9%, 2002년 27.6%, 2003년 26.1%, 2004년 24.6%, 2005년 24.4%, 2006년 26.1%, 2007년 25.5%, 2008년 24.2%, 41~50세 범죄자 비율이 1999년 28.7%, 2000년 29.2%, 2001년 30.7%, 2002년 30.8%, 2003년 32.3%, 2004년 33.7%, 2005년 34.0%, 2006년 35.0%, 2007년 34.8%, 2008년 33.3% 등으로 1999년과 2000년에는 31~40세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41~50세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1세~30세 범죄자는 1999년 15.2%, 2000년 14.9%, 2001년 15.0%, 2002년 15.1%, 2003년 14.2%, 2004년 13.1%, 2005년 12.0%, 2006년 14.7%, 2007년 15.4%, 2008년 16.2%, 51~60세 범죄자는 1999년 12.6%, 2000년 12.6%, 2001년 12.6%, 2002년 12.6%, 2003년 13.3%, 2004년 14.7%, 2005년 15.8%, 2006년 14.5%, 2007년 15.0%, 2008년 16.2%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폭처법은 20세 이하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13.2%, 2000년 12.6%, 2001년 11.8%, 2002년 11.0%, 2003년 9.2%, 2004년 7.7%, 2005년 7.4%, 2006년 12.9%, 2007년 20.5%, 2008년 20.5% 등으로 상해나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31~40세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30.0%, 2000년 29.5%, 2001년 29.1%, 2002년 27.9%, 2003년 27.6%, 2004년 26.7%, 2005년 26.6%, 2006년 23.0%, 2007년 19.4%, 2008년 19.1%, 21세~30세 범피자의 비율이 1999년 25.5%, 2000년 25.0%, 2001년 24.7%, 2002년 25.1%, 2003년 23.2%, 2004년 22.6%, 2005년 21.9%, 2006년 24.7%, 2007년 26.7%, 2008년 24.9% 등으로 나타났다.

표 2-8 폭력 범피자 범행 시 연령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20세 이하	3.8	4.1	3.5	3.0	2.7	2.3	2.4	2.4	2.7	3.1
	21세~30세	14.6	14.5	14.6	13.9	13.8	12.1	11.4	16.0	16.6	16.7
	31~40세	32.3	30.7	29.0	27.6	26.5	23.9	23.8	25.6	25.3	24.1
	41~50세	27.9	28.9	30.1	31.3	31.8	32.5	33.0	33.3	33.0	32.6
	51~60세	12.7	12.8	13.1	13.2	13.5	14.1	15.4	13.7	14.6	15.5
	61~70세	4.3	4.5	5.0	5.3	5.6	6.4	7.3	4.6	4.1	4.4
	71세 이상	0.7	0.9	1.0	1.0	1.0	1.3	1.6	0.8	0.8	0.9
	미상	2.6	2.8	2.5	3.3	4.0	6.0	3.7	2.3	1.7	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20세 이하	4.4	4.3	3.9	4.1	3.0	2.5	2.4	2.3	2.5	3.2
	21세~30세	15.2	14.9	15.0	15.1	14.2	13.1	12.0	14.7	15.4	16.2
	31~40세	31.1	30.3	28.9	27.6	26.1	24.6	24.4	26.1	25.5	24.2
	41~50세	28.7	29.2	30.7	30.8	32.3	33.7	34.0	35.0	34.8	33.3
	51~60세	12.6	12.6	12.6	12.6	13.3	14.7	15.8	14.5	15.0	16.2
	61~70세	3.8	4.1	4.4	4.6	5.2	5.9	6.4	4.2	3.8	4.2
	71세 이상	0.8	0.8	0.8	0.9	1.0	1.0	1.3	0.6	0.6	0.7
	미상	2.4	2.7	2.6	3.3	3.8	3.7	2.5	1.7	1.3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20세 이하	13.2	12.6	11.8	11.0	9.2	7.7	7.4	12.9	20.5	20.5
	21세~30세	25.5	25.0	24.7	25.1	23.2	22.6	21.9	24.7	26.7	24.9
	31~40세	30.0	29.5	29.1	27.9	27.6	26.7	26.6	23.0	19.4	19.1
	41~50세	19.0	20.0	21.5	22.8	25.1	27.0	28.4	23.3	18.4	19.5
	51~60세	5.7	5.8	6.1	6.2	7.0	7.9	8.9	8.4	7.2	8.3
	61~70세	1.1	1.2	1.3	1.4	1.6	1.9	2.2	2.0	1.9	2.1
	71세 이상	0.1	0.1	0.1	0.1	0.1	0.2	0.2	0.3	0.3	0.4
	미상	4.4	4.6	4.2	4.5	4.8	5.0	3.1	4.3	4.6	4.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력 범죄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39.5%, 2000년 39.7%, 2001년 38.7%, 2002년 40.3%, 2003년 40.2%, 2004년 41.6%, 2005년 42.4%, 2006년 46.3%, 2007년 47.0%, 2008년 47.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22.5%, 2000년 21.7%, 2001년 20.8%, 2002년 20.1%, 2003년 18.8%, 2004년 17.3%, 2005년 17.1%, 2006년 10.0%, 2007년 18.2%, 2008년 8.3%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졸업 이하의 범죄자가 1999년 17.9%, 2000년 17.6%, 2001년 17.5%, 2002년 16.5%, 2003년 16.2%, 2004년 16.3%, 2005년 15.9%, 2006년 13.6%, 2007년 13.6%, 2008년 12.9%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도 1999년 13.6%, 2000년 15.1%, 2001년 16.0%, 2002년 16.7%, 2003년 17.5%, 2004년 16.6%, 2005년 16.5%, 2006년 15.8%, 2007년 16.6%, 2008년 16.4%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폭행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가 1999년 39.3%, 2000년 40.7%, 2001년 40.1%, 2002년 40.5%, 2003년 40.4%, 2004년 32.7%, 2005년 30.2%, 2006년 28.5%, 2007년 27.2%, 2008년 26.2%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도 1999년 22.5%, 2000년 20.6%, 2001년 20.1%, 2002년 17.7%, 2003년 17.9%, 2004년 13.6%, 2005년 11.0%, 2006년 6.0%, 2007년 5.3%, 2008년 4.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범죄자는 1999년 18.0%, 2000년 17.4%, 2001년 16.4%, 2002년 16.8%, 2003년 16.3%, 2004년 12.5%, 2005년 11.1%, 2006년 8.4%, 2007년 7.7%, 2008년 7.0%, 대학 재학 이상의 범죄자도 1999년 14.2%, 2000년 14.6%, 2001년 16.0%, 2002년 17.1%, 2003년 17.4%, 2004년 14.0%, 2005년 11.6%, 2006년 9.3%, 2007년 9.4%, 2008년 8.9%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폭행의 경우 2004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비롯한 다른 변수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분은 2004년 25.4%, 2005년 34.9%, 2006년 46.1%, 2007년 48.9%, 2008년 51.9% 등 미상의 변수에 집계되었으며 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폭처법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46.4%,

2000년 46.6%, 2001년 46.2%, 2002년 46.4%, 2003년 45.3%, 2004년 44.4%, 2005년 43.4%, 2006년 44.4%, 2007년 46.2%, 2008년 45.2% 등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17.3%, 2000년 16.9%, 2001년 16.2%, 2002년 15.7%, 2003년 15.5%, 2004년 14.1%, 2005년 13.4%, 2006년 12.6%, 2007년 14.4%, 2008년 14.2% 등으로 다른 죄명과 달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15.2%, 2000년 16.0%, 2001년 17.5%, 2002년 18.8%, 2003년 19.3%, 2004년 18.3%, 2005년 17.7%, 2006년 15.3%, 2007년 15.6%, 2008년 15.0%,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13.0%, 2000년 12.3%, 2001년 11.9%, 2002년 11.2%, 2003년 11.3%, 2004년 9.8%, 2005년 8.7%, 2006년 5.1%, 2007년 4.2%, 2008년 3.9% 등으로 나타났다. 폭처법의 경우에도 폭행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상의 비율이 2004년 11.5%, 2005년 15.5%, 2006년 20.3%, 2007년 17.7%, 2008년 20.0% 등으로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9 폭력 범죄자의 교육수준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불취학/초교	22.5	21.7	20.8	20.1	18.8	17.3	17.1	10.0	18.2	8.3	
	중학교	17.9	17.6	17.5	16.5	16.2	16.3	15.9	13.6	13.6	12.9	
	고등학교	39.5	39.7	38.7	40.3	40.2	41.6	42.4	46.3	47.0	47.4	
	대학/대학원	13.6	15.1	16.0	16.7	17.5	16.6	16.5	15.8	16.6	16.4	
	해	기타	0.4	0.7	0.6	0.7	0.5	1.3	0.6	1.4	1.2	1.2
	미상	5.1	4.5	4.3	4.6	5.8	6.0	6.8	11.9	11.5	12.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불취학/초교	22.5	20.6	20.1	17.7	17.9	13.6	11.0	6.0	5.3	4.6	
	중학교	18.0	17.4	16.4	16.8	16.3	12.5	11.1	8.4	7.7	7.0	
	고등학교	39.3	40.7	40.1	40.5	40.4	32.7	30.2	28.5	27.2	26.2	
	대학/대학원	14.2	14.6	16.0	17.1	17.4	14.0	11.6	9.3	9.4	8.9	
	행	기타	0.5	1.0	0.8	1.3	0.7	0.9	0.4	0.7	0.6	0.6
	미상	4.7	5.0	5.5	5.5	6.5	25.4	34.9	46.1	48.9	51.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폭 처 법	불취학/초교	13.0	12.3	11.9	11.2	11.3	9.8	8.7	5.1	4.2	3.9
	중학교	17.3	16.9	16.2	15.7	15.5	14.1	13.4	12.6	14.4	14.2
	고등학교	46.4	46.6	46.2	46.4	45.3	44.4	43.4	44.4	46.2	45.2
	대학/대학원	15.2	16.0	17.5	18.8	19.3	18.3	17.7	15.3	15.6	15.0
	기타	0.6	0.7	0.7	0.8	0.5	1.0	0.5	1.2	1.0	0.9
	미상	6.8	6.6	6.5	6.2	7.0	11.5	15.5	20.3	17.7	2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력 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피고용자의 비율이 1999년 33.7%, 2000년 36.5%, 2001년 37.0%, 2002년 38.3%, 2003년 37.6%, 2004년 33.4%, 2005년 33.4%, 2006년 38.5%, 2007년 39.7%, 2008년 39.1% 등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자가 1999년 29.8%, 2000년 29.1%, 2001년 28.7%, 2002년 28.3%, 2003년 27.5%, 2004년 26.9%, 2005년 27.5%, 2006년 24.5%, 2007년 23.9%, 2008년 24.2%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직자의 비율은 1999년 12.4%, 2000년 18.4%, 2001년 19.7%, 2002년 18.3%, 2003년 19.1%, 2004년 20.7%, 2005년 22.1%, 2006년 21.1%, 2007년 21.3%, 2008년 21.4%였다.

폭행 범죄자의 경우에도 피고용자의 비율이 1999년 34.7%, 2000년 37.3%, 2001년 38.1%, 2002년 38.9%, 2003년 38.5%, 2004년 36.1%, 2005년 34.4%, 2006년 38.9%, 2007년 40.0%, 2008년 40.0%, 자영자의 비율이 1999년 28.9%, 2000년 27.7%, 2001년 27.4%, 2002년 26.8%, 2003년 26.4%, 2004년 26.5%, 2005년 27.3%, 2006년 25.0%, 2007년 24.3%, 2008년 24.0%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무직자의 비율은 1999년 11.6%, 2000년 18.8%, 2001년 19.1%, 2002년 18.3%, 2003년 19.1%, 2004년 20.8%, 2005년 23.1%, 2006년 21.8%, 2007년 21.7%, 2008년 2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폭처법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피고용자의 비율이 1999년 33.5%, 2000년 39.8%, 2001년 40.5%, 2002년 41.3%, 2003년 41.6%, 2004년 38.7%, 2005년 38.8%, 2006년 35.4%, 2007년 32.4%, 2008년 31.2%, 자영자의 비율이 1999년 21.1%, 2000년 20.6%, 2001년 20.8%, 2002년 20.6%, 2003년 20.4%, 2004년 21.2%, 2005년 21.3%, 2006년 18.5%, 2007년 15.5%, 2008년 16.4% 등으

로 나타났으며, 무직자의 비율은 1999년 11.3%, 2000년 17.7%, 2001년 18.4%, 2002년 17.5%, 2003년 17.7%, 2004년 19.3%, 2005년 20.5%, 2006년 20.1%, 2007년 20.8%, 2008년 21.4% 등이었다. 다만 다른 죄명에 비하여 학생의 비율이 1999년 9.0%, 2000년 8.9%, 2001년 8.4%, 2002년 8.2%, 2003년 7.5%, 2004년 7.3%, 2005년 7.3%, 2006년 12.5%, 2007년 18.0%, 2008년 17.9% 등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대체로 우리나라 직업별 인구분포를 고려할 때 특이한 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표 2-10 폭력 범죄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자영자	29.8	29.1	28.7	28.3	27.5	26.9	27.5	24.5	23.9	24.2
	피고용자	33.7	36.5	37.0	38.3	37.6	33.4	33.4	38.5	39.7	39.1
	전문직	1.9	1.9	1.8	1.7	1.9	1.9	2.2	2.1	2.0	2.0
	학생	2.8	2.9	2.8	2.4	2.6	2.8	2.8	3.2	3.6	4.0
	주부	3.9	3.2	2.9	2.8	3.1	3.2	3.4	2.5	2.2	2.2
	전경	10.3	1.2	0.4	0.3	0.3	0.2	0.2	0.2	0.1	0.1
	무직자	12.4	18.4	19.7	18.3	19.1	20.7	22.1	21.1	21.3	21.4
	미상	2.8	4.4	4.5	5.6	6.0	8.6	5.9	5.4	5.1	4.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자영자	28.9	27.7	27.4	26.8	26.4	26.5	27.3	25.0	24.3	24.0
	피고용자	34.7	37.3	38.1	38.9	38.5	36.1	34.4	38.9	40.0	40.0
	전문직	2.1	1.8	1.8	1.6	1.8	1.8	1.9	2.1	2.0	2.0
	학생	3.2	2.8	2.8	2.8	2.5	2.3	2.5	2.6	3.0	3.6
	주부	3.9	3.1	3.1	3.0	3.1	3.2	3.2	2.4	2.3	2.4
	전경	10.9	1.3	0.3	0.2	0.3	0.2	0.3	0.2	0.1	0.1
	무직자	11.6	18.8	19.1	18.3	19.1	20.8	23.1	21.8	21.7	21.5
	미상	2.6	4.6	5.2	6.2	6.1	6.8	5.1	4.8	4.5	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자영자	21.1	20.6	20.8	20.6	20.4	21.2	21.3	18.5	15.5	16.4
	피고용자	33.5	39.8	40.5	41.3	41.6	38.7	38.8	35.4	32.4	31.2
	전문직	1.5	1.4	1.4	1.3	1.4	1.6	1.6	1.6	1.5	1.54
	학생	9.0	8.9	8.4	8.2	7.5	7.3	7.3	12.5	18.0	17.9
	주부	2.1	1.7	1.7	1.7	1.8	2.1	2.1	2.3	2.3	2.3
전경	12.7	1.5	0.5	0.5	0.4	0.4	0.4	0.3	0.2	0.2	

##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직자	11.3	17.7	18.4	17.5	17.7	19.3	20.5	20.1	20.8	21.4
미상	3.8	6.1	6.2	6.8	7.1	7.3	5.9	7.3	7.3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영자: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의료 보건업, 차량정비업, 노점, 행사, 기타사업

\*\* 피고용자: 교원(사립), 사무원, 기술자, 점원, 공원, 운전자, 경비원, 외판원, 국공영기업체직원, 일반 회사원, 금융기관직원, 유흥업종사자, 요식업종사자, 일용노동자, 기타피고용자

\*\*\*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기타전문직, 공무원

\*\*\*\* 전경: 의경, 공익요원

폭력 범죄자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하류의 비율이 1999년 65.7%, 2000년 64.2%, 2001년 64.9%, 2002년 64.2%, 2003년 65.6%, 2004년 64.4%, 2005년 63.5%, 2006년 62.4%, 2007년 63.2%, 2008년 60.7%, 중류의 비율이 1999년 29.1%, 2000년 30.3%, 2001년 30.1%, 2002년 29.7%, 2003년 28.2%, 2004년 29.1%, 2005년 30.1%, 2006년 31.7%, 2007년 31.1%, 2008년 33.1% 등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상류의 비율은 1999년 1.5%, 2000년 1.6%, 2001년 1.5%, 2002년 1.5%, 2003년 1.4%, 2004년 1.3%, 2005년 1.1%, 2006년 0.8%, 2007년 0.7%, 2008년 0.8% 등에 불과하였다.

폭행 역시도 하류의 비율이 1999년 68.4%, 2000년 65.9%, 2001년 65.2%, 2002년 64.2%, 2003년 66.8%, 2004년 52.2%, 2005년 45.7%, 2006년 39.6%, 2007년 37.4%, 2008년 34.5%, 중류의 비율이 1999년 27.4%, 2000년 29.2%, 2001년 30.3%, 2002년 30.2%, 2003년 27.8%, 2004년 22.5%, 2005년 19.9%, 2006년 17.9%, 2007년 17.1%, 2008년 17.6%, 상류의 비율이 1999년 1.2%, 2000년 1.4%, 2001년 1.3%, 2002년 1.4%, 2003년 1.2%, 2004년 1.2%, 2005년 0.8%, 2006년 0.5%, 2007년 0.4%, 2008년 0.4% 등으로 상해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폭처법 역시 하류 1999년 65.6%, 2000년 64.2%, 2001년 64.4%, 2002년 64.0%, 2003년 65.8%, 2004년 61.1%, 2005년 58.5%, 2006년 55.7%, 2007년 55.6%, 2008년 53.7%, 중류 1999년 28.4%, 2000년 29.2%, 2001년 29.4%, 2002년 29.3%, 2003년 27.9%, 2004년 27.3%, 2005년 26.6%, 2006년 28.7%, 2007년 31.3%, 2008년 31.2%, 상류 1999년 1.0%, 2000년 0.9%, 2001년 0.9%, 2002년 1.0%, 2003년

0.8%, 2004년 0.8%, 2005년 0.7%, 2006년 0.5%, 2007년 0.4%, 2008년 0.5% 등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2-11 폭력 범죄자의 생활수준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하류	65.7	64.2	64.9	64.2	65.6	64.4	63.5	62.4	63.2	60.7
	중류	29.1	30.3	30.1	29.7	28.2	29.1	30.1	31.7	31.1	33.1
	상류	1.5	1.6	1.5	1.5	1.4	1.3	1.1	0.8	0.7	0.8
	미상	3.5	3.7	3.4	4.4	4.6	4.9	5.2	4.9	4.8	5.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하류	68.4	65.9	65.2	64.2	66.8	52.2	45.7	39.6	37.4	34.5
	중류	27.4	29.2	30.3	30.2	27.8	22.5	19.9	17.9	17.1	17.6
	상류	1.2	1.4	1.3	1.4	1.2	1.2	0.8	0.5	0.4	0.4
	미상	2.8	3.2	3.1	4.0	4.0	23.9	33.4	41.8	45.0	47.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법	하류	65.6	64.2	64.4	64.0	65.8	61.1	58.5	55.7	55.6	53.7
	중류	28.4	29.2	29.4	29.3	27.9	27.3	26.6	28.7	31.3	31.2
	상류	1.0	0.9	0.9	1.0	0.8	0.8	0.7	0.5	0.4	0.5
	미상	5.2	5.4	5.0	5.3	5.3	10.6	14.1	14.8	12.5	1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 범죄자 상태

폭력 범죄자의 범행 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999년 79.6%, 2000년 78.7%, 2001년 77.9%, 2002년 77.9%, 2003년 59.2%, 2004년 74.3%, 2005년 73.1%, 2006년 54.0%, 2007년 50.1%, 2008년 50.4% 등으로 199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999년 16.4%, 2000년 18.1%, 2001년 19.1%, 2002년 19.0%, 2003년 20.4%, 2004년 20.5%, 2005년 21.5%, 2006년 40.7%, 2007년 44.8%, 2008년 44.0%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범죄자가 범행 시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이었다는 경우는 1999년 0.1%, 2000년 0.3%, 2001

년 0.1%, 2002년 0.1%, 2003년 17.7%, 2004년 0.5%, 2005년 0.3%, 2006년 0.4%, 2007년 0.3%, 2008년 0.4% 등에 불과하였다.

폭행의 경우에도 정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999년 77.5%, 2000년 77.5%, 2001년 77.0%, 2002년 75.8%, 2003년 75.1%, 2004년 57.7%, 2005년 49.3%, 2006년 32.2%, 2007년 28.4%, 2008년 27.5%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999년 19.4%, 2000년 19.7%, 2001년 20.5%, 2002년 21.6%, 2003년 22.3%, 2004년 18.1%, 2005년 17.1%, 2006년 25.8%, 2007년 26.3%, 2008년 24.5%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해에 비해 증가폭이 적은 것은 2004년 이후 미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가 미상으로 분류된 비율은 1999년 2.8%, 2000년 2.3%, 2001년 2.0%, 2002년 2.1%, 2003년 2.1%, 2004년 23.4%, 2005년 33.0%, 2006년 41.3%, 2007년 44.7%, 2008년 47.4% 등이었다.

그런데 폭처법의 경우에는 정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999년 55.8%, 2000년 9.7%, 2001년 53.2%, 2002년 51.0%, 2003년 50.9%, 2004년 43.9%, 2005년 40.9%, 2006년 45.8%, 2007년 51.0%, 2008년 51.3% 등으로 상해나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1999년 38.9%, 2000년 42.0%, 2001년 44.0%, 2002년 46.3%, 2003년 46.4%, 2004년 46.2%, 2005년 45.6%, 2006년 40.8%, 2007년 38.4%, 2008년 36.1% 등으로 상해나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폭처법의 경우에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가 미상으로 분류된 비율이 1999년 5.0%, 2000년 2.9%, 2001년 2.4%, 2002년 2.3%, 2003년 2.2%, 2004년 9.1%, 2005년 12.9%, 2006년 12.9%, 2007년 9.9%, 2008년 12.0% 등으로 2004년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공식통계상에서 주취상태의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체 폭력범죄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변화는 실제 범죄자의 특성이 변화한 것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형사사법기관에서 통계를 처리하는 관행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표 2-12 폭력 범죄자 범행 시 정신상태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정상	79.6	78.7	77.9	77.9	59.2	74.3	73.1	54.0	50.1	50.4
	정신장애	0.1	0.3	0.1	0.1	17.7	0.5	0.3	0.4	0.3	0.4
	주취	16.4	18.1	19.1	19.0	20.4	20.5	21.5	40.7	44.8	44.0
	미상	3.4	2.7	2.3	2.5	2.3	4.2	4.6	4.5	4.4	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정상	77.5	77.5	77.0	75.8	75.1	57.7	49.3	32.2	28.4	27.5
	정신장애	0	0.1	0	0.1	0.1	0.4	0.2	0.2	0.1	0.1
	주취	19.4	19.7	20.5	21.6	22.3	18.1	17.1	25.8	26.3	24.5
	미상	2.8	2.3	2.0	2.1	2.1	23.4	33.0	41.3	44.7	47.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법	정상	55.8	9.7	53.2	51.0	50.9	43.9	40.9	45.8	51.0	51.3
	정신장애	0	0	0	0	0	0.4	0.2	0.2	0.2	0.1
	주취	38.9	42.0	44.0	46.3	46.4	46.2	45.6	40.8	38.4	36.1
	미상	5.0	2.9	2.4	2.3	2.2	9.1	12.9	12.9	9.9	12.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정신장애: 정신이상, 정신병약, 기타 정신장애

### 3. 범행동기

폭력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999년 52.6%, 2000년 56.4%, 2001년 57.3%, 2002년 55.9%, 2003년 55.4%, 2004년 62.4%, 2005년 67.2%, 2006년 70.0%, 2007년 70.5%, 2008년 73.5%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정불화로 인한 범죄는 1999년 3.0%, 2000년 2.9%, 2001년 3.0%, 2002년 2.8%, 2003년 2.8%, 2004년 2.5%, 2005년 2.5%, 2006년 2.1%, 2007년 2.0%, 2008년 3.1%, 현실불만으로 인한 범죄는 1999년 3.6%, 2000년 2.2%, 2001년 2.3%, 2002년 2.1%, 2003년 1.7%, 2004년 1.8%, 2005년 1.8%, 2006년 1.6%, 2007년 1.7%, 2008년 2.0%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범행 동기가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1999년 36.5%, 2000년 34.2%, 2001년 33.2%, 2002년 34.2%, 2003년 34.9%, 2004년 27.8%, 2005년 22.6%, 2006년 20.7%, 2007년 20.4%, 2008년 15.6% 등으로 기타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통계의 한계를 일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폭행의 경우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999년 56.0%, 2000년 58.6%, 2001년 59.9%, 2002년 60.0%, 2003년 57.8%, 2004년 52.2%, 2005년 47.7%, 2006년 42.8%, 2007년 40.5%, 2008년 40.4%, 가정불화로 인한 범죄가 1999년 3.8%, 2000년 3.5%, 2001년 3.7%, 2002년 3.5%, 2003년 3.5%, 2004년 2.4%, 2005년 2.1%, 2006년 1.4%, 2007년 1.2%, 2008년 1.6%, 현실불만으로 인한 범죄는 1999년 3.2%, 2000년 2.1%, 2001년 1.8%, 2002년 1.5%, 2003년 1.6%, 2004년 1.6%, 2005년 1.4%, 2006년 1.0%, 2007년 0.9%, 2008년 1.1%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폭행 역시 범행동기가 기타로 분류된 경우가 1999년 33.4%, 2000년 32.0%, 2001년 31.0%, 2002년 30.6%, 2003년 32.6%, 2004년 19.1%, 2005년 14.7%, 2006년 12.5%, 2007년 11.7%, 2008년 8.5% 등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폭행의 경우에는 미상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아서 1999년 2.8%, 2000년 3.2%, 2001년 2.9%, 2002년 4.0%, 2003년 4.0%, 2004년 24.1%, 2005년 33.6%, 2006년 41.7%, 2007년 45.0%, 2008년 47.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적 결측치인 기타와 미상을 합하면 50% 전후의 비율인 것이다.<sup>2)</sup>

이러한 분포는 폭처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999년 55.3%, 2000년 58.0%, 2001년 59.0%, 2002년 59.7%, 2003년 57.9%, 2004년 61.9%, 2005년 61.5%, 2006년 59.8%, 2007년 59.7%, 2008년 60.0% 등이었으며, 가정불화로 인한 범죄는 1999년 1.8%, 2000년 1.7%, 2001년 1.8%, 2002년 1.7%, 2003년 1.9%, 2004년 1.7%, 2005년 1.4%, 2006년 1.0%, 2007년 0.7%, 2008년 3.0%, 현실불만으로 인한 범죄는 1999년 2.7%, 2000년 1.8%, 2001년 1.8%, 2002년 1.7%, 2003년 1.5%, 2004년 1.6%, 2005년 1.4%,

2) 여기에서 ‘기타’로 분류된 변수는 실제 공식통계상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있지만, 공식통계상에서는 ‘기타’가 아니지만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단순화하기 위해 비율이 적은 항목을 ‘기타’로 포함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이 비율은 극히 적어서 실제적 결측치가 높다는 진술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범행동기로서 생활비마련, 유희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사치심, 치부, 기타이욕, 사행심, 보복, 호기심, 유희, 부주의 등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변수의 비율은 거의 0에 가깝다.

2006년 1.2%, 2007년 1.1%, 2008년 1.6% 등이었다. 그리고 범행동기가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1999년 34.5%, 2000년 32.4%, 2001년 31.9%, 2002년 31.0%, 2003년 32.8%, 2004년 23.7%, 2005년 20.8%, 2006년 22.7%, 2007년 25.2%, 2008년 20.4%, 미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1999년 5.1%, 2000년 5.3%, 2001년 4.7%, 2002년 5.2%, 2003년 5.2%, 2004년 10.5%, 2005년 14.0%, 2006년 14.6%, 2007년 12.4%, 2008년 14.3% 등이었다.

표 2-13 폭력 범죄자 범행 동기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가정불화	3.0	2.9	3.0	2.8	2.8	2.5	2.5	2.1	2.0	3.1
	우발적	52.6	56.4	57.3	55.9	55.4	62.4	67.2	70.0	70.5	73.5
	현실불만	3.6	2.2	2.3	2.1	1.7	1.8	1.8	1.6	1.7	2.0
	기타	36.5	34.2	33.2	34.2	34.9	27.8	22.6	20.7	20.4	15.6
	미상	3.4	3.6	3.3	4.3	4.5	4.8	5.2	4.9	4.7	5.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가정불화	3.8	3.5	3.7	3.5	3.5	2.4	2.1	1.4	1.2	1.6
	우발적	56.0	58.6	59.9	60.0	57.8	52.2	47.7	42.8	40.5	40.4
	현실불만	3.2	2.1	1.8	1.5	1.6	1.6	1.4	1.0	0.9	1.1
	기타	33.4	32.0	31.0	30.6	32.6	19.1	14.7	12.5	11.7	8.5
	미상	2.8	3.2	2.9	4.0	4.0	24.1	33.6	41.7	45.0	47.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법	가정불화	1.8	1.7	1.8	1.7	1.9	1.7	1.4	1.0	0.7	3.0
	우발적	55.3	58.0	59.0	59.7	57.9	61.9	61.5	59.8	59.7	60.0
	현실불만	2.7	1.8	1.8	1.7	1.5	1.6	1.4	1.2	1.1	1.6
	기타	34.5	32.4	31.9	31.0	32.8	23.7	20.8	22.7	25.2	20.4
	미상	5.1	5.3	4.7	5.2	5.2	10.5	14.0	14.6	12.4	14.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4. 전과

폭력 범죄자의 전과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1999년 34.9%, 2000년 32.0%, 2001년 31.3%, 2002년 29.0%, 2003년 29.8%, 2004년

30.4%, 2005년 31.1%, 2006년 27.0%, 2007년 25.9%, 2008년 25.8% 등으로 1999년에는 전체 범죄자의 약 1/3 수준이었다가 2008년에는 약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 중 전과 1범인 범죄자는 1999년 15.7%, 2000년 15.4%, 2001년 15.5%, 2002년 14.8%, 2003년 15.2%, 2004년 15.5%, 2005년 14.4%, 2006년 13.9%, 2007년 13.7%, 2008년 13.4% 등으로 지난 10년간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며, 전과 2범인 범죄자는 1999년 11.0%, 2000년 11.3%, 2001년 11.0%, 2002년 10.5%, 2003년 10.8%, 2004년 10.6%, 2005년 10.1%, 2006년 10.6%, 2007년 10.5%, 2008년 10.3%, 전과 3범인 범죄자는 1999년 8.1%, 2000년 8.2%, 2001년 8.1%, 2002년 8.1%, 2003년 8.3%, 2004년 8.3%, 2005년 7.9%, 2006년 8.4%, 2007년 8.3%, 2008년 8.2% 등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전과 4범 이상의 범죄자는 1999년 26.5%, 2000년 28.9%, 2001년 30.3%, 2002년 32.7%, 2003년 31.0%, 2004년 32.2%, 2005년 32.6%, 2006년 36.4%, 2007년 37.7%, 2008년 37.6%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폭행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1999년 35.7%, 2000년 32.0%, 2001년 30.3%, 2002년 28.8%, 2003년 29.7%, 2004년 23.1%, 2005년 20.2%, 2006년 15.7%, 2007년 14.5%, 2008년 14.6% 등으로 1999년 약 1/3수준에서 2008년에는 약 1/7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전과 1범인 범죄자도 1999년 15.2%, 2000년 15.1%, 2001년 14.9%, 2002년 14.5%, 2003년 14.8%, 2004년 12.1%, 2005년 10.0%, 2006년 8.6%, 2007년 7.9%, 2008년 7.7% 등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과 2범과 3범인 범죄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였는데, 전과 2범인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10.9%, 2000년 10.5%, 2001년 10.9%, 2002년 10.6%, 2003년 10.8%, 2004년 9.0%, 2005년 7.3%, 2006년 6.7%, 2007년 6.4%, 2008년 5.8% 등이었으며, 전과 3범인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8.1%, 2000년 8.2%, 2001년 8.2%, 2002년 8.4%, 2003년 8.5%, 2004년 6.4%, 2005년 5.8%, 2006년 5.3%, 2007년 5.1%, 2008년 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실제 전과가 없거나 전과가 3회 이하인 범죄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2004년 이후 미상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폭행 범죄자의 전과 분포 중 미상으로 구분된 것의 비율은 2003년까지는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21.0%, 2005년 30.6%,

2006년 38.5%, 2007년 42.2%, 2008년 44.3% 등으로 2004년 이후에 급증하여 절반가까이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과4범 이상의 범죄자들의 비율은 1999년 27.0%, 2000년 30.4%, 2001년 32.2%, 2002년 33.2%, 2003년 31.6%, 2004년 27.8%, 2005년 25.5%, 2006년 24.7%, 2007년 23.5%, 2008년 22.3% 등으로, 미상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이는 실제로는 전과 4범 이상의 범죄자들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처법의 경우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37.2%, 2000년 34.3%, 2001년 32.6%, 2002년 31.3%, 2003년 30.9%, 2004년 29.8%, 2005년 28.3%, 2006년 34.2%, 2007년 39.3%, 2008년 38.1% 등으로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또한 전과 1범인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16.0%, 2000년 15.8%, 2001년 15.6%, 2002년 15.3%, 2003년 15.5%, 2004년 14.9%, 2005년 13.5%, 2006년 13.7%, 2007년 14.4%, 2008년 13.2% 등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과 2범인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10.7%, 2000년 10.9%, 2001년 10.9%, 2002년 10.7%, 2003년 11.0%, 2004년 10.6%, 2005년 9.8%, 2006년 9.2%, 2007년 8.8%, 2008년 8.3%, 전과 3범인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7.8%, 2000년 8.0%, 2001년 8.1%, 2002년 8.1%, 2003년 8.1%, 2004년 7.9%, 2005년 7.3%, 2006년 6.4%, 2007년 6.1%, 2008년 6.0%, 전과 4범 이상인 범죄자의 비율은 1999년 22.9%, 2000년 25.3%, 2001년 27.4%, 2002년 28.9%, 2003년 28.7%, 2004년 28.4%, 2005년 28.4%, 2006년 23.8%, 2007년 20.2%, 2008년 21.0%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폭처법 범죄자의 전과분포 역시 2004년 이후 미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폭처법에서는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2-14 폭력 범죄자 전과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전과 없음	34.9	32.0	31.3	29.0	29.8	30.4	31.1	27.0	25.9	25.8
	1범	15.7	15.4	15.5	14.8	15.2	15.5	14.4	13.9	13.7	13.4
	2범	11.0	11.3	11.0	10.5	10.8	10.6	10.1	10.6	10.5	10.3
해	3범	8.1	8.2	8.1	8.1	8.3	8.3	7.9	8.4	8.3	8.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범 이상	26.5	28.9	30.3	32.7	31.0	32.2	32.6	36.4	37.7	37.6	
	미상	3.2	3.6	3.2	4.3	4.4	2.4	3.2	3.2	3.4	4.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전과 없음	35.7	32.0	30.3	28.8	29.7	23.1	20.2	15.7	14.5	14.6	
	1범	15.2	15.1	14.9	14.5	14.8	12.1	10.0	8.6	7.9	7.7	
	2범	10.9	10.5	10.9	10.6	10.8	9.0	7.3	6.7	6.4	5.8	
	3범	8.1	8.2	8.2	8.4	8.5	6.4	5.8	5.3	5.1	4.8	
	4범 이상	27.0	30.4	32.2	33.2	31.6	27.8	25.5	24.7	23.5	22.3	
	미상	2.7	3.2	3.0	3.9	3.9	21.0	30.6	38.5	42.2	44.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전과 없음	37.2	34.3	32.6	31.3	30.9	29.8	28.3	34.2	39.3	38.1
		1범	16.0	15.8	15.6	15.3	15.5	14.9	13.5	13.7	14.4	13.2
2범		10.7	10.9	10.9	10.7	11.0	10.6	9.8	9.2	8.8	8.3	
3범		7.8	8.0	8.1	8.1	8.1	7.9	7.3	6.4	6.1	6.0	
4범 이상		22.9	25.3	27.4	28.9	28.7	28.4	28.4	23.8	20.2	21.0	
미상		4.9	5.3	4.8	5.2	5.2	7.9	12.1	12.3	10.5	12.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처리과정의 특성

##### 1. 수사 단서

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단서를 살펴보면, 상해 범죄의 경우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61.6%, 2000년 60.8%, 2001년 61.2%, 2002년 62.0%, 2003년 61.4%, 2004년 52.4%, 2005년 65.8%, 2006년 56.3%, 2007년 57.9%, 2008년 60.0%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35.6%, 2000년 37.0%, 2001년 35.7%, 2002년 35.3%, 2003년 36.0%, 2004년 34.0%, 2005년 31.2%, 2006년 40.4%, 2007년 38.4%, 2008년 35.5%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폭행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48.9%, 2000년 50.8%, 2001년 49.2%, 2002년 48.8%, 2003년 49.5%, 2004년 50.6%, 2005년 51.4%, 2006년 41.2%, 2007년 40.8%, 2008년 43.8% 등으로 상해 범죄에 비

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48.6%, 2000년 46.8%, 2001년 44.6%, 2002년 48.5%, 2003년 47.8%, 2004년 46.3%, 2005년 45.6%, 2006년 56.0%, 2007년 56.3%, 2008년 53.2% 등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폭처범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단서들의 분포는 폭력 범죄와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1999년 47.5%, 2000년 49.3%, 2001년 49.4%, 2002년 47.7%, 2003년 47.4%, 2004년 45.0%, 2005년 47.5%, 2006년 51.8%, 2007년 52.6%, 2008년 53.4%,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1999년 49.6%, 2000년 48.0%, 2001년 46.6%, 2002년 49.0%, 2003년 49.3%, 2004년 50.9%, 2005년 49.3%, 2006년 43.2%, 2007년 39.9%, 2008년 38.0%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15 폭력 범죄의 수사 단서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현행범	35.6	37.0	35.7	35.3	36.0	34.0	31.2	40.4	38.4	35.5
	신고	61.6	60.8	61.2	62.0	61.4	52.4	65.8	56.3	57.9	60.0
	기타	2.3	1.8	2.5	2.2	2.0	3.0	2.4	2.7	3.1	4.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현행범	48.6	46.8	44.6	48.5	47.8	46.3	45.6	56.0	56.3	53.2
	신고	48.9	50.8	49.2	48.8	49.5	50.6	51.4	41.2	40.8	43.8
	기타	1.9	1.8	2.6	1.1	2.2	2.5	2.4	2.2	2.3	2.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범	현행범	49.6	48.0	46.6	49.0	49.3	50.9	49.3	43.2	39.9	38.0
	신고	47.5	49.3	49.4	47.7	47.4	45.0	47.5	51.8	52.6	53.4
	기타	2.4	2.3	3.4	2.9	2.9	3.5	2.7	4.3	6.9	7.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 검찰 처리 현황

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여부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불구속 송치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96.2%, 2000년 97.1%, 2001년 97.3%, 2002년 97.2%, 2003

년 97.4%, 2004년 97.9%, 2005년 98.3%, 2006년 98.9%, 2007년 99.2%, 2008년 99.1%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폭행의 경우에도 불구속 송치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98.0%, 2000년 98.8%, 2001년 98.8%, 2002년 99.0%, 2003년 98.7%, 2004년 99.0%, 2005년 99.3%, 2006년 99.6%, 2007년 99.7%, 2008년 99.7% 등이었다.

폭처법의 경우 불구속 송치한 사건의 비율이 1999년 94.5%, 2000년 96.2%, 2001년 96.4%, 2002년 96.3%, 2003년 96.4%, 2004년 97.5%, 2005년 98.2%, 2006년 97.9%, 2007년 97.7%, 2008년 97.4% 등으로 매년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상해나 폭행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표 2-16 폭력 범죄자 조치 상황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구속송치	3.7	2.8	2.6	2.7	2.5	2.0	1.6	1.0	0.7	0.8
	불구속 송치	96.2	97.1	97.3	97.2	97.4	97.9	98.3	98.9	99.2	99.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구속송치	1.9	1.1	1.1	0.9	1.2	0.9	0.6	0.3	0.2	0.2
	불구속 송치	98.0	98.8	98.8	99.0	98.7	99.0	99.3	99.6	99.7	99.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구속송치	5.4	3.7	3.5	3.6	3.5	2.4	1.7	2.0	2.2	2.5
	불구속 송치	94.5	96.2	96.4	96.3	96.4	97.5	98.2	97.9	97.7	97.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살펴보면, 상해 범죄의 경우 기소된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52.7%, 2000년 54.8%, 2001년 57.3%, 2002년 58.9%, 2003년 56.9%, 2004년 67.0%, 2005년 65.3%, 2006년 64.2%, 2007년 68.0%, 2008년 67.6% 등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었다. 불기소 처리된 범죄자는 1999년 46.7%, 2000년 44.7%, 2001년 42.3%, 2002년 40.5%, 2003년 42.5%, 2004년 32.4%, 2005년 34.2%, 2006년 35.1%, 2007년 31.4%, 2008년 31.7%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폭행의 경우는 기소된 범죄자가 1999년 21.5%, 2000년 21.0%, 2001년 20.9%, 2002년 20.0%, 2003년 20.0%, 2004년 18.2%, 2005년 19.3%, 2006년 17.3%, 2007

년 16.5%, 2008년 15.1% 등으로 상해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었다. 불기소 처리된 범죄자는 1999년 77.9%, 2000년 78.4%, 2001년 78.6%, 2002년 79.5%, 2003년 79.5%, 2004년 81.1%, 2005년 80.1%, 2006년 82.1%, 2007년 82.6%, 2008년 84.2%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폭처법의 경우에는 기소된 범죄자의 비율이 1999년 54.0%, 2000년 51.6%, 2001년 52.6%, 2002년 44.3%, 2003년 44.3%, 2004년 39.6%, 2005년 38.2%, 2006년 35.5%, 2007년 35.8%, 2008년 35.8% 등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들 중 공판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상해나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2-17 폭력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결과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기소	소계	52.7	54.8	57.3	58.9	56.9	67.0	65.3	64.2	68.0	67.6
		구공판 구속	4.1	4.1	4.0	3.8	3.6	3.2	2.8	2.4	2.1	1.9
		구공판불구속	2.9	2.9	2.7	3.2	3.1	3.1	3.3	4.4	5.0	5.6
		구약식	44.6	46.5	49.5	50.9	49.3	59.8	58.1	56.2	59.3	58.4
		소년보호송치	1.0	1.1	0.9	0.8	0.7	0.7	0.9	1.0	1.4	1.5
		가정보호송치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불기소	소계	46.7	44.7	42.3	40.5	42.5	32.4	34.2	35.1	31.4	31.7
		기소유예	13.5	15.2	14.0	11.4	11.5	13.0	15.1	16.3	15.7	18.0
		혐의 없음	11.4	10.0	9.6	9.5	9.8	7.4	7.5	7.1	5.4	5.1
		죄가 안됨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공소권 없음	11.5	11.3	10.4	11.5	11.2	8.3	8.3	7.9	7.5	6.8
		기소중지	8.7	6.9	7.0	7.0	8.8	2.4	1.9	2.0	1.6	1.3
		참고인 중지	1.6	1.3	1.2	1.1	1.2	1.3	1.4	1.8	1.2	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기소	소계	21.5	21.0	20.9	20.0	20.0	18.2	19.3	17.3	16.5	15.1
		구공판 구속	1.3	1.0	1.0	0.8	1.0	0.5	0.4	0.1	0.0	0.0
		구공판불구속	0.4	0.3	0.3	0.4	0.4	0.2	0.2	0.1	0.2	0.2
		구약식	18.7	18.5	18.3	17.8	17.7	16.6	17.7	16.5	15.4	14.1
		소년보호송치	0.3	0.2	0.3	0.2	0.1	0.1	0.1	0.0	0.1	0.1
		가정보호송치	0.8	1.0	1.0	0.8	0.8	0.8	0.9	0.6	0.8	0.7

##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불기소	소계	77.9	78.4	78.6	79.5	79.5	81.1	80.1	82.1	82.6	84.2	
		기소유예	12.3	11.5	10.0	8.5	9.4	7.7	7.9	5.3	4.5	5.1	
		혐의 없음	3.2	2.9	3.3	3.2	3.0	2.9	3.1	2.3	2.3	2.9	
		죄가 안됨	0.0	0.1	0.2	0.1	0.2	0.2	0.2	0.1	0.0	0.1	
		공소권 없음	61.6	63.4	64.6	67.2	66.4	69.9	68.5	74.0	75.5	75.8	
		기소중지	0.7	0.4	0.4	0.4	0.4	0.4	0.4	0.4	0.4	0.3	0.3
		참고인 중지	0.1	0.1	0.1	0.1	0.1	0.0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법	기소	소계	54.0	51.6	52.6	44.3	44.3	39.6	38.2	35.5	35.8	35.8	
		구공판 구속	3.7	3.2	3.2	3.2	2.9	1.7	1.3	1.7	1.9	2.2	
		구공판불구속	1.9	1.7	1.7	1.9	2.0	1.5	1.3	2.4	4.6	6.1	
		구약식	45.3	43.6	44.6	38.6	36.8	34.1	33.3	27.8	22.2	20.3	
		소년보호송치	2.4	2.2	1.9	1.6	1.4	1.3	1.4	2.9	6.5	6.5	
		가정보호송치	0.7	0.9	1.2	1.0	1.2	1.0	0.9	0.7	0.6	0.7	
	불기소	소계	45.6	47.8	47.0	53.2	55.2	59.8	61.4	63.9	63.5	63.5	
		기소유예	38.1	40.5	38.5	31.4	32.9	35.0	35.1	42.2	48.3	45.7	
		혐의 없음	4.6	4.8	5.5	5.6	5.6	5.8	6.2	9.3	12.3	14.9	
		죄가 안됨	0.1	0.1	0.2	0.2	0.2	0.2	0.2	0.2	0.2	0.3	
		공소권 없음	0.2	0.2	0.8	14.1	14.7	17.3	18.5	10.3	0.4	0.4	
		기소중지	2.2	1.9	1.7	1.6	1.6	1.3	1.2	1.7	2.0	1.9	
		참고인 중지	0.4	0.3	0.3	0.3	0.2	0.2	0.2	0.2	0.3	0.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제5절 피해자

###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폭력 범죄의 피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상해 범죄의 경우 남성이 1999년 63.4%, 2000년 63.8%, 2001년 63.9%, 2002년 61.1%, 2003년 61.4%, 2004년 55.9%, 2005년 55.2%, 2006년 61.2%, 2007년 63.8%, 2008년 63.6% 등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중 40세 이하의 피해자가 1999년 20.4%, 2000년 20.7%, 2001년

20.4%, 2002년 18.9%, 2003년 18.0%, 2004년 13.6%, 2005년 11.4%, 2006년 13.9%, 2007년 14.2%, 2008년 13.4%, 50세 이하의 피해자가 1999년 16.2%, 2000년 16.2%, 2001년 16.3%, 2002년 15.6%, 2003년 17.4%, 2004년 15.5%, 2005년 14.9%, 2006년 19.0%, 2007년 19.8%, 2008년 19.1%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즉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40세 이하의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에는 50세 이하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상해 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1999년 35.6%, 2000년 35.3%, 2001년 36.4%, 2002년 37.8%, 2003년 37.8%, 2004년 43.3%, 2005년 41.1%, 2006년 34.0%, 2007년 35.0%, 2008년 34.8% 등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40세 이하의 피해자가 1999년 11.5%, 2000년 10.6%, 2001년 11.1%, 2002년 11.0%, 2003년 10.7%, 2004년 10.6%, 2005년 9.0%, 2006년 6.1%, 2007년 8.0%, 2008년 7.6%, 50세 이하의 피해자가 1999년 9.8%, 2000년 10.2%, 2001년 10.1%, 2002년 10.7%, 2003년 11.2%, 2004년 13.0%, 2005년 12.6%, 2006년 8.6%, 2007년 12.0%, 2008년 11.7% 등으로 남성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폭행 범죄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은 1999년 63.8%, 2000년 63.7%, 2001년 62.5%, 2002년 60.2%, 2003년 61.0%, 2004년 56.4%, 2005년 55.4%, 2006년 51.5%, 2007년 64.4%, 2008년 64.3%이었고, 이중 40세 이하의 피해자는 1999년 20.0%, 2000년 21.3%, 2001년 21.0%, 2002년 19.1%, 2003년 19.0%, 2004년 14.4%, 2005년 12.0%, 2006년 14.5%, 2007년 14.6%, 2008년 14.0%, 50세 이하의 피해자는 1999년 14.5%, 2000년 16.1%, 2001년 15.7%, 2002년 14.5%, 2003년 17.0%, 2004년 15.0%, 2005년 14.7%, 2006년 19.2%, 2007년 20.5%, 2008년 19.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폭행 범죄의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1999년 35.3%, 2000년 35.5%, 2001년 36.5%, 2002년 38.9%, 2003년 37.9%, 2004년 42.7%, 2005년 41.2%, 2006년 36.3%, 2007년 34.4%, 2008년 34.2%로 나타났으며, 역시 30세 이하 피해자와 40세 이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폭처법 피해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1999년 69.2%, 2000년 69.0%, 2001년 67.5%, 2002년 66.7%, 2003년 65.2%, 2004년 60.6%, 2005년 60.6%, 2006년 64.1%, 2007년 69.2%, 2008년 68.7% 등으로 상해나 폭행에 비해 다소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처법 피해자는 30세 이하의 피해자 1999년 15.9%, 2000년 14.1%, 2001년 13.1%, 2002년 13.4%, 2003년 11.8%, 2004년 12.4%, 2005년 11.8%, 2006년 13.5%, 2007년 14.2%, 2008년 13.6% 등으로 상해나 폭행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50세 이하의 피해자의 비율은 낮았다.

폭처법 여성 피해자는 1999년 29.9%, 2000년 30.1%, 2001년 31.6%, 2002년 32.3%, 2003년 34.2%, 2004년 38.6%, 2005년 36.0%, 2006년 33.3%, 2007년 29.4%, 2008년 30.2%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40세 이하 피해자와 50세 이하 피해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표 2-18 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	남	소계	63.4	63.8	63.9	61.1	61.4	55.9	55.2	61.2	63.8	63.6
		20세 이하	3.9	4.2	3.8	3.3	2.9	3.1	4.0	3.3	3.7	4.1
		30세 이하	9.8	9.1	8.0	8.4	8.4	8.3	7.8	10.1	10.3	10.1
		40세 이하	20.4	20.7	20.4	18.9	18.0	13.6	11.4	13.9	14.2	13.4
		50세 이하	16.2	16.2	16.3	15.6	17.4	15.5	14.9	19.0	19.8	19.1
		60세 이하	7.8	8.0	8.4	8.1	8.1	8.4	9.3	10.0	10.9	11.8
		60세 초과	5.3	5.6	6.0	6.8	6.6	7.0	7.8	4.9	4.7	5.1
	여	소계	35.6	35.3	36.4	37.8	37.8	43.3	41.1	34.0	35.0	34.8
		20세 이하	1.3	1.5	1.6	1.3	1.3	1.7	1.6	0.2	1.4	1.4
		30세 이하	4.2	4.5	4.7	5.3	5.2	6.1	5.5	1.3	5.8	5.6
		40세 이하	11.5	10.6	11.1	11.0	10.7	10.6	9.0	6.1	8.0	7.6
		50세 이하	9.8	10.2	10.1	10.7	11.2	13.0	12.6	8.6	12.0	11.7
		60세 이하	5.2	4.6	4.9	5.2	5.0	6.1	6.4	12.5	5.2	5.7
		60세 초과	3.6	3.9	4.0	4.3	4.4	5.8	6.0	5.3	2.6	2.8
불상	-	-	-	-	-	-	2.7	3.0	0.5	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행	남	소계	63.8	63.7	62.5	60.2	61.0	56.4	55.4	51.5	64.4	64.3
		20세 이하	4.9	4.4	4.8	4.5	3.5	3.2	4.3	3.5	4.0	4.7
		30세 이하	11.7	9.6	8.3	9.0	8.5	8.9	9.5	10.2	10.1	10.0
		40세 이하	20.0	21.3	21.0	19.1	19.0	14.4	12.0	14.5	14.6	14.0
		50세 이하	14.5	16.1	15.7	14.5	17.0	15.0	14.7	19.2	20.5	19.5
		60세 이하	7.7	7.5	7.5	7.0	7.6	8.3	8.8	4.1	11.3	11.9
		60세 초과	5.0	4.8	5.2	6.1	5.4	6.6	6.1	0.0	3.9	4.2

제2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	소계	35.3	35.5	36.5	38.9	37.9	42.7	41.2	36.3	34.4	34.2
		20세 이하	1.8	2.3	2.1	2.5	2.3	2.3	2.7	1.9	2.0	2.0
		30세 이하	4.6	5.4	5.4	6.0	6.1	6.8	6.5	6.3	6.2	6.1
		40세 이하	11.7	11.9	11.5	11.8	11.5	11.0	9.8	9.1	8.1	7.8
		50세 이하	10.2	9.5	10.2	11.0	10.7	12.8	12.8	12.4	11.8	11.3
		60세 이하	4.0	3.9	4.3	4.2	4.2	5.2	5.1	4.6	4.6	5.0
		60세 초과	3.0	2.5	3.0	3.4	3.1	4.6	4.3	2.0	1.7	2.0
		불상	-	-	-	-	-	-	2.4	0.9	0.4	0.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처법	남	소계	69.2	69.0	67.5	66.7	65.2	60.6	60.6	64.1	69.2	68.7
		20세 이하	6.3	6.3	5.6	5.5	4.7	3.8	5.4	7.0	12.3	12.8
		30세 이하	15.9	14.1	13.1	13.4	11.8	12.4	11.8	13.5	14.2	13.6
		40세 이하	24.0	24.8	24.9	22.7	21.8	17.1	14.9	15.2	15.0	14.3
		50세 이하	15.9	16.4	15.9	16.5	18.1	17.3	17.6	17.5	17.4	17.1
		60세 이하	5.3	5.6	5.7	5.9	6.1	7.3	7.9	8.0	7.6	8.4
		60세 초과	1.8	1.8	2.3	2.7	2.7	2.7	3.0	2.9	2.7	2.5
	여	소계	29.9	30.1	31.6	32.3	34.2	38.6	36.0	33.3	29.4	30.2
		20세 이하	1.9	2.2	2.3	2.2	2.1	2.5	2.6	3.4	5.1	5.6
		30세 이하	5.0	5.2	5.7	6.0	6.2	7.0	6.4	6.1	5.4	4.9
		40세 이하	11.1	10.8	11.1	10.6	11.1	10.9	9.1	7.6	5.7	5.3
		50세 이하	8.7	8.8	9.3	10.1	10.9	13.2	12.7	11.0	8.3	8.2
		60세 이하	2.4	2.3	2.4	2.5	2.9	3.7	3.8	3.8	3.5	3.6
		60세 초과	0.8	0.8	0.8	0.9	1.0	1.3	1.4	1.4	1.4	1.4
		불상	-	-	-	-	-	-	2.5	1.7	0.7	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타인의 비율이 1999년 39.1%, 2000년 40.4%, 2001년 41.1%, 2002년 40.9%, 2003년 39.6%, 2004년 42.5%, 2005년 44.6%, 2006년 51.7%, 2007년 52.7%, 2008년 52.9% 등으로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폭행은 1999년 42.3%, 2000년 46.4%, 2001년 46.8%, 2002년 46.3%, 2003년 44.0%, 2004년 38.3%, 2005년 35.8%, 2006년 36.0%, 2007년 35.2%, 2008년 33.2%, 폭처법은 1999년 52.9%,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 55.4%, 2001년 55.5%, 2002년 55.9%, 2003년 53.5%, 2004년 56.0%, 2005년 55.8%, 2006년 58.9%, 2007년 63.5%, 2008년 60.5%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폭행과 폭처법의 경우 2004년 이후 미상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2-19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해	직장동료	4.5	5.1	4.7	5.2	4.8	6.4	7.0	5.4	5.2	5.3
	친구/친족	11.2	10.9	11.5	11.3	11.4	13.5	13.4	13.6	14.2	13.8
	거래상대방	2.8	2.4	2.3	2.2	2.3	2.2	1.9	1.3	1.1	1.0
	이웃/지인	20.5	20.2	20.4	19.5	18.5	18.0	18.0	14.6	14.0	13.8
	타인	39.1	40.4	41.1	40.9	39.6	42.5	44.6	51.7	52.7	52.9
	기타	17.9	16.6	16.2	15.8	18.2	12.1	9.4	7.8	7.3	7.2
	미상	3.3	3.5	3.2	4.4	4.5	4.7	5.1	4.9	4.7	5.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행	직장동료	3.0	3.3	3.5	3.7	3.4	3.6	2.9	1.6	1.4	1.6
	친구/친족	13.2	12.4	12.6	12.6	12.8	11.9	10.0	8.1	7.5	6.8
	거래상대방	2.9	2.4	2.4	2.4	2.3	1.8	1.5	1.0	0.8	0.7
	이웃/지인	18.7	16.4	16.8	15.8	15.4	11.3	9.7	6.6	5.8	5.6
	타인	42.3	46.4	46.8	46.3	44.0	38.3	35.8	36.0	35.2	33.2
	기타	16.5	15.0	14.3	14.5	17.4	8.6	6.1	4.3	3.7	3.8
	미상	2.7	3.0	2.9	4.0	4.0	24.0	33.4	41.6	44.9	47.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폭 처 법	직장동료	2.2	2.3	2.1	2.2	2.0	2.4	2.5	2.3	2.0	2.1
	친구/친족	7.3	7.2	7.5	7.6	8.2	9.7	9.1	7.5	6.8	7.4
	거래상대방	1.9	1.4	1.4	1.3	1.3	1.1	1.0	0.9	0.7	0.8
	이웃/지인	12.0	11.2	11.1	10.5	10.5	9.2	9.0	7.5	6.5	6.6
	타인	52.9	55.4	55.5	55.9	53.5	56.0	55.8	58.9	63.5	60.5
	기타	18.0	16.6	17.0	16.8	18.5	10.7	8.0	7.7	7.6	7.7
	미상	4.9	5.1	4.7	5.1	5.2	10.3	13.8	14.5	12.2	14.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직장동료: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 친구/친족: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 제6절 소결

공식통계상 폭력 범죄의 발생 추세는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길거리나 업무지구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남성 20대 또는 30대가 많으며,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폭력 범죄를 인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매우 많으며,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다.

이처럼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사한 변수값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세 개의 법률은 규제하는 행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 법률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점은 공범유무와 범죄자의 연령분포이다. 그러나 이 두 변수 역시 세 개의 법률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범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폭처법의 규정상 공범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가 모두 같다 하더라도 공범의 존재는 폭처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연령분포가 다른 것은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경향이 강한 집단이 10대들이기 때문에 폭력이 행사될 경우 함께있던 또래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할 뿐이다.

그런데 조금 허무하기는 하지만 공식통계는 실제 폭력범죄의 극히 일부만을 반영할 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내용이다. 즉, 공식통계를 통해 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식통계 내부만을 보았을 때에도 기타 또는 미상으로 처리된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실제적 결측값이 상당한 수준이며, 연구진이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거나 일선 경찰관들

을 면접하여 얻은 자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음주와 관련된 변수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 관찰 및 면접에서는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음주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공식통계상에서는 이에 비해 과소측정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통계와 현장의 상이성은 미기록사건과 미신고사건이 기록된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기록사건과 미신고사건에 대한 논의는 제5장과 제6장을 참조하라.

## 제3장

# 폭력범죄 및 가해자·피해자 특성



# 폭력범죄 및 가해자·피해자 특성

본 장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 및 범죄자,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 진술의 의미는 본 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폭력범죄의 특성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의 전체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폭력범죄의 경우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인지한 폭력범죄 중 많은 사건이 공식적인 기록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기록된 범죄 역시 형사사법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한 숨겨진 범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서술된 내용은 ‘기록된’ 범죄의 특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이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서울 1곳, 수도권 1곳, 비수도권 1곳의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2009년의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이다. 기록조사를 위해 선정된 검찰청은 제5장에서 분석된 현장관찰조사의 조사지역과 연계를 가진 지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3곳의 경찰서 산하의 8개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과정을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는데, 기록조사의 대상이 된 검찰청은 각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검찰청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폭력범죄사건의 사례수는 총 405건으로, 서울지역의 사건은 145건(35.8%), 수도권 지역의 사건은 124건(30.6%), 비수도권의 사건은 136건(33.6%)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상해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114건(28.1%),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151건(37.3%),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140건(34.6%)이었다. 여기에서 상해사건은 일반상해 사건 112건, 존속상해 사건 1건, 존속상해치사 사건 1건 등을 포함하며, 폭행사건은 일반폭행 143건, 특수폭행 1건, 폭행치상 1건, 특수폭행치사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2건 등을 포함한다.

**표 3-1 폭력범죄 사례의 분포**

		빈도(건)	비율(%)
지역	서울	145	35.8
	수도권	124	30.6
	비수도권	136	33.6
	계	405	100.0
죄명	상해	114	28.1
	폭행	151	37.3
	폭처법	140	34.6
	계	405	100.0

일반적으로 범죄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의 형식은 유효비율만을 사용하여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폭력범죄사건의 기록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폭력범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변수들에서 결측값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결측값을 무시하고 폭력범죄의 특성을 논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제시할 많은 표에서는 유효빈도, 유효비율과 함께 결측값을 포함한 빈도와 비율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단 각 변수값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설명할 때에는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비율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 사건들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폭력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기록조사시 코딩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제1절 사건의 특성

### 1. 발생 계절, 시간

폭력 범죄가 발생한 계절을 살펴보면 봄(3-5월)에 발생한 사건이 126건(31.7%), 여름(6-8월)에 발생한 사건이 105건(26.4%), 가을(9-11월)에 발생한 사건이 81건(20.4%), 겨울(12-2월)에 발생한 사건이 86건(21.6%) 등으로 봄이나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나타난 계절별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2009년 여름에 발생한 폭력 범죄의 비율은 기록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하지만, 봄에 발생한 폭력 범죄의 비율이 공식통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 발생 계절 역시 죄명이나 발생 장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3-2 발생 계절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봄(3-5월)	126	31.1	31.7
여름(6-8월)	105	25.9	26.4
가을(9-11월)	81	20.0	20.4
겨울(12-2월)	86	21.2	21.6
계	398	98.3	100.0
결측값	7	1.7	
계	405	100.0	

표 3-3 죄명, 장소별 발생계절

(단위: 건(%))

		죄명			장소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발생 계절	봄 (3-5월)	35 (31.3)	50 (34.0)	41 (29.5)	45 (31.0)	40 (33.3)	41 (30.8)	126 (31.7)
	여름 (6-8월)	28 (25.0)	35 (23.8)	42 (30.2)	38 (26.2)	30 (25.0)	37 (27.8)	105 (26.4)
	가을 (9-11월)	24 (21.4)	33 (22.4)	24 (17.3)	25 (17.2)	30 (25.0)	26 (19.5)	81 (20.4)
	겨울 (12-2월)	25 (22.3)	29 (19.7)	32 (23.0)	37 (25.5)	20 (16.7)	29 (21.8)	86 (21.6)
계		112 (100.0)	147 (100.0)	139 (100.0)	145 (100.0)	120 (100.0)	133 (100.0)	398 (100.0)
통계값		$\chi^2 = 3.120$ $p = 0.794$			$\chi^2 = 4.735$ $p = 0.578$			

폭력 범죄의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00:00-02:59에 발생한 사건이 96건(24.3%), 03:00-05:59에 발생한 사건이 43건(10.9%), 06:00-08:59에 발생한 사건이 22건(5.6%), 09:00-11:59에 발생한 사건이 25건(6.3%), 12:00-14:59에 발생한 사건이 25건(6.3%), 15:00-17:59에 발생한 사건이 43건(10.9%), 18:00-20:59에 발생한 사건이 48건(12.2%), 21:00-23:59에 발생한 사건이 93건(23.5%) 등으로 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 가까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녁 18시에서 21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같은 분포는 공식통계에 비해 심야나 새벽시간(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여 수집한 자료와는 일치한다.

폭력 범죄의 발생 시간 역시 죄명이나 발생 장소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3-4 발생 시간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00:00-02:59	96	23.7	24.3
03:00-05:59	43	10.6	10.9
06:00-08:59	22	5.4	5.6
09:00-11:59	25	6.2	6.3
12:00-14:59	25	6.2	6.3
15:00-17:59	43	10.6	10.9
18:00-20:59	48	11.9	12.2
21:00-23:59	93	23.0	23.5
계	395	97.5	100.0
결측값	10	2.5	-
계	405	100.0	-

표 3-5 죄명, 장소별 발생시간

(단위: 건(%))

	발생시간	죄명			장소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00:00-02:59	27 (24.3)	32 (21.9)	37 (26.8)	35 (24.3)	37 (30.8)	24 (18.3)	96 (24.3)
	03:00-05:59	9 (8.1)	14 (9.6)	20 (14.5)	16 (11.1)	13 (10.8)	14 (10.7)	43 (10.9)
	06:00-08:59	8 (7.2)	7 (4.8)	7 (5.1)	8 (5.6)	6 (5.0)	8 (6.1)	22 (5.6)
	09:00-11:59	9 (8.1)	10 (6.8)	6 (4.3)	7 (4.9)	10 (8.3)	8 (6.1)	25 (6.3)
	12:00-14:59	8 (7.2)	8 (5.5)	9 (6.5)	7 (4.9)	5 (4.2)	13 (9.9)	25 (6.3)
	15:00-17:59	16 (14.4)	14 (9.6)	13 (9.4)	12 (8.3)	13 (10.8)	18 (13.7)	43 (10.9)
	18:00-20:59	15 (13.5)	19 (13.0)	14 (10.1)	15 (10.4)	14 (11.7)	19 (14.5)	48 (12.2)
	21:00-23:59	19 (17.1)	42 (28.8)	32 (23.2)	44 (30.6)	22 (18.3)	27 (20.6)	93 (23.5)
	계	111 (100.0)	146 (100.0)	138 (100.0)	144 (100.0)	120 (100.0)	131 (100.0)	395 (100.0)
	통계값	$\chi^2 = 12.027$ $p = 0.604$			$\chi^2 = 17.186$ $p = 0.246$			

## 2. 장소

폭력 범죄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133건(33.8%),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59건(15.0%),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61건(15.5%), 요식업소/시장/편의점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95건(24.1%),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34건(8.6%),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2건(3.0%)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분포는 공식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이같은 범죄 발생 장소의 분포는 죄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상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비율은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수도권이 그다음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비율이 낮았다. 반면 가해자의 근무지, 피해자의 근무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 근무지 등 사건 당사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비율은 비수도권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3-6 범행 장소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노상	133	32.8	33.8
거주지	59	14.6	15.0
근무지	61	15.1	15.5
요식업소/시장/ 편의점등	95	23.5	24.1
공공장소	34	8.4	8.6
기타	12	3.0	3.0
계	394	97.3	100.0
결측값	11	2.7	-
계	405	100.0	-

표 3-7 죄명, 장소별 범죄 발생 장소

(단위: 건(%))

구 분	죄명			장소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범행 장소	노상	27 (24.5)	49 (33.8)	57 (641.0)	66 (46.5)	38 (31.7)	29 (22.0)	133 (33.8)
	가주지	22 (20.0)	24 (16.6)	13 (9.4)	19 (13.4)	20 (16.7)	20 (15.2)	59 (15.0)
	근무지	22 (20.0)	24 (16.6)	15 (10.8)	16 (11.3)	21 (17.5)	24 (18.2)	61 (15.5)
	요식업소/시장/ 편의점등	27 (24.5)	31 (21.4)	37 (26.6)	28 (19.7)	27 (22.5)	40 (30.3)	95 (24.1)
	공공장소	8 (7.3)	12 (8.3)	14 (10.1)	12 (8.5)	11 (9.2)	11 (8.3)	34 (8.6)
	기타	4 (3.6)	5 (3.4)	3 (2.2)	1 (0.7)	3 (2.5)	8 (6.1)	12 (3.0)
계	110 (100.0)	145 (100.0)	139 (100.0)	142 (100.0)	120 (100.0)	132 (100.0)	394 (100.0)	
통계값	$\chi^2= 15.466$ $p = 0.116$			$\chi^2= 25.472$ $p = 0.005$				

### 3. 상호작용

사건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사건 이전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을 포함)가 145건(37.7%),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가 240건(62.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죄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발생장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전에 상호작용이 없다가 사건 당일 폭력이 행사된 경우가 46.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사건 이전에 당사자들간 상호작용이 있었던 경우가 7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가해자-피해자간 상호작용 여부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없었음	145	35.8	37.7
있었음	240	59.3	62.3
계	385	95.1	100.0
결측값	20	4.9	
계	405	100.0	

표 3-9 죄명, 장소별 가해자-피해자간 상호작용 여부

(단위: 건(%))

		죄명			장소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상호 작용	없었음	39 (36.4)	54 (38.3)	52 (38.0)	42 (29.8)	53 (46.9)	50 (38.2)	145 (37.7)
	있었음	68 (63.6)	87 (61.7)	85 (62.0)	99 (70.2)	60 (53.1)	81 (61.8)	240 (62.3)
계		107 (100.0)	141 (100.0)	137 (100.0)	141 (100.0)	113 (100.0)	131 (100.0)	385 (100.0)
통계값		$\chi^2 = 0.096$ $p = 0.953$		$\chi^2 = 7.848$ $p = 0.020$				

#### 4. 공범

각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단독범이 114건(29.0%), 범죄자가 2명인 경우가 146건(37.2%), 범죄자가 3건인 경우가 52(13.2%), 범죄자가 4명인 경우가 42건(10.7%), 범죄자가 5명 이상인 경우가 39건(9.9%)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0 범죄자수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단독범	114	28.1	29.0
2명	146	36.0	37.2
3명	52	12.8	13.2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4명	42	10.4	10.7
5명이상	39	9.6	9.9
계	393	97.0	100.0
결측값	12	3.0	-
계	405	100.0	-

각 사건의 범죄자 수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44.0%, 폭행의 경우 38.9%가 단독범이었던 것에 비해 폭처범은 7.1%만이 단독범이었고 나머지 92.9%는 공범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상해와 폭행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다 하더라도 2명의 범죄자가 함께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각각 43.1%, 48.6%로 공범이 있는 경우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폭처범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2명인 경우가 20.7%, 3명인 경우가 25.0%, 4명인 경우가 22.1%, 5명 이상인 경우가 25.0% 등 공범의 수가 다른 죄명으로 처리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장소별 범죄자 수는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3-11 죄명, 장소별 범죄자수

(단위: 건(%))

	범죄자수	죄명			장소			계
		상해	폭행	폭처범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단독범	48 (44.0)	56 (38.9)	10 (7.1)	33 (23.7)	36 (30.3)	45 (33.3)	114 (29.0)
	2명	47 (43.1)	70 (48.6)	29 (20.7)	59 (42.4)	44 (37.0)	43 (31.9)	146 (37.2)
	3명	6 (5.5)	11 (7.6)	35 (25.0)	17 (12.2)	17 (14.3)	18 (13.3)	52 (13.2)
	4명	6 (5.5)	5 (3.5)	31 (22.1)	14 (10.1)	11 (9.2)	17 (12.6)	42 (10.7)
	5명 이상	2 (1.8)	2 (1.4)	35 (25.0)	16 (11.5)	11 (9.2)	12 (8.9)	39 (9.9)
	계	109 (100.0)	144 (100.0)	140 (100.0)	139 (100.0)	119 (100.0)	135 (100.0)	393 (100.0)
	통계값	$\chi^2=152.469$ $p=.000$			$\chi^2=5.834$ $p=0.666$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들만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86건(57.0%), 여성들만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건(7.9%), 남성과 여성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53건(35.1%)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포는 죄명이나 발생 장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3-12 공범자의 성별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남자	86	21.2	57.0
여자	12	3.0	7.9
남녀혼합	53	13.1	35.1
계	151	37.3	100.0
결측값	254	62.7	-
계	405	100.0	-

표 3-13 죄명, 장소별 공범자의 성별

(단위: 건(%))

		죄명			장소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범자의 성별	남자	12 (63.2)	12 (46.2)	62 (58.5)	40 (63.5)	15 (44.1)	31 (57.4)	86 (57.0)
	여자	1 (5.3)	2 (7.7)	9 (8.5)	3 (4.8)	4 (11.8)	5 (9.3)	12 (7.9)
	남녀혼합	6 (31.6)	12 (46.2)	35 (33.0)	20 (31.7)	15 (44.1)	18 (33.3)	53 (35.1)
계		19 (100.0)	26 (100.0)	106 (100.0)	63 (100.0)	34 (100.0)	54 (100.0)	151 (100.0)
통계값		$\chi^2 = 2.022$ $p = 0.732$			$\chi^2 = 4.041$ $p = 0.401$			

## 제2절 가해자 특성

조사된 총 405건의 사례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는 총 1,292명이었으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461명(35.7%),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383명(29.6%),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448명(34.7%)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순수 피해자(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례들)는 274명(21.2%), 순수 가해자(거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는 571명(44.2%),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상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인 경우는 447명(34.6%) 등이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사건에서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폭력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기록조사시 코딩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순수 가해자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들의 특성을 기술할 것이며, 순수 피해자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표 3-14 가해자 및 피해자 분포

		빈도(건)	비율(%)
장소	서울	461	35.7
	수도권	383	29.6
	비수도권	448	34.7
	계	1292	100.0
유형	피해자	274	21.2
	가해자	571	44.2
	가해자이자 피해자	447	34.6
	계	1292	100.0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78.6%, 여성이 21.4%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분포는 순수가해자인 경우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로 구분해서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가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세이하 10.4%, 20대 26.2%, 30대 22.3%, 40대 25.5%, 50대 11.2%, 60대 3.7%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순수가해자는 20세 이하 12.0%, 40대 28.9% 등으로 40대와 20대 이하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

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는 20대 31.8%, 30대 24.2% 등으로 순수가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3-15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징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성 별	남자	442 (77.4)	357 (80.0)	799 (78.6)	$\chi^2 = 1.034$ $p = 0.309$
	여자	129 (22.6)	89 (20.0)	218 (21.4)	
	계	571 (100.0)	446 (100.0)	1017 (100.0)	
연 령	20세이하	68 (12.0)	37 (8.3)	105 (10.4)	$\chi^2 = 21.295$ $p = 0.002$
	20대	123 (21.7)	142 (31.8)	265 (26.2)	
	30대	118 (20.8)	108 (24.2)	226 (22.3)	
	40대	164 (28.9)	94 (21.1)	258 (25.5)	
	50대	66 (11.6)	47 (10.5)	113 (11.2)	
	60대	23 (4.1)	14 (3.1)	37 (3.7)	
	71세이상	5 (.9)	4 (.9)	9 (.9)	
계	567 (100.0)	446 (100.0)	1013 (100.0)		

폭력범죄 가해자들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36.3%,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42.7%,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21.0% 등으로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순수 가해자들은 중소도시(48.1%)나 읍면지역(23.1%)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는 대도시(46.4%)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폭력범죄 가해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무학 1.1%, 초등학교 6.2%, 중학교 12.2%, 고등학교 35.7%, 대학교 22.6%, 대학원이상 1.1%, 미상 21.1%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중 순수 가해자는 중학교 학력(졸업, 재학, 중퇴 포함)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13.6%, 고등학교 학력(졸업, 재학, 중퇴 포함)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38.3%로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나타냈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대학교 학력(졸업, 재학, 중퇴 포함)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29.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16 가해자의 주거지와 교육수준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주거지	대도시	161 (28.8)	193 (46.4)	354 (36.3)	$\chi^2 = 32.091$ $p = 0.000$
	중소도시	269 (48.1)	147 (35.3)	416 (42.7)	
	읍면지역	129 (23.1)	76 (18.3)	205 (21.0)	
계		559 (100.0)	416 (100.0)	975 (100.0)	
교육수준	무학	3 (.7)	5 (1.7)	8 (1.1)	$\chi^2 = 14.713$ $p = 0.023$
	초등학교	26 (6.2)	18 (6.2)	44 (6.2)	
	중학교	57 (13.6)	30 (10.3)	87 (12.2)	
	고등학교	161 (38.3)	93 (31.8)	254 (35.7)	
	대학교	76 (18.1)	85 (29.1)	161 (22.6)	
	대학원이상	5 (1.2)	3 (1.0)	8 (1.1)	
	미상	92 (21.9)	58 (19.9)	150 (21.1)	
계		420 (100.0)	292 (100.0)	712 (100.0)	

기록조사에 나타난 폭력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 17.1%, 제조업, 건설업운영 1.5%, 제조업, 건설업피고용인 5.6%, 단순노무, 노점 7.5%, 유통업, 서비스업 13.0%, 서비스업종업원 6.3%, 회사원 17.6%, 운수업 4.3%, 주부 4.3%, 학생 12.0%, 전문직 2.8% 등으로 회사원과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비율도 높았다.

이것을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수가해자는 회사원(18.6%)과 학생(13.5%)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범죄자에 비해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무직(18.6%), 유통업 서비스업 운영자(15.2%), 전문직(4.3%)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17 가해자 직업

(단위: 건(%))

	가해유형		계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직업	무직	91 (15.9)	83 (18.6)	174 (17.1)
	제조업, 건설업운영	5 (.9)	10 (2.2)	15 (1.5)
	제조업, 건설업피고용인	31 (5.4)	26 (5.8)	57 (5.6)
	단순노무, 노점	45 (7.9)	31 (6.9)	76 (7.5)
	유통업, 서비스업 운영	64 (11.2)	68 (15.2)	132 (13.0)
	서비스업종업원	32 (5.6)	32 (7.2)	64 (6.3)
	회사원	106 (18.6)	73 (16.3)	179 (17.6)
	운수업	28 (4.9)	16 (3.6)	44 (4.3)
	주부	30 (5.3)	14 (3.1)	44 (4.3)
	학생	77 (13.5)	45 (10.1)	122 (12.0)
	전문직	10 (1.8)	19 (4.3)	29 (2.8)
	기타, 미상	52 (9.1)	30 (6.7)	82 (8.1)
	계	571 (100.0)	447 (100.0)	1018 (100.0)
통계값	$\chi^2 = 22.669$ $p = 0.020$			

## 2. 전과

기록조사에 나타난 폭력 범죄자들의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자들의 총 전과수를 살펴보면 본 건 이외의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2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회 23.3%, 2회 11.9%, 3회 9.7%, 4회 6.2%, 5회 이상 24.0%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중 순수 가해자는 전과를 3회 이상(3회 11.1%, 4회 8.3%, 5회 이상 25.8%)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전과가 없거나(28.9%) 있더라도 2회 이하(1회 24.6%, 2회 12.2%)인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기에서 총 전과수란 실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기록이 남아있는 전체 범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도 실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행한 것이 인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총 전과수에는 포함된다.

다음으로 실전과 횟수는 과실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처벌된 횟수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토예비군법, 도로교통법 등 의도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과실범죄의 특성이 많은 죄명을 제외하고 전과횟수를 측정하였다.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죄자들의 실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가 36.8%, 1회 23.8%, 2회 10.8%, 3회 7.7%, 4회 5.0%, 5회 이상 15.9%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순수가해자는 실전과가 있는 경우가 대체로 많았고,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실전과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동종전과 횟수는 없는 경우가 55.0%, 1회 18.8%, 2회 9.0%, 3회 7.0%, 4회 3.1%, 5회 이상 7.1% 등이었고, 가해자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동종전과란 폭행, 상해, 폭처법, 살인 등 폭력이 수반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표 3-18 가해자 전과횟수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총 전과	전과 없음	76 (21.1)	102 (28.9)	178 (25.0)	$x^2 = 13.015$ $p = 0.023$
	1회	79 (21.9)	87 (24.6)	166 (23.3)	
	2회	42 (11.7)	43 (12.2)	85 (11.9)	
	3회	40 (11.1)	29 (8.2)	69 (9.7)	
	4회	30 (8.3)	14 (4.0)	44 (6.2)	
	5회 이상	93 (25.8)	78 (22.1)	171 (24.0)	
	계	360 (100.0)	353 (100.0)	713 (100.0)	
실 전과 횟수	전과 없음	112 (31.7)	147 (42.0)	259 (36.8)	$x^2 = 14.040$ $p = 0.015$
	1회	93 (26.3)	74 (21.1)	167 (23.8)	
	2회	32 (9.1)	44 (12.6)	76 (10.8)	
	3회	30 (8.5)	24 (6.9)	54 (7.7)	
	4회	22 (6.2)	13 (3.7)	35 (5.0)	
	5회 이상	64 (18.1)	48 (13.7)	112 (15.9)	
	계	353 (100.0)	350 (100.0)	703 (100.0)	
동종 전과 횟수	전과 없음	186 (52.7)	201 (57.4)	387 (55.0)	$x^2 = 3.586$ $p = 0.610$
	1회	67 (19.0)	65 (18.6)	132 (18.8)	
	2회	31 (8.8)	32 (9.1)	63 (9.0)	
	3회	30 (8.5)	19 (5.4)	49 (7.0)	
	4회	12 (3.4)	10 (2.9)	22 (3.1)	
	5회 이상	27 (7.6)	23 (6.6)	50 (7.1)	
	계	353 (100.0)	350 (100.0)	703 (100.0)	

## 3. 범행당시 상태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행 시 범죄자의 음주상태를 살펴보면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가 47.8%, 약간 마셨으나 취하지 않은 경우가 27.9%, 취했으나 의식은 있었던 경우가 19.3%,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던 경우가 5.1%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기록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기록이 작성되었다는 점과, 코딩 당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주관성 개입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조사 결과상에는 순수 가해자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58.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약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40.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범죄자들의 범행당시 감정상태를 살펴보면, 좌절 0.9%, 분노 82.5%, 두려움 2.3%, 만취 1.4%, 흥분 4.6%, 당황 1.4% 등으로 화가난 상태(분노)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당사자의 진술이나 기록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기록이 작성되었고 코딩 당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주관성이 개입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범죄자들 중 순수 가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보다 분노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고(84.9%),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두려움(3.3%)과 흥분(6.6%)의 감정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19 가해자 범행 시 음주 상태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범행시 음주 상태	전혀 마시지 않았다	317 (58.3)	146 (34.4)	463 (47.8)	$\chi^2=76.107$ $p=0.000$
	약간 마셨다 (취하지않음)	97 (17.8)	173 (40.7)	270 (27.9)	
	취했으나 의식은 있었다	98 (18.0)	89 (20.9)	187 (19.3)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	32 (5.9)	17 (4.0)	49 (5.1)	
계		544 (100.0)	425 (100.0)	969 (100.0)	
범행시 감정 상태	좌절	3 (.7)	4 (1.2)	7 (.9)	$\chi^2=22.640$ $p=0.001$
	분노	366 (84.9)	266 (79.4)	632 (82.5)	
	두려움	7 (1.6)	11 (3.3)	18 (2.3)	
	만취	5 (1.2)	6 (1.8)	11 (1.4)	
	흥분	13 (3.0)	22 (6.6)	35 (4.6)	
	당황	1 (0.2)	10 (3.0)	11 (1.4)	
	기타	36 (8.4)	16 (4.8)	52 (6.8)	
계		431 (100.0)	335 (100.0)	766 (100.0)	

#### 4. 당사자간 평소 관계

폭력범죄 당사자간 평소 관계를 살펴보면,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당일만남사이포함)가 67.4%로 약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호작용이 있었을 경우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가 21.3%, 원만하였던 관계가 1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순수가해자(거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의 경우 원만한 관계이든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든 사건 이전에 상호작용이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상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사건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던 관계가 많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은 좋은편 3.3%, 보통 9.6%,

나쁜편 19.7% 등으로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갈등유무에 대해서는 갈등이 존재한 경우 31.3%, 갈등이 없었던 경우 6.4% 등으로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갈등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표 3-20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 및 감정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	원만하였다	67 (14.0)	27 (7.7)	94 (11.4)	$\chi^2=41.921$ $p=0.000$
	원만하지 못했다	132 (27.6)	44 (12.6)	176 (21.3)	
	사건이전 상호작용 無	279 (58.4)	278 (79.7)	557 (67.4)	
계		478 (100.0)	349 (100.0)	827 (100.0)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감정	좋은편	21 (4.4)	6 (1.8)	27 (3.3)	$\chi^2=52.848$ $p=0.000$
	보통	63 (13.1)	16 (4.7)	79 (9.6)	
	나쁜편	121 (25.1)	41 (12.1)	162 (19.7)	
	사건이전 상호작용 無	277 (57.5)	277 (81.5)	554 (67.4)	
계		482 (100.0)	340 (100.0)	822 (100.0)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존재여부	갈등이 있었음	191 (39.3)	69 (19.9)	260 (31.3)	$\chi^2=56.262$ $p=0.000$
	갈등이 없었음	43 (8.8)	10 (2.9)	53 (6.4)	
	사건이전 상호작용 無	252 (51.9)	267 (77.2)	519 (62.4)	
계		486 (100.0)	346 (100.0)	832 (100.0)	

당사자간 갈등이 존재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이나 업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금전문제 17.3%, 모욕이나 비하 13.3%, 가정불화 12.2%, 애정문제 9.4%, 채권채무관계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임에도 이전에 갈등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들 중에는 애정문제가 갈등의 주된 내용인 경우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금전문제 21.2%, 일이나 업무상문제 16.7% 등의 순이었다.

표 3-21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

(단위: 건(%))

		가해유형		계
		가해자	가해자이자피해자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	애정문제	8 (4.2)	16 (24.2)	24 (9.4)
	가정불화	24 (12.7)	7 (10.6)	31 (12.2)
	모욕, 비하	25 (13.2)	9 (13.6)	34 (13.3)
	학대	5 (2.6)	0 (.0)	5 (2.0)
	채권채무관계	14 (7.4)	6 (9.1)	20 (7.8)
	일, 업무상문제	70 (37.0)	11 (16.7)	81 (31.8)
	금전문제	30 (15.9)	14 (21.2)	44 (17.3)
	기타	13 (6.9)	3 (4.5)	16 (6.3)
계		189 (100.0)	66 (100.0)	255 (100.0)
통계값		$\chi^2 = 30.538$ $p = 0.000$		

당사자간 갈등이 존재했을 경우 갈등의 원인제공자를 살펴보면, 상호적인 갈등제공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가해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37.1%, 피해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18.3% 등으로 나

타났다. 가해유형별 갈등 원인제공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갈등이 존재했을 경우 지속적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갈등이 44.4%, 일회성의 갈등이 36.7%, 가끔씩 드러났던 갈등이 1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일방적인 폭력이 행사한 경우(순수 가해자)는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48.4%), 상호적인 폭력이 행사된 경우(가해자이자 피해자)는 일회성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35.9%).

표 3-22 갈등의 원인 제공자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갈등의 원인 제공자	가해자	72 (35.8)	31 (40.3)	103 (37.1)	$\chi^2=3.991$ $p=0.262$
	피해자	42 (20.9)	9 (11.7)	51 (18.3)	
	상호적	85 (42.3)	35 (45.5)	120 (43.2)	
	기타	2 (1.0)	2 (2.6)	4 (1.4)	
계		201 (100.0)	77 (100.0)	278 (100.0)	
갈등의 지속여부	지속적	89 (48.4)	21 (32.8)	110 (44.4)	$\chi^2=9.489$ $p=0.009$
	가끔씩	27 (14.7)	20 (31.3)	47 (19.0)	
	일회성	68 (37.0)	23 (35.9)	91 (36.7)	
계		184 (100.0)	64 (100.0)	248 (100.0)	

## 5. 동기

기록조사에 나타난 폭력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사소한 말다툼하다가 발생한 사건이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분노나 질투로 인

해 발생한 사건이 17.2%, 술에 취해서 11.1%, 싸움을 말리다가 10.1%, 업무상 문제 6.3%, 자신을 방어하기위해 6.3%, 모욕/학대 5.4% 등의 순이었다. 이때 순수가해자의 경우 업무상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11.6%), 분노나 질투로 인해 발생한 사건(19.1%), 술에 취해서 발생한 사건(13.8%)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소한 말다툼하다가 발생한 사건(42.3%)과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사건(12.3%)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3 가해자 범행동기

(단위: 건(%))

	가해유형		계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범 행 동 기	모욕/학대	25 (5.1)	25 (5.8)	50 (5.4)
	업무상문제	57 (11.6)	1 (0.2)	58 (6.3)
	보복	7 (1.4)	6 (1.4)	13 (1.4)
	스트레스	6 (1.2)	2 (0.5)	8 (0.9)
	분노/질투	94 (19.1)	65 (15.1)	159 (17.2)
	술에 취해서	68 (13.8)	34 (7.9)	102 (11.1)
	사소한 말다툼하다가	134 (27.2)	182 (42.3)	316 (34.3)
	금전문제	23 (4.7)	16 (3.7)	39 (4.2)
	자신을 방어하기위해	19 (3.9)	39 (9.1)	58 (6.3)
	싸움을 말리다가	40 (8.1)	53 (12.3)	93 (10.1)
	다른 사람이 시켜서	4 (0.8)	1 (0.2)	5 (0.5)
	기타	15 (3.0)	6 (1.4)	21 (2.3)
	계	492 (100.0)	430 (100.0)	922 (100.0)
통계값	$\chi^2 = 91.933$ $df = 11$ $p = 0.000$			

## 6. 가해자 행위 및 피해상황

범행 당시 가해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경우가 59.2%,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가 33.1%, 피해자의 목살을 잡은 경우가 29.1%, 피해자를 발로 찬 경우가 23.5%,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든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났으며, 말로 피해자를 헐박한 경우는 9.4%,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우는 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17.4%, 3자에게 도움을 요청는 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거의 대다수의 행위는 순수가해자인 경우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와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한 경우는 순수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피해자의 목살을 잡은 행위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4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단위: 건(%))

범행 시 가해자 행동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욕설	195 (36.2)	121 (29.1)	316 (33.1)	$\chi^2= 5.427$ $p = 0.020$
말로 피해자를 헐박	64 (12.0)	24 (5.9)	88 (9.4)	$\chi^2= 10.012$ $p = 0.002$
피해자를 할킴	21 (3.8)	18 (4.4)	39 (4.1)	$\chi^2= .210$ $p = 0.647$
피해자를 물음	8 (1.5)	8 (2.0)	16 (1.7)	$\chi^2= .376$ $p = 0.539$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61 (11.1)	47 (11.4)	108 (11.3)	$\chi^2= .025$ $p = 0.875$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	131 (23.9)	150 (36.1)	281 (29.1)	$\chi^2= 17.266$ $p = 0.000$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323 (57.7)	263 (61.2)	586 (59.2)	$\chi^2= 1.222$ $p = 0.269$
피해자를 발로 찬	124 (22.3)	103 (24.9)	227 (23.5)	$\chi^2= .890$ $p = 0.346$
도구로 피해자 위협	34 (6.2)	16 (4.0)	50 (5.2)	$\chi^2= 2.380$ $p = 0.123$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범행 시 가해자 행동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59 (10.7)	28 (6.8)	87 (9.1)	$\chi^2= 4.367$ $p = 0.037$
상황을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41 (7.5)	41 (10.0)	82 (8.6)	$\chi^2= 1.853$ $p = 0.173$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14 (2.6)	20 (4.9)	34 (3.6)	$\chi^2= 3.663$ $p = 0.056$
3자에게 도움을 요청	0 (0.0)	5 (5.7)	5 (5.6)	$\chi^2= .122$ $p = 0.727$
경찰에 신고	1 (50.0)	15 (16.7)	16 (17.4)	$\chi^2= 1.513$ $p = 0.219$

범행 당시 가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당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경우가 53.9%, 가벼운 상해 27.9%, 2-3주상해 12.5%, 4-8주상해 3.5%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순수 가해자인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은 비율이 73.7%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 39.8%, 2-3주상해를 입은 경우 20.9% 등으로 나타났다.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재산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98.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가해자 유형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25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단위: 건(%))

		가해유형		계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정도	피해 없음	412 (73.7)	129 (29.0)	541 (53.9)
	가벼운 상해	103 (18.4)	177 (39.8)	280 (27.9)
	2-3주 상해	32 (5.7)	93 (20.9)	125 (12.5)
	4-8주 상해	10 (1.8)	25 (5.6)	35 (3.5)
	기타	2 (0.4)	21 (4.7)	23 (2.3)
계		559 (100.0)	445 (100.0)	1004 (100.0)
통계값		$\chi^2= 209.242$ $p = 0.000$		

## 7. 범행 후 태도 및 검거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한 경우가 58.2%,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한 경우가 21.4% 등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6.2%)와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14.2%)도 약 20%가량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범행 후 범행 시인 양상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시인한 경우가 50.5%, 일부만을 시인한 경우가 38.2%, 전적으로 부인한 경우가 11.3%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때 순수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한 비율(52.1%)과 부인한 비율(13.7%)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의 일부만을 시인하는 경우(43.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6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268 (61.3)	210 (54.5)	478 (58.2)	$\chi^2=6.115$ $p=0.106$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82 (18.8)	94 (24.4)	176 (21.4)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23 (5.3)	28 (7.3)	51 (6.2)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64 (14.6)	53 (13.8)	117 (14.2)	
계		437 (100.0)	385 (100.0)	822 (100.0)	
가해자의 범행시인	전적으로 시인	285 (52.1)	212 (48.5)	497 (50.5)	$\chi^2=12.293$ $p=0.002$
	일부시인	187 (34.2)	189 (43.2)	376 (38.2)	
	부인	75 (13.7)	36 (8.2)	111 (11.3)	
계		547 (100.0)	437 (100.0)	984 (100.0)	

폭력 범죄자의 검거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신고로 인해 체포된 경우 (39.0%)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38.8%)가 가장 많았고,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된 경우도 17.1%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중 일방적인 폭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된 경우가 48.8%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상호적인 폭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52.2%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때 범죄자들을 구속 수사 한 경우는 1.4%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표 3-27 검거경위

(단위: 건(%))

		가해유형		계	통계값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검거 경위	현행범	158 (28.7)	218 (52.2)	376 (38.8)	$\chi^2=70.494$ $p=0.000$
	자수	11 (2.0)	4 (1.0)	15 (1.5)	
	피해자신고	269 (48.8)	109 (26.1)	378 (39.0)	
	제3자 신고	95 (17.2)	71 (17.0)	166 (17.1)	
	경찰 등의 인지탐문	16 (2.9)	10 (2.4)	26 (2.7)	
	기타	2 (0.4)	6 (1.4)	8 (0.8)	
계		551 (100.0)	418 (100.0)	969 (100.0)	
구속 여부	구속	14 (2.5)	0 (0.0)	14 (1.4)	$\chi^2=11.270$ $p=0.004$
	불구속	542 (97.0)	438 (99.3)	980 (98.0)	
	보석	3 (0.5)	3 (0.7)	6 (0.6)	
계		559 (100.0)	441 (100.0)	1000 (100.0)	

### 제3절 피해자 특성

조사된 사례 중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정보가 나타나있는 사례는 총 274명으로, 서울 77건(28.1%), 수도권 74건(27.0%), 비수도권 123건(44.9%) 등의 분포였다. 전체 폭력 사건이 405건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도 상당하다고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수사기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많은 변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다수의 결측값이 존재하여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표 3-28 피해자 사례 수집 장소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서울	77	28.1	28.1
수도권	74	27.0	27.0
비수도권	123	44.9	44.9
계	274	100.0	100.0

####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된 사례 중 남성이 175명(65.1%), 여성이 94명(34.9%)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52명(20.1%), 20대 53명(20.5%), 30대 45명(17.4%), 40대 60명(23.2%), 50대 32명(12.4%), 60대 14명(5.4%), 71세이상 3명(1.2%)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49명(17.9%), 무직 42명(15.3%), 서비스업 33명(12.0%), 회사원 28명(10.2%), 유통업 또는 서비스업종업원 21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이 드러난 피해자 중 학생의 비율과 무직자의 비율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표 3-29 피해자 사회경제적 특성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성별	남자	175	63.9	65.1
	여자	94	34.3	34.9
	계	269	98.2	100.0
	결측값	5	1.8	
	계	274	100.0	
연령	20세이하	52	19.0	20.1
	20대	53	19.3	20.5
	30대	45	16.4	17.4
	40대	60	21.9	23.2
	50대	32	11.7	12.4
	60대	14	5.1	5.4
	71세이상	3	1.1	1.2
	계	259	94.5	100.0
	결측값	15	5.5	
계	274	100.0		
직업	무직	42	15.3	15.3
	제조업, 건설업운영	1	.4	.4
	제조업, 건설업피고용인	8	2.9	2.9
	단순노무, 노점	5	1.8	1.8
	유통업, 서비스업	33	12.0	12.0
	서비스업종업원	21	7.7	7.7
	회사원	28	10.2	10.2
	운수업	14	5.1	5.1
	주부	10	3.6	3.6
	학생	49	17.9	17.9
	전문직	6	2.2	2.2
	기타, 미상	57	20.8	20.8
	계	274	100.0	100.0

## 2. 범행당시 피해자 상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살펴보면 전혀마시지 않았던 경우가 185명 (75.2%), 약간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은 경우가 41명(16.7%), 취했으나 의식은 있었던 경우가 17명(6.9%),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던 경우가 3명(1.2%) 등으로 나

타났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감정상태는 분노 104명(50.5%), 두려움 71명(34.5%), 흥분 15명(7.3%)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0 범행 시 음주 상태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범행 시 음주 상태	전혀마시지않았다	185	67.5	75.2
	약간마셨다(취하지않음)	41	15.0	16.7
	취했으나의식은있었다	17	6.2	6.9
	만취하여의식이없었다	3	1.1	1.2
	계	246	89.8	100.0
	결측값	28	10.2	
	계	274	100.0	
범행 시 감정상태	좌절	3	1.1	1.5
	분노	104	38.0	50.5
	두려움	71	25.9	34.5
	흥분	15	5.5	7.3
	당황	9	3.3	4.4
	기타	4	1.5	1.9
	계	206	75.2	100.0
	결측값	68	24.8	
	계	274	100.0	

### 3.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보가 드러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것이 해당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단지 사건 당시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 드러난 경우가 35명(14.4%) 있었으며, 그 밖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경우 57명(22.9%),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경우 43명(17.2%),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18명(7.3%), 경찰에 신고한 경우 89명(36.2%) 등이 드러났다.

#### 4. 피해상황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경우는 61명(23.3%)이었으며,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 111명(42.4%), 2-3주 상해를 입은 경우 70명(26.7%), 4-8주 상해를 입은 경우 9명(3.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도 있었던 피해자는 221명(87.4%)이었다.

표 3-31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신체 피해	피해 없음	61	22.3	23.3
	가벼운 상해	111	40.5	42.4
	2-3주 상해	70	25.5	26.7
	4-8주 상해	9	3.3	3.4
	9주 이상 상해	1	.4	.4
	기타	10	3.6	3.8
	계	262	95.6	100.0
	결측값	12	4.4	
계		274	100.0	
재산 피해	없음	221	80.7	87.4
	있음	32	11.7	12.6
	계	253	92.3	100.0
	결측값	21	7.7	
	계	274	100.0	

#### 5.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

사건 이후 피해자들 중 처벌을 원했던 경우가 171명(62.9%),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경우가 92명(33.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100명(37.3%), 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68명(62.7%)이었다. 반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80명(29.6%),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90명(70.4%)였다.

표 3-32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빈도(건)	비율(%)	유효비율(%)
감정상태	처벌을 원함	171	62.4	62.9
	처벌을 원하지 않음	92	33.6	33.8
	미상	9	3.3	3.3
	계	272	99.3	100.0
	결측값	2	.7	
	계	274	100.0	
진단서 제출여부	진단서제출	100	36.5	37.3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168	61.3	62.7
	계	268	97.8	100.0
	결측값	6	2.2	
	계	274	100.0	
합의서 제출여부	합의서제출	80	29.2	29.6
	합의서 제출하지 않음	190	69.3	70.4
	계	270	98.5	100.0
	결측값	4	1.5	
	계	274	100.0	

## 제4절 소결

수사 및 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입건하여 처리한 사건들로서 주로 봄이나 여름에 발생하며, 심야나 새벽시간(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범이 있는 범죄이며, 또 이들 중 1/3가량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은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순수 가해자는 회사원과 학생이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무직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순수 가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과횟수

가 많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순수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화가난 상태(분노)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 행위로 발전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나 행위들은 순수 가해자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정보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에도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형사사법기관의 공식기록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숨은 범죄들 때문이다.

## 제4장

# 폭력 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 폭력 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전체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과 상해, 폭행,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명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통해 위의 세가지 죄명이 규제하는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제2장, 제3장 제1절 참조).

본 장에서는 폭력 범죄의 유형구분을 위한 검찰처리유형, 등으로 세부 변수를 추가하여 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증적인 폭력 범죄의 유형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 제1절 검찰처리유형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검찰 처리 유형이라 함은 검찰이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즉 검찰이 폭력 사건을 기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른 유형구분이다.

먼저 검찰처리유형에 따른 범죄자 성별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처리유형에 따라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의 경우 30대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20세 이하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건 중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범죄자와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을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중학교 학력을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검찰 처리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성별	남자	183 (83.2)	581 (77.6)	764 (78.8)	$\chi^2 = 3.211$ $p = 0.073$
	여자	37 (16.8)	168 (22.4)	205 (21.2)	
계		220 (100.0)	749 (100.0)	969 (100.0)	
연령	20세이하	5 (2.3)	99 (13.3)	104 (10.8)	$\chi^2 = 28.444$ $p = 0.000$
	20대	58 (26.4)	192 (25.8)	250 (25.9)	
	30대	64 (29.1)	149 (20.0)	213 (22.1)	
	40대	58 (26.4)	186 (25.0)	244 (25.3)	
	50대	26 (11.8)	82 (11.0)	108 (11.2)	
	60대	9 (4.1)	28 (3.8)	37 (3.8)	
	71세이상	0 (0.0)	9 (1.2)	9 (.9)	
계		220 (100.0)	745 (100.0)	965 (100.0)	
교육 수준	무학	2 (1.2)	6 (1.2)	8 (1.2)	$\chi^2 = 15.009$ $p = 0.020$
	초등학교	16 (9.3)	27 (5.3)	43 (6.3)	
	중학교	11 (6.4)	71 (13.9)	82 (12.0)	
	고등학교	71 (41.3)	172 (33.6)	243 (35.5)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대학교	42 (24.4)	110 (21.5)	152 (22.2)	
	대학원이상	2 (1.2)	6 (1.2)	8 (1.2)	
	미상	28 (16.3)	120 (23.4)	148 (21.6)	
계		172 (100.0)	512 (100.0)	684 (100.0)	

## 2. 전과

기소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의 경우 2회 14.0%, 3회 11.8%, 4회 7.9%, 5회 이상 31.5% 등 전과 2범이상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없음 28.0%, 1회 25.4% 등 전과가 없거나 1회에 불과한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실전과횟수(실전과횟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2장 참조) 역시 기소된 사건의 경우 2회 16.4%, 3회 8.8%, 4회 6.4%, 5회 이상 24.6% 등으로 전과 2범 이상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 없음 40.8%, 1회 25.7% 등 실전과가 없거나 1회에 불과한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동종전과횟수(동종전과횟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2장 참조) 역시 총전과 및 실전과 횟수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기소된 사건의 경우 2회 13.5%, 3회 7.6%, 4회 5.3%, 5회 이상 11.7%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없음 59.2%, 1회 19.2% 등으로 나타났다.

표 4-2 검찰 처리유형별 전과횟수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전과횟수	전과없음	32 (18.0)	142 (28.0)	174 (25.4)	$\chi^2 = 18.732$ $p = 0.002$
	1회	30 (16.9)	129 (25.4)	159 (23.2)	
	2회	25 (14.0)	57 (11.2)	82 (12.0)	
	3회	21 (11.8)	46 (9.1)	67 (9.8)	
	4회	14 (7.9)	29 (5.7)	43 (6.3)	
	5회 이상	56 (31.5)	105 (20.7)	161 (23.5)	
계		178 (100.0)	508 (100.0)	686 (100.0)	
실전과 횟수 (항균법, 도로교통법 제외)	전과없음	46 (26.9)	206 (40.8)	252 (37.3)	$\chi^2 = 30.355$ $p = 0.000$
	1회	29 (17.0)	130 (25.7)	159 (23.5)	
	2회	28 (16.4)	46 (9.1)	74 (10.9)	
	3회	15 (8.8)	39 (7.7)	54 (8.0)	
	4회	11 (6.4)	20 (4.0)	31 (4.6)	
	5회이상	42 (24.6)	64 (12.7)	106 (15.7)	
계		171 (100.0)	505 (100.0)	676 (100.0)	
동종 전과 횟수 (폭행, 상해, 폭처법, 살인)	전과없음	76 (44.4)	299 (59.2)	375 (55.5)	$\chi^2 = 21.908$ $p = 0.001$
	1회	30 (17.5)	97 (19.2)	127 (18.8)	
	2회	23 (13.5)	38 (7.5)	61 (9.0)	
	3회	13 (7.6)	33 (6.5)	46 (6.8)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4회	9 (5.3)	11 (2.2)	20 (3.0)	
	5회이상	20 (11.7)	27 (5.3)	47 (7.0)	
계		171 (100.0)	505 (100.0)	676 (100.0)	

### 3. 상호작용

기소여부에 따른 범죄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이 발생하기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사건이 발생하기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존재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4-3 검찰 처리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 및 갈등 존재 여부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	원만하였다	21 (11.2)	65 (10.7)	86 (10.8)	$x^2 = .513$ $p = 0.774$
	원만하지 못했다	37 (19.8)	135 (22.2)	172 (21.7)	
	사건이전 상호작용 無	129 (69.0)	407 (67.1)	536 (67.5)	
계		187 (100.0)	607 (100.0)	794 (100.0)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감정	좋은편	6 (3.2)	18 (3.0)	24 (3.0)	$x^2 = 1.615$ $p = 0.656$
	보통	21 (11.2)	53 (8.8)	74 (9.4)	
	나쁜편	33 (17.6)	125 (20.8)	158 (20.0)	
	사건이전 상호작용 無	127 (67.9)	406 (67.4)	533 (67.6)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계		187 (100.0)	602 (100.0)	789 (100.0)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가해자간의 갈등존재 여부	갈등이 있었음	50 (27.2)	188 (30.7)	238 (29.9)	$x^2 = 1.761$ $p = 0.415$
	갈등이 없었음	15 (8.2)	36 (5.9)	51 (6.4)	
	사건이전 상호작용 無	119 (64.7)	389 (63.5)	508 (63.7)	
계		184 (100.0)	613 (100.0)	797 (100.0)	

검찰처리유형에 따라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 중 많은 부분이 가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였고(59.7%),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상호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51.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이 있었을 경우)갈등의 주된내용 및 갈등의 지속여부의 변수에서는 검찰처리유형에 따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4 검찰 처리유형별 내용 및 갈등의 원인 제공자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내용	애정문제	4 (8.3)	17 (9.2)	21 (9.0)	$x^2 = 5.294$ $p = 0.624$
	가정불화	7 (14.6)	20 (10.8)	27 (11.6)	
	모욕, 비하	4 (8.3)	21 (11.4)	25 (10.7)	
	학대	2 (4.2)	3 (1.6)	5 (2.1)	
	채권채무관계	5 (10.4)	14 (7.6)	19 (8.2)	
	일, 업무상문제	14 (29.2)	63 (34.1)	77 (33.0)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금전문제	11 (22.9)	32 (17.3)	43 (18.5)	
	기타	1 (2.1)	15 (8.1)	16 (6.9)	
계		48 (100.0)	185 (100.0)	233 (100.0)	
갈등의 원인 제공자	가해자	37 (59.7)	62 (30.8)	99 (37.6)	$\chi^2 = 19.222$ $p = 0.000$
	피해자	10 (16.1)	33 (16.4)	43 (16.3)	
	상호적	14 (22.6)	103 (51.2)	117 (44.5)	
	기타	1 (1.6)	3 (1.5)	4 (1.5)	
계		62 (100.0)	201 (100.0)	263 (100.0)	
갈등의 지속여부	지속적	22 (38.6)	86 (48.3)	108 (46.0)	$\chi^2 = 1.882$ $p = 0.390$
	가끔씩	11 (19.3)	33 (18.5)	44 (18.7)	
	일회성	24 (42.1)	59 (33.1)	83 (35.3)	
계		57 (100.0)	178 (100.0)	235 (100.0)	

####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욕설, 말로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를 할퀴,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피해자를 발로 참, 도구로 피해자 위협,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등의 행위는 기소된 사건의 가해자가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불기소된 사건의 가해자가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 경찰에 신

고, 피해자를 물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 등의 행위는 기소된 사건과 불기소된 사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4-5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단위: 건(%))

범행 시 가해자 행동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피해자에 대한 욕설	108 (52.2)	193 (27.5)	301 (33.1)	$\chi^2= 43.789$ $p = 0.000$
말로 피해자를 헐박	27 (13.4)	59 (8.5)	86 (9.6)	$\chi^2= 4.364$ $p = 0.037$
피해자를 할کم	17 (8.5)	17 (2.4)	34 (3.7)	$\chi^2= 16.134$ $p = 0.000$
피해자를 물음	4 (2.0)	10 (1.4)	14 (1.5)	$\chi^2= .368$ $p = 0.544$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36 (17.7)	64 (9.0)	100 (10.9)	$\chi^2= 12.514$ $p = 0.000$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	69 (33.7)	199 (27.8)	268 (29.1)	$\chi^2= 2.657$ $p = 0.103$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161 (74.9)	401 (55.0)	562 (59.5)	$\chi^2= 27.229$ $p = 0.000$
피해자를 발로 참	70 (34.0)	149 (20.7)	219 (23.7)	$\chi^2= 15.574$ $p = 0.000$
도구로 피해자 위협	17 (8.5)	29 (4.1)	46 (5.1)	$\chi^2= 6.339$ $p = 0.012$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37 (18.0)	44 (6.2)	81 (8.8)	$\chi^2= 27.768$ $p = 0.000$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4 (2.0)	76 (10.7)	80 (8.8)	$\chi^2= 14.649$ $p = 0.000$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6 (3.0)	25 (3.5)	31 (3.4)	$\chi^2= .135$ $p = 0.714$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	0 (.0)	2 (3.2)	2 (2.5)	$\chi^2= .554$ $p = 0.457$
경찰에 신고	5 (27.8)	7 (10.9)	12 (14.6)	$\chi^2= 3.189$ $p = 0.074$

검찰 처리유형별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에서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사전에 준비 2.9%로 다소 많았고,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3.6%로 다소 많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범주가 대부분이었다.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시 사용한 도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도구에 대해서 사용한 범죄자가 기소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6 검찰 처리유형별 도구사용여부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없음	193 (93.2)	662 (95.4)	855 (94.9)	$\chi^2 = 10.960$ $p = 0.012$
	사전에 준비	6 (2.9)	7 (1.0)	13 (1.4)	
	사전에 준비 하지 않음	6 (2.9)	25 (3.6)	31 (3.4)	
	미상	2 (1.0)	0 (.0)	2 (.2)	
계		207 (100.0)	694 (100.0)	901 (100.0)	
범행 시 사용한 도구	없음	165 (79.3)	643 (92.5)	808 (89.5)	$\chi^2 = 45.678$ $p = 0.000$
	막대기, 몽둥이 등	8 (3.8)	15 (2.2)	23 (2.5)	
	칼, 도끼 등 흉기	8 (3.8)	6 (.9)	14 (1.6)	
	돌, 벽돌 등	8 (3.8)	3 (.4)	11 (1.2)	
	유리병 등	12 5.8%	8 1.2%	20 2.2%	
	의자 등 가구	1 (.5)	6 (.9)	7 (.8)	
	기타	6 (2.9)	14 (2.0)	20 (2.2)	
계		208 (100.0)	695 (100.0)	903 (100.0)	

검찰 처리유형별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2-3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14.7%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기소된 사건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가 없거나(54.7%)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29.5%)가 더 많았다. 가해자의 재산 피해 정도는 검찰 처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7 검찰 처리유형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피해 없음	113 (52.1)	405 (54.7)	518 (54.1)	$\chi^2 = 15.682$ $p = 0.003$
	가벼운 상해	54 (24.9)	218 (29.5)	272 (28.4)	
	2-3주 상해	32 (14.7)	85 (11.5)	117 (12.2)	
	4-8주 상해	6 (2.8)	22 (3.0)	28 (2.9)	
	기타	12 (5.5)	10 (1.4)	22 (2.3)	
계		217 (100.0)	740 (100.0)	957 (100.0)	
가해자의 재산 피해 정도	없음	196 (99.5)	663 (97.6)	859 (98.1)	$\chi^2 = 2.743$ $p = 0.098$
	있음	1 (0.5)	16 (2.4)	17 (1.9)	
계		197 (100.0)	679 (100.0)	876 (100.0)	

## 5. 가해자 태도

검찰 처리유형별 가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했을 경우 불기소처리되는 비율이 높았으며(62.6%),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하거나(27.5%), 기소를 원할 경우(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12.2%,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15.9%) 기소처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 시인 정도를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시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47.9%),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전적으로 시인하거나(52.5%)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12.3%)가 많았다.

표 4-8 검찰 처리유형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단위: 건(%))

		기소여부		계	통계값
		기소	불기소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84 (44.4)	379 (62.6)	463 (58.3)	$\chi^2 = 26.713$ $p = 0.000$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52 (27.5)	118 (19.5)	170 (21.4)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23 (12.2)	27 (4.5)	50 (6.3)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30 (15.9)	81 (13.4)	111 (14.0)	
계		189 (100.0)	605 (100.0)	794 (100.0)	
가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전적으로 시인	92 (42.4)	383 (52.5)	475 (50.2)	$\chi^2 = 11.650$ $p = 0.003$
	일부시인	104 (47.9)	256 (35.1)	360 (38.1)	
	부인	21 (9.7)	90 (12.3)	111 (11.7)	
계		217 (100.0)	729 (100.0)	946 (100.0)	

## 제2절 성별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 1. 사회 경제적 특성

다음으로 성별 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대(27.8%)와 30대(24.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세 이하(18.0%)와

50대(14.7%), 60대(5.1%)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36.0%)와 대학교(25.6%) 학력의 범죄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무학(2.6%), 초등학교(8.6%), 중학교(20.4%) 등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9 성별 사회 경제적 특성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연령	20세이하	66 (8.3)	39 (18.0)	105 (10.4)	$\chi^2 = 32.147$ $p = 0.000$
	20대	221 (27.8)	43 (19.8)	264 (26.1)	
	30대	194 (24.4)	32 (14.7)	226 (22.3)	
	40대	201 (25.3)	57 (26.3)	258 (25.5)	
	50대	81 (10.2)	32 (14.7)	113 (11.2)	
	60대	26 (3.3)	11 (5.1)	37 (3.7)	
	71세이상	6 (.8)	3 (1.4)	9 (.9)	
계		795 (100.0)	217 (100.0)	1012 (100.0)	
교육 수준	무학	4 (.7)	4 (2.6)	8 (1.1)	$\chi^2 = 27.271$ $p = 0.000$
	초등학교	31 (5.5)	13 (8.6)	44 (6.2)	
	중학교	56 (10.0)	31 (20.4)	87 (12.2)	
	고등학교	201 (36.0)	53 (34.9)	254 (35.7)	
	대학교	143 (25.6)	17 (11.2)	160 (22.5)	
	대학원이상	6 (1.1)	2 (1.3)	8 (1.1)	
	미상	118 (21.1)	32 (21.1)	150 (21.1)	
계		559 (100.0)	152 (100.0)	711 (100.0)	

## 2. 전과

성별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2회 12.8%, 3회 11.1%, 4회 7.3%, 5회 이상 26.4% 등), 여성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거나(46.4%) 전과가 있더라도 1회(33.6%)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전과 횟수역시 남성이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2회 11.5%, 3회 8.8%, 4회 5.7%, 5회 이상 17.4%), 여성이 1회 이하의 전과(전과 없음 54.5%, 1회 27.3%)를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동종전과의 분포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표 4-10 성별 전과횟수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전과횟수	전과없음	127 (21.1)	51 (46.4)	178 (25.0)	$x^2 = 57.936$ $p = 0.000$
	1회	128 (21.3)	37 (33.6)	165 (23.2)	
	2회	77 (12.8)	8 (7.3)	85 (11.9)	
	3회	67 (11.1)	2 (1.8)	69 (9.7)	
	4회	44 (7.3)	0 (0.0)	44 (6.2)	
	5회이상	159 (26.4)	12 (10.9)	171 (24.0)	
계		602 (100.0)	110 (100.0)	712 (100.0)	
실전과 횟수 (향균법, 도로교통법 제외)	전과없음	198 (33.4)	60 (54.5)	258 (36.8)	$x^2 = 28.562$ $p = 0.000$
	1회	137 (23.1)	30 (27.3)	167 (23.8)	
	2회	68 (11.5)	8 (7.3)	76 (10.8)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3회	52 (8.8)	2 (1.8)	54 (7.7)	$\chi^2 = 29.142$ $p = 0.000$
	4회	34 (5.7)	1 (0.9)	35 (5.0)	
	5회이상	103 (17.4)	9 (8.2)	112 (16.0)	
계		592 (100.0)	110 (100.0)	702 (100.0)	
등증 전과 횟수 (폭행, 상해, 폭처법, 살인)	전과없음	304 (51.4)	82 (74.5)	386 (55.0)	
	1회	112 (18.9)	20 (18.2)	132 (18.8)	
	2회	57 (9.6)	6 (5.5)	63 (9.0)	
	3회	48 (8.1)	1 (0.9)	49 (7.0)	
	4회	21 (3.5)	1 (0.9)	22 (3.1)	
	5회이상	50 (8.4)	0 (0.0)	50 (7.1)	
계		592 (100.0)	110 (100.0)	702 (100.0)	

### 3. 상호작용

성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은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65.5%), 여성의 경우에는 갈등이 있었던 경우가 42.3%, 갈등이 없었음 7.4% 등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이전에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 존재 여부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존재 여부	갈등이 있었음	186 (28.4)	74 (42.3)	260 (31.3)	$\chi^2 = 14.117$ $p = 0.001$
	갈등이 없었음	40 (6.1)	13 (7.4)	53 (6.4)	
	상호작용 無	430 (65.5)	88 (50.3)	518 (62.3)	
계		656 (100.0)	175 (100.0)	831 (100.0)	

성별 갈등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모욕이나 비하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14.3%)와 일이나 업무상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36.8%)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불화(21.9%), 채권채무관계(11.0%)가 원인이었던 갈등이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을 가해자가 제공했는지의 여부 및 갈등의 지속여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표 4-12 성별 갈등의 주된 내용 및 원인 제공자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	애정문제	18 (9.9)	6 (8.2)	24 (9.4)	$\chi^2 = 20.571$ $p = 0.004$
	가정불화	15 (8.2)	16 (21.9)	31 (12.2)	
	모욕, 비하	26 (14.3)	8 (11.0)	34 (13.3)	
	학대	5 (2.7)	0 (0.0)	5 (2.0)	
	채권채무관계	12 (6.6)	8 (11.0)	20 (7.8)	
	일, 업무상문제	67 (36.8)	14 (19.2)	81 (31.8)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금전문제	31 (17.0)	13 (17.8)	44 (17.3)	
	기타	8 (4.4)	8 (11.0)	16 (6.3)	
계		182 (100.0)	73 (100.0)	255 (100.0)	
갈등의 원인 제공자	가해자	78 (39.2)	25 (31.6)	103 (37.1)	$\chi^2 = 3.442$ $p = 0.328$
	피해자	39 (19.6)	12 (15.2)	51 (18.3)	
	상호적	79 (39.7)	41 (51.9)	120 (43.2)	
	기타	3 (1.5)	1 (1.3)	4 (1.4)	
계		199 (100.0)	79 (100.0)	278 (100.0)	
갈등의 지속여부	지속적	77 (43.8)	33 (45.8)	110 (44.4)	$\chi^2 = 1.246$ $p = 0.536$
	가끔씩	31 (17.6)	16 (22.2)	47 (19.0)	
	일회성	68 (38.6)	23 (31.9)	91 (36.7)	
계		176 (100.0)	72 (100.0)	248 (100.0)	

####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성별로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피해자의 목살을 잡거나(34.5%)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62.3%)를 여성에 비해 많이 한 반면, 여성들은 피해자를 할퀴고(11.8%), 피해자를 물고(3.8%),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드는 행위(24.5%)를 남성에 비해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성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단위: 건(%))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피해자에 대한 욕설	246 (33.2)	70 (32.9)	316 (33.2)	$\chi^2 = .011$ $p = 0.917$
피해자에 대한 협박	61 (8.4)	14 (6.7)	75 (8.0)	$\chi^2 = .623$ $p = 0.430$
말로 피해자를 협박	67 (9.2)	21 (10.0)	88 (9.4)	$\chi^2 = .136$ $p = 0.712$
피해자를 할킴	14 (1.9)	25 (11.8)	39 (4.1)	$\chi^2 = 41.460$ $p = 0.000$
피해자를 물음	8 (1.1)	8 (3.8)	16 (1.7)	$\chi^2 = 7.517$ $p = 0.006$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56 (7.5)	52 (24.5)	108 (11.3)	$\chi^2 = 47.933$ $p = 0.000$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	260 (34.5)	20 (9.6)	280 (29.1)	$\chi^2 = 49.253$ $p = 0.000$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483 (62.3)	102 (47.7)	585 (59.2)	$\chi^2 = 14.914$ $p = 0.000$
피해자를 발로 참	179 (23.7)	47 (22.2)	226 (23.4)	$\chi^2 = .219$ $p = 0.640$
도구로 피해자 위협	44 (5.9)	6 (2.9)	50 (5.3)	$\chi^2 = 2.998$ $p = 0.083$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68 (9.1)	19 (9.1)	87 (9.1)	$\chi^2 = .000$ $p = 0.996$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68 (9.1)	14 (6.8)	82 (8.6)	$\chi^2 = 1.119$ $p = 0.290$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29 (3.9)	5 (2.4)	34 (3.6)	$\chi^2 = 1.020$ $p = 0.312$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	2 (3.4)	3 (10.0)	5 (5.6)	$\chi^2 = 1.639$ $p = 0.200$
경찰에 신고	9 (15.0)	7 (21.9)	16 (17.4)	$\chi^2 = .687$ $p = 0.407$

성별 도구의 준비 및 사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4-14 성별 범행 시 사용한 도구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없음	703 (94.6)	188 (95.9)	891 (94.9)	$\chi^2 = 1.010$ $p = 0.799$
	사전에 준비	12 (1.6)	2 (1.0)	14 (1.5)	
	사전에 준비 하지 않음	26 (3.5)	6 (3.1)	32 (3.4)	
	미상	2 (0.3)	0 (0.0)	2 (0.2)	
계		743 (100.0)	196 (100.0)	939 (100.0)	
범행 시 사용한 도구	없음	665 (89.4)	176 (89.3)	841 (89.4)	$\chi^2 = 7.262$ $p = 0.297$
	막대기, 몽둥이 등	18 (2.4)	5 (2.5)	23 (2.4)	
	칼, 도끼 등 흉기	14 (1.9)	1 (0.5)	15 (1.6)	
	돌, 벽돌 등	8 (1.1)	3 (1.5)	11 (1.2)	
	유리병 등	20 (2.7)	2 (1.0)	22 (2.3)	
	의자등기구	5 (0.7)	3 (1.5)	8 (0.9)	
	기타	14 (1.9)	7 (3.6)	21 (2.2)	
계		744 (100.0)	197 (100.0)	941 (100.0)	

성별로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벼운 상해(29.6%)를 입거나 4-8주 상해(4.1%)를 입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3주 정도의 상해(20.5%)를 입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재산상의 피해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표 4-15 성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피해 없음	422 (53.6)	119 (55.3)	541 (53.9)	$\chi^2 = 22.621$ $p = 0.000$
	가벼운 상해	233 (29.6)	46 (21.4)	279 (27.8)	
	2-3주 상해	81 (10.3)	44 (20.5)	125 (12.5)	
	4-8주 상해	32 (4.1)	3 (1.4)	35 (3.5)	
	기타	20 (2.5)	3 (1.4)	23 (2.3)	
계		788 (100.0)	215 (100.0)	1003 (100.0)	
가해자의 재산 피해정도	없음	713 (98.2)	189 (97.4)	902 (98.0)	$\chi^2 = .494$ $p = 0.482$
	있음	13 (1.8)	5 (2.6)	18 (2.0)	
계		726 (100.0)	194 (100.0)	920 (100.0)	

##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성별로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62.2%)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여성들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28.8%)가 많았으며, 합의를 원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25.6%)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52.1%), 여성들은 일부만을 시인하거나(39.4%), 부인하는 경우(15.9%)가 많았다.

표 4-16 성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411 (62.2)	67 (41.9)	478 (58.2)	$\chi^2 = 42.753$ $p = 0.000$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135 (20.4)	41 (25.6)	176 (21.4)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45 (6.8)	6 (3.8)	51 (6.2)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70 (10.6)	46 (28.8)	116 (14.1)	
계		661 (100.0)	160 (100.0)	821 (100.0)	
가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전적으로 시인	404 (52.1)	93 (44.7)	497 (50.6)	$\chi^2 = 6.784$ $p = 0.034$
	일부시인	293 (37.8)	82 (39.4)	375 (38.1)	
	부인	78 (10.1)	33 (15.9)	111 (11.3)	
계		775 (100.0)	208 (100.0)	983 (100.0)	

성별로 가해자의 검거 경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41.2%)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성들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47.7%) 제3자가 신고한 경우(19.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17 성별 검거 경위

(단위: 건(%))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검거 경위	현행범	317 (41.2)	59 (29.6)	376 (38.8)	$\chi^2 = 12.474$ $p = 0.029$
	자수	12 (1.6)	3 (1.5)	15 (1.5)	
	피해자 신고	283 (36.8)	95 (47.7)	378 (39.0)	

		성 별		계	통계값
		남자	여자		
	제3자 신고	128 (16.6)	38 (19.1)	166 (17.1)	
	경찰 등의 인지탐문	23 (3.0)	3 (1.5)	26 (2.7)	
	기타	7 (0.9)	1 (0.5)	8 (0.8)	
계		770 (100.0)	199 (100.0)	969 (100.0)	

### 제3절 연령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별 폭력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범죄자의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20대 이하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고등학교 38.6%, 대학교 37.9% 등), 30대 이상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무학 1.9%, 초등학교 10.6%, 중학교 13.7%)을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18 연령별 교육수준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성별	남자	287 (77.8)	508 (79.0)	795 (78.6)	$\chi^2 = .210$ $p = 0.647$
	여자	82 (22.2)	135 (21.0)	217 (21.4)	
계		369 (100.0)	643 (100.0)	1012 (100.0)	
교육 수준	무학	0 (0.0)	8 (1.9)	8 (1.1)	$\chi^2 = 110.123$ $p = 0.000$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초등학교	0 (0.0)	44 (10.6)	44 (6.2)	
	중학교	30 (10.2)	57 (13.7)	87 (12.3)	
	고등학교	113 (38.6)	139 (33.4)	252 (35.5)	
	대학교	111 (37.9)	49 (11.8)	160 (22.6)	
	대학원이상	3 (1.0)	5 (1.2)	8 (1.1)	
	미상	36 (12.3)	114 (27.4)	150 (21.2)	
	계	293 (100.0)	416 (100.0)	709 (100.0)	

## 2. 전과

연령별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총전과 횟수의 경우 20대 이하의 범죄자들 중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49.3%),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전과가 있는 경우(1회 24.2%, 2회 11.8%, 3회 11.0%, 4회 7.9%, 5회 이상 31.5%)가 더 많았다.

실전과에 대해서도 20대 이하의 범죄자들 중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60.1%),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전과가 있었던 경우(1회 24.7%, 2회 12.0%, 3회 10.2%, 4회 5.6%, 5회 이상 21.0%)가 대체로 많았다. 동종전과 횟수 역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표 4-19 연령별 전과횟수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전과횟수	전과 없음	112 (49.3)	66 (13.7)	178 (25.1)	$\chi^2 = 124.100$ $p = 0.000$
	1회	47 (20.7)	117 (24.2)	164 (23.1)	
	2회	28 (12.3)	57 (11.8)	85 (12.0)	
	3회	16 (7.0)	53 (11.0)	69 (9.7)	
	4회	5 (2.2)	38 (7.9)	43 (6.1)	
	5회 이상	19 (8.4)	152 (31.5)	171 (24.1)	
계		227 (100.0)	483 (100.0)	710 (100.0)	
실전과 횟수 (향균법, 도로교통법 제외)	전과 없음	131 (60.1)	128 (26.6)	259 (37.0)	$\chi^2 = 87.043$ $p = 0.000$
	1회	46 (21.1)	119 (24.7)	165 (23.6)	
	2회	18 (8.3)	58 (12.0)	76 (10.9)	
	3회	4 (1.8)	49 (10.2)	53 (7.6)	
	4회	8 (3.7)	27 (5.6)	35 (5.0)	
	5회 이상	11 5.0%	101 21.0%	112 16.0%	
계		218 (100.0)	482 (100.0)	700 (100.0)	
동종 전과횟수 (폭행, 상해, 폭처법, 살인)	전과 없음	160 (73.4)	227 (47.1)	387 (55.3)	$\chi^2 = 54.576$ $p = 0.000$
	1회	33 (15.1)	96 (19.9)	129 (18.4)	
	2회	10 (4.6)	53 (11.0)	63 (9.0)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3회	4 (1.8)	45 (9.3)	49 (7.0)	
	4회	8 (3.7)	14 (2.9)	22 (3.1)	
	5회 이상	3 (1.4)	47 (9.8)	50 (7.1)	
계		218 (100.0)	482 (100.0)	700 (100.0)	

### 3. 상호작용

연령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존재여부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범죄자들은 사건이 전에 상호작용이 없었거나 당일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75.6%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갈등이 있었음 38.3%, 갈등이 없었음 7.6%).

표 4-20 연령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 존재 여부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존재 여부	갈등이 있었음	64 (20.0)	196 (38.3)	260 (31.3)	$\chi^2 = 38.934$ $p = 0.000$
	갈등이 없었음	14 (4.4)	39 (7.6)	53 (6.4)	
	상호작용 無	242 (75.6)	277 (54.1)	519 (62.4)	
계		320 (100.0)	512 (100.0)	832 (100.0)	

그러나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이나 원인 제공자, 갈등의 지속 여부 등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21 연령별 갈등의 주된 내용 및 원인 제공자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	애정문제	9 (14.3)	15 (7.8)	24 (9.4)	$x^2= 13.230$ $p = 0.067$
	가정불화	8 (12.7)	23 (12.0)	31 (12.2)	
	모욕, 비하	11 (17.5)	23 (12.0)	34 (13.3)	
	학대	2 (3.2)	3 (1.6)	5 (2.0)	
	채권채무관계	1 (1.6)	19 (9.9)	20 (7.8)	
	일, 업무상문제	13 (20.6)	68 (35.4)	81 (31.8)	
	금전문제	13 (20.6)	31 (16.1)	44 (17.3)	
	기타	6 (9.5)	10 (5.2)	16 (6.3)	
계	63 (100.0)	192 (100.0)	255 (100.0)		
갈등의 원인 제공자	가해자	24 (34.3)	79 (38.0)	103 (37.1)	$x^2= 2.756$ $p = 0.431$
	피해자	16 (22.9)	35 (16.8)	51 (18.3)	
	상호적	28 (40.0)	92 (44.2)	120 (43.2)	
	기타	2 (2.9)	2 (1.0)	4 (1.4)	
계	70 (100.0)	208 (100.0)	278 (100.0)		
갈등의 지속여부	지속적	23 (35.9)	87 (47.3)	110 (44.4)	$x^2= 2.633$ $p = 0.268$
	가끔씩	13 (20.3)	34 (18.5)	47 (19.0)	
	일회성	28 (43.8)	63 (34.2)	91 (36.7)	
계	64 (100.0)	184 (100.0)	248 (100.0)		

#### 4. 가해자 행위 및 피해

연령별로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위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거나(59.3%)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23.5%)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나, 동시에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우(8.5%)와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3.6%) 역시 30대에 비해 많았다.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목살을 잡거나(29.2%)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9.1%)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 욕설, 협박, 신고 등의 행위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4-22 연령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단위: 건(%))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피해자에 대한 욕설	106 (30.4)	209 (34.8)	315 (33.2)	$\chi^2= 1.980$ $p = 0.159$
피해자에 대한 협박	24 (7.0)	50 (8.5)	74 (7.9)	$\chi^2= .617$ $p = 0.432$
말로 피해자를 협박	38 (11.1)	49 (8.3)	87 (9.3)	$\chi^2= 2.038$ $p = 0.153$
피해자를 할름	11 (3.2)	28 (4.6)	39 (4.1)	$\chi^2= 1.121$ $p = 0.290$
피해자를 물음	4 (1.2)	12 (2.0)	16 (1.7)	$\chi^2= .893$ $p = 0.345$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38 (11.0)	67 (11.0)	105 (11.0)	$\chi^2= .001$ $p = 0.974$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	74 (21.4)	206 (33.6)	280 (29.2)	$\chi^2= 15.647$ $p = 0.000$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244 (67.6)	340 (54.5)	584 (59.3)	$\chi^2= 16.267$ $p = 0.000$
피해자를 발로 참	110 (31.3)	116 (19.0)	226 (23.5)	$\chi^2= 18.705$ $p = 0.000$
도구로 피해자 위협	17 (5.0)	33 (5.5)	50 (5.3)	$\chi^2= .109$ $p = 0.742$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21 (6.1)	66 (10.8)	87 (9.1)	$\chi^2= 5.997$ $p = 0.014$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44 (12.8)	37 (6.1)	81 (8.5)	$\chi^2= 12.631$ $p = 0.000$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18 (5.2)	16 (2.6)	34 (3.6)	$\chi^2= 4.252$ $p = 0.039$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	3 (7.5)	2 (4.1)	5 (5.6)	$\chi^2= .485$ $p = 0.486$
경찰에 신고	7 (16.7)	9 (18.0)	16 (17.4)	$\chi^2= .028$ $p = 0.867$

가해자의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마찬가지로 도구의 사전 준비여부, 범행 시 사용한 도구의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4-23 연령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피해 없음	185 (50.3)	352 (55.8)	537 (53.8)	$\chi^2= 3.095$ $p = 0.542$
	가벼운 상해	111 (30.2)	169 (26.8)	280 (28.0)	
	2-3주상해	48 (13.0)	77 (12.2)	125 (12.5)	
	4-8주상해	15 (4.1)	20 (3.2)	35 (3.5)	
	기타	9 (2.4)	13 (2.1)	22 (2.2)	
계		368 (100.0)	631 (100.0)	999 (100.0)	
가해자의 재산 피해 정도	없음	334 (98.8)	567 (97.6)	901 (98.0)	$\chi^2= 1.673$ $p = 0.196$
	있음	4 (1.2)	14 (2.4)	18 (2.0)	
계		338 (100.0)	581 (100.0)	919 (100.0)	

표 4-24 연령별 범행 시 사용한 도구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없음	328 (96.2)	561 (94.1)	889 (94.9)	$\chi^2 = 2.556$ $p = 0.465$
	사전에 준비	4 (1.2)	10 (1.7)	14 (1.5)	
	사전에 준비 하지 않음	9 (2.6)	23 (3.9)	32 (3.4)	
	미상	0 (0.0)	2 (0.3)	2 (0.2)	
계		341 (100.0)	596 (100.0)	937 (100.0)	
범행 시 사용한 도구	없음	318 (93.3)	521 (87.1)	839 (89.4)	$\chi^2 = 12.029$ $p = 0.061$
	막대기, 몽둥이 등	8 (2.3)	15 (2.5)	23 (2.4)	
	칼, 도끼 등 흉기	3 (0.9)	12 (2.0)	15 (1.6)	
	돌, 벽돌 등	1 (0.3)	10 (1.7)	11 (1.2)	
	유리병 등	4 (1.2)	18 (3.0)	22 (2.3)	
	의자등기구	3 (0.9)	5 (0.8)	8 (0.9)	
	기타	4 (1.2)	17 (2.8)	21 (2.2)	
계		341 (100.0)	598 (100.0)	939 (100.0)	

##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및 범행 시인 정도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4-25 연령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180 (59.6)	296 (57.5)	476 (58.3)	$\chi^2 = 6.468$ $p = 0.091$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67 (22.2)	106 (20.6)	173 (21.2)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23 (7.6)	28 (5.4)	51 (6.2)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32 (10.6)	85 (16.5)	117 (14.3)	
계		302 (100.0)	515 (100.0)	817 (100.0)	
가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전적으로 시인	188 (52.2)	307 (49.6)	495 (50.6)	$\chi^2 = .638$ $p = 0.727$
	일부시인	133 (36.9)	240 (38.8)	373 (38.1)	
	부인	39 (10.8)	72 (11.6)	111 (11.3)	
계		360 (100.0)	619 (100.0)	979 (100.0)	

연령별 검거 경위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40.2%), 제3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22.2%)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0대 이상의 범피자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42.6%)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26 연령별 검거 경위

(단위: 건(%))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검거 경위	현행범	141 (40.2)	230 (37.5)	371 (38.5)	$\chi^2 = 16.421$ $p = 0.006$
	자수	7 (2.0)	8 (1.3)	15 (1.6)	
	피해자신고	117 (33.3)	261 (42.6)	378 (39.2)	

		연 령		계	통계값
		20대 이하	30대 이상		
	제3자 신고	78 (22.2)	88 (14.4)	166 (17.2)	
	경찰 등의 인지탐문	6 (1.7)	20 (3.3)	26 (2.7)	
	기타	2 (0.6)	6 (1.0)	8 (0.8)	
계		351 (100.0)	613 (100.0)	964 (100.0)	

#### 제4절 과거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다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 이전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서로 아는 관계였는지 모르는 관계였는지에 따라 폭력 범죄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제2절과 3절에서 상호작용 여부와 성별, 연령별 특성은 살펴본바 있다. 즉 남성 범죄자와 20대 이하의 범죄자들이 사건 전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 중 초등학교 학력(9.7%)과 중학교(15.9%) 학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은 고등학교(38.8%)와 대학교(29.9%)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27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교육수준

(단위: 건(%))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교육 수준	무학	4 (2.1)	2 (0.5)	6 (1.0)	$\chi^2 = 42.707$ $p = 0.000$
	초등학교	19 (9.7)	17 (4.2)	36 (6.0)	
	중학교	31 (15.9)	38 (9.5)	69 (11.6)	
	고등학교	66 (33.8)	156 (38.8)	222 (37.2)	
	대학교	21 (10.8)	120 (29.9)	141 (23.6)	
	대학원이상	2 (1.0)	3 (0.7)	5 (0.8)	
	미상	52 (26.7)	66 (16.4)	118 (19.8)	
계	195 (100.0)	402 (100.0)	597 (100.0)		

## 2. 전과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총전과 횟수와 실전과 횟수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 가해자의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 전과가 없었던 범죄자의 비율(27.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동종전과횟수는 사건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28 사건전 상호작용 유무별 전과횟수

(단위: 건(%))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전과횟수	전과 없음	21 (12.0)	108 (27.7)	129 (22.8)	$\chi^2 = 20.308$ $p = 0.001$
	1회	46 (26.3)	90 (23.1)	136 (24.1)	
	2회	23 (13.1)	54 (13.8)	77 (13.6)	
	3회	24 (13.7)	36 (9.2)	60 (10.6)	
	4회	9 (5.1)	22 (5.6)	31 (5.5)	
	5회 이상	52 (29.7)	80 (20.5)	132 (23.4)	
계		175 (100.0)	390 (100.0)	565 (100.0)	
실전과 횟수 (항군법, 도로교통법 제외)	전과 없음	44 (25.1)	150 (39.5)	194 (35.0)	$\chi^2 = 12.954$ $p = 0.024$
	1회	52 (29.7)	90 (23.7)	142 (25.6)	
	2회	19 (10.9)	44 (11.6)	63 (11.4)	
	3회	19 (10.9)	25 (6.6)	44 (7.9)	
	4회	10 (5.7)	16 (4.2)	26 (4.7)	
	5회 이상	31 (17.7)	55 (14.5)	86 (15.5)	
계		175 (100.0)	380 (100.0)	555 (100.0)	
동종전과 횟수 (폭행, 상해, 폭처법, 살인)	전과 없음	83 (47.4)	217 (57.1)	300 (54.1)	$\chi^2 = 10.349$ $p = 0.066$
	1회	39 (22.3)	72 (18.9)	111 (20.0)	
	2회	27 (15.4)	29 (7.6)	56 (10.1)	
	3회	10 (5.7)	24 (6.3)	34 (6.1)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4회	4 (2.3)	12 (3.2)	16 (2.9)	
	5회 이상	12 (6.9)	26 (6.8)	38 (6.8)	
계		175 (100.0)	380 (100.0)	555 (100.0)	

### 3. 가해자 행동 및 피해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행동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도구로 피해자 위협,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등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비율도 41.7%나 되었다.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단위: 건(%))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피해자에 대한 욕설	93 (37.5)	186 (34.8)	279 (35.7)	$\chi^2 = .526$ $p = 0.469$
말로 피해자를 협박	32 (13.3)	39 (7.4)	71 (9.3)	$\chi^2 = 6.720$ $p = 0.010$
피해자를 할렘	10 (3.9)	22 (4.2)	32 (4.1)	$\chi^2 = .046$ $p = 0.831$
피해자를 물음	4 (1.6)	7 (1.3)	11 (1.4)	$\chi^2 = .064$ $p = 0.801$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39 (14.8)	47 (9.0)	86 (10.9)	$\chi^2 = 6.224$ $p = 0.013$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피해자의 먹살을 잡음	57 (22.0)	174 (32.6)	231 (29.1)	$\chi^2= 9.450$ $p = 0.002$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155 (58.3)	334 (61.4)	489 (60.4)	$\chi^2= .730$ $p = 0.393$
피해자를 발로 찰	65 (24.7)	135 (25.4)	200 (25.2)	$\chi^2= .047$ $p = 0.829$
도구로 피해자 위협	20 (7.8)	20 (3.8)	40 (5.1)	$\chi^2= 5.675$ $p = 0.017$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33 (12.8)	37 (7.0)	70 (8.9)	$\chi^2= 7.145$ $p = 0.008$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4 (1.6)	61 (11.6)	65 (8.3)	$\chi^2= 22.519$ $p = 0.000$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2 (0.8)	25 (4.8)	27 (3.5)	$\chi^2= 8.148$ $p = 0.004$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	1 (9.1)	1 (1.7)	2 (2.8)	$\chi^2= 1.872$ $p = 0.171$
경찰에 신고	5 (41.7)	6 (9.8)	11 (15.1)	$\chi^2= 7.939$ $p = 0.005$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도구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도구를 사용한 비율(사전에 준비 2.7%, 사전에 준비 하지 않음 7.7%)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97.2%)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30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단위: 건(%))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없음	231 (89.2)	514 (97.2)	745 (94.5)	$\chi^2= 22.088$ $p = 0.000$
	사전에 준비	7 (2.7)	5 (0.9)	12 (1.5)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사전에 준비 하지 않음	20 (7.7)	9 (1.7)	29 (3.7)	
	미상	1 (0.4)	1 (0.2)	2 (0.3)	
계		259 (100.0)	529 (100.0)	788 (100.0)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신체적 피해가 없거나(59.2%) 2-3주의 상해(14.2%)를 입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30.8%)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31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가해자의 피해 정도

(단위: 건(%))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피해 없음	158 (59.2)	280 (50.7)	438 (53.5)	$\chi^2 = 12.360$ $p = 0.015$
	가벼운 상해	62 (23.2)	170 (30.8)	232 (28.3)	
	2-3주상해	38 (14.2)	69 (12.5)	107 (13.1)	
	4-8주상해	9 (3.4)	21 (3.8)	30 (3.7)	
	기타	0 (0.0)	12 (2.2)	12 (1.5)	
계		267 (100.0)	552 (100.0)	819 (100.0)	
가해자의 재산 피해 정도	없음	249 (98.8)	511 (97.7)	760 (98.1)	$\chi^2 = 1.092$ $p = 0.296$
	있음	3 (1.2)	12 (2.3)	15 (1.9)	
계		252 (100.0)	523 (100.0)	775 (100.0)	

#### 4. 가해자 태도 및 검거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들은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26.0%),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원하는 비율(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62.6%,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21.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범행 시인정도는 전적으로 시인한 범죄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비율(16.5%)이 높았던 반면,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들은 범행의 일부만을 시인하는 비율(41.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32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단위: 건(%))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123 (53.2)	289 (62.6)	412 (59.5)	$\chi^2 = 35.504$ $p = 0.000$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36 (15.6)	97 (21.0)	133 (19.2)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12 (5.2)	34 (7.4)	46 (6.6)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60 (26.0)	42 (9.1)	102 (14.7)	
계		231 (100.0)	462 (100.0)	693 (100.0)	
가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전적으로 시인	138 (51.9)	273 (50.1)	411 (50.7)	$\chi^2 = 13.806$ $p = 0.001$
	일부시인	84 (31.6)	224 (41.1)	308 (38.0)	
	부인	44 (16.5)	48 (8.8)	92 (11.3)	
계		266 (100.0)	545 (100.0)	811 (100.0)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검거 경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67.2%)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범죄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47.0%) 제3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19.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33 사건 전 상호작용 유무별 검거 경위

(단위: 건(%))

		사건이전상호작용		계	통계값
		있음	없음		
검거 경위	현행범	35 (14.0)	257 (47.0)	292 (36.6)	$\chi^2 = 120.512$ $p = 0.000$
	자수	4 (1.6)	9 (1.6)	13 (1.6)	
	피해자 신고	168 (67.2)	155 (28.3)	323 (40.5)	
	제3자 신고	34 (13.6)	105 (19.2)	139 (17.4)	
	경찰 등의 인지탐문	9 (3.6)	16 (2.9)	25 (3.1)	
	기타	0 (0.0)	5 (0.9)	5 (0.6)	
계		250 (100.0)	547 (100.0)	797 (100.0)	

## 제5절 음주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비음주자는 여성(30.0%)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음주자는 남성(87.5%)이 더 많았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비음주자는 20세

이하(15.0%)와 50대(14.5%), 60대(6.7%)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음주자는 30대(24.6%)와 40대(26.2%)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학력분포는 비음주자의 경우 중학교 학력을 가진 범죄자(14.6%)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음주자는 초등학교(7.1%)와 대학교(29.9%) 학력을 가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34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성별	남자	324 (70.0)	442 (87.5)	766 (79.1)	$\chi^2 = 45.034$ $p = 0.000$
	여자	139 (30.0)	63 (12.5)	202 (20.9)	
계		463 (100.0)	505 (100.0)	968 (100.0)	
연령	20세이하	69 (15.0)	26 (5.2)	95 (9.8)	$\chi^2 = 108.127$ $p = 0.000$
	20대	72 (15.6)	180 (35.7)	252 (26.1)	
	30대	95 (20.6)	124 (24.6)	219 (22.7)	
	40대	118 (25.6)	132 (26.2)	250 (25.9)	
	50대	67 (14.5)	39 (7.7)	106 (11.0)	
	60대	31 (6.7)	3 (0.6)	34 (3.5)	
	71세이상	9 (2.0)	0 (0.0)	9 (0.9)	
계		461 (100.0)	504 (100.0)	965 (100.0)	
교육 수준	무학	7 (2.2)	1 (0.3)	8 (1.2)	$\chi^2 = 48.310$ $p = 0.000$
	초등학교	18 (5.6)	26 (7.1)	44 (6.4)	
	중학교	47 (14.6)	34 (9.3)	81 (11.8)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고등학교	107 (33.1)	139 (38.1)	246 (35.8)	
	대학교	46 (14.2)	109 (29.9)	155 (22.5)	
	대학원이상	6 (1.9)	1 (0.3)	7 (1.0)	
	미상	92 (28.5)	55 (15.1)	147 (21.4)	
계		323 (100.0)	365 (100.0)	688 (100.0)	

## 2. 전과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 전과횟수는 총전과, 실전과, 동종전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35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전과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전과횟수	전과 없음	63 (22.3)	94 (24.4)	157 (23.5)	$\chi^2 = 3.285$ $p = 0.656$
	1회	75 (26.5)	84 (21.8)	159 (23.8)	
	2회	33 (11.7)	47 (12.2)	80 (12.0)	
	3회	28 (9.9)	39 (10.1)	67 (10.0)	
	4회	14 (4.9)	28 (7.3)	42 (6.3)	
	5회 이상	70 (24.7)	94 (24.4)	164 (24.5)	
계		283 (100.0)	386 (100.0)	669 (100.0)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실전과 횡수 (항군법, 도로교통법 제외)	전과 없음	96 (33.9)	139 (37.0)	235 (35.7)	$\chi^2 = 4.870$ $p = 0.432$
	1회	77 (27.2)	84 (22.3)	161 (24.4)	
	2회	26 (9.2)	45 (12.0)	71 (10.8)	
	3회	27 (9.5)	26 (6.9)	53 (8.0)	
	4회	14 (4.9)	18 (4.8)	32 (4.9)	
	5회 이상	43 (15.2)	64 (17.0)	107 (16.2)	
계		283 (100.0)	376 (100.0)	659 (100.0)	
동중 전과 횡수 (폭행, 상해, 폭처법, 살인)	전과 없음	157 (55.5)	200 (53.2)	357 (54.2)	$\chi^2 = 6.204$ $p = 0.287$
	1회	56 (19.8)	69 (18.4)	125 (19.0)	
	2회	31 (11.0)	30 (8.0)	61 (9.3)	
	3회	15 (5.3)	33 (8.8)	48 (7.3)	
	4회	7 (2.5)	12 (3.2)	19 (2.9)	
	5회 이상	17 (6.0)	32 (8.5)	49 (7.4)	
계		283 (100.0)	376 (100.0)	659 (100.0)	

3. 상호작용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비음주자의 경우 사건 전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관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48.7%)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음주자의 경우 사건이전에는 상

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77.7%)가 많았다.

표 4-36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존재 여부	갈등이 있었음	183 (48.7)	70 (16.4)	253 (31.5)	$\chi^2 = 101.776$ $p = 0.000$
	갈등이 없었음	26 (6.9)	25 (5.9)	51 (6.4)	
	상호작용 無	167 (44.4)	331 (77.7)	498 (62.1)	
계		376 (100.0)	426 (100.0)	802 (100.0)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행사한 경우는 일이나 업무상 문제로 인한 갈등(35.5%) 또는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16.9%)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높았고, 음주상태에서 폭행을 행사한 경우는 애정문제(20.0%), 가정불화(13.8%)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존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갈등의 원인 제공자를 살펴보면, 비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상호적으로 갈등을 제공한 경우(48.9%)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가해자가(48.1%)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 왔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갈등의 지속여부를 살펴보면, 비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경우(55.2%)가 많았으며, 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일회적인 갈등에 그쳤던 경우(55.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37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갈등의 주된 내용 및 원인 제공자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내용	애정문제	10 (5.5)	13 (20.0)	23 (9.3)	$\chi^2 = 14.873$ $p = 0.038$
	가정불화	21 (11.5)	9 (13.8)	30 (12.1)	
	모욕, 비하	25 (13.7)	9 (13.8)	34 (13.7)	
	학대	4 (2.2)	1 (1.5)	5 (2.0)	
	채권채무관계	14 (7.7)	6 (9.2)	20 (8.1)	
	일, 업무상문제	65 (35.5)	14 (21.5)	79 (31.9)	
	금전문제	31 (16.9)	10 (15.4)	41 (16.5)	
	기타	13 (7.1)	3 (4.6)	16 (6.5)	
계		183 (100.0)	65 (100.0)	248 (100.0)	
갈등의 원인 제공자	가해자	62 (32.6)	38 (48.1)	100 (37.2)	$\chi^2 = 11.627$ $p = 0.009$
	피해자	31 (16.3)	18 (22.8)	49 (18.2)	
	상호적	93 (48.9)	23 (29.1)	116 (43.1)	
	기타	4 (2.1)	0 (0.0)	4 (1.5)	
계		190 (100.0)	79 (100.0)	269 (100.0)	
갈등의 지속여부	지속적	96 (55.2)	14 (20.3)	110 (45.3)	$\chi^2 = 24.933$ $p = 0.000$
	가끔씩	29 (16.7)	17 (24.6)	46 (18.9)	
	일회성	49 (28.2)	38 (55.1)	87 (35.8)	
계		174 (100.0)	69 (100.0)	243 (100.0)	

##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행동을 살펴보면, 비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가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비율(30.0%)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24.1%),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53.1%), 피해자를 발로 참(20.8%) 등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욕설, 협박, 할킴, 물음, 머리를 잡고 흔들, 위협, 도구 이용, 진정시키려는 시도,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제3자에게 도움 요청 등의 행위는 음주자나 비음주자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 4-38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단위: 건(%))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피해자에 대한 욕설	135 (32.0)	175 (36.1)	310 (34.2)	$\chi^2= 1.680$ $p = 0.195$
말로 피해자를 협박	46 (11.2)	38 (7.9)	84 (9.4)	$\chi^2= 2.749$ $p = 0.097$
피해자를 할킴	15 (3.5)	23 (4.8)	38 (4.2)	$\chi^2= .893$ $p = 0.345$
피해자를 물음	6 (1.4)	6 (1.3)	12 (1.3)	$\chi^2= .042$ $p = 0.838$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49 (11.3)	53 (11.1)	102 (11.2)	$\chi^2= .015$ $p = 0.904$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	104 (24.1)	166 (34.2)	270 (29.5)	$\chi^2= 11.192$ $p = 0.001$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234 (53.1)	326 (65.2)	560 (59.5)	$\chi^2= 14.330$ $p = 0.000$
피해자를 발로 참	91 (20.8)	127 (26.3)	218 (23.7)	$\chi^2= 3.866$ $p = 0.049$
도구로 피해자 위협	21 (4.9)	29 (6.1)	50 (5.5)	$\chi^2= .546$ $p = 0.460$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41 (9.6)	45 (9.3)	86 (9.4)	$\chi^2= .018$ $p = 0.892$

범행 시 가해자 행동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29 (6.8)	49 (10.2)	78 (8.6)	$\chi^2= 3.395$ $p = 0.065$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12 (2.8)	22 (4.6)	34 (3.8)	$\chi^2= 1.914$ $p = 0.167$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	2 (7.4)	3 (5.2)	5 (5.9)	$\chi^2= .166$ $p = 0.683$
경찰에 신고	9 (30.0)	7 (12.1)	16 (18.2)	$\chi^2= 4.274$ $p = 0.039$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도구의 사용 양상은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실제 사용한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비음주자가 막대기, 몽둥이 등(3.3%)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다소 많았고, 음주자는 유리병 등(4.2%)을 사용한 경우가 다소 많았다.

표 4-39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시 사용한 도구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없음	401 (93.7)	457 (95.6)	858 (94.7)	$\chi^2= 4.319$ $p = 0.229$
	사전에 준비	6 (1.4)	8 (1.7)	14 (1.5)	
	사전에 준비하지 않음	19 (4.4)	13 (2.7)	32 (3.5)	
	미상	2 (0.5)	0 (0.0)	2 (0.2)	
계		428 (100.0)	478 (100.0)	906 (100.0)	
범행 시 사용한 도구	없음	386 (90.0)	424 (88.5)	810 (89.2)	$\chi^2= 22.056$ $p = 0.001$
	막대기, 몽둥이 등	14 (3.3)	8 (1.7)	22 (2.4)	
	칼, 도끼 등 흉기	6 (1.4)	9 (1.9)	15 (1.7)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돌, 벽돌 등	6 (1.4)	5 (1.0)	11 (1.2)	
	유리병 등	2 (0.5)	20 (4.2)	22 (2.4)	
	의자등가구	1 (0.2)	6 (1.3)	7 (0.8)	
	기타	14 (3.3)	7 (1.5)	21 (2.3)	
계		429 (100.0)	479 (100.0)	908 (100.0)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비음주자는 자신이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경우(58.3%)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음주자는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32.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전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재산상 피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40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피해 정도

(단위: 건(%))

		음주여부		계	
		비음주	음주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피해 없음	266 (58.3)	244 (48.9)	510 (53.4)	$x^2= 17.310$ $p = 0.002$
	가벼운 상해	106 (23.2)	163 (32.7)	269 (28.2)	
	2-3주상해	65 (14.3)	56 (11.2)	121 (12.7)	
	4-8주상해	13 (2.9)	22 (4.4)	35 (3.7)	
	기타	6 (1.3)	14 (2.8)	20 (2.1)	
계		456 (100.0)	499 (100.0)	955 (100.0)	
가해자의 재산 피해 정도	없음	417 (98.3)	457 (97.6)	874 (98.0)	$x^2= .550$ $p = 0.458$
	있음	7 (1.7)	11 (2.4)	18 (2.0)	
계		424 (100.0)	468 (100.0)	892 (100.0)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비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가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20.3%)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원하는 비율(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60.7%,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24.4%)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시인 정도는, 비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전적으로 시인하거나(53.2%), 부인하는 경향(14.4%)이 많았고, 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범행의 일부만을 시인(43.0%)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41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199 (56.2)	266 (60.7)	465 (58.7)	$\chi^2 = 21.499$ $p = 0.000$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61 (17.2)	107 (24.4)	168 (21.2)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22 (6.2)	23 (5.3)	45 (5.7)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72 (20.3)	42 (9.6)	114 (14.4)	
계		354 (100.0)	438 (100.0)	792 (100.0)	
가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전적으로 시인	236 (53.2)	241 (48.9)	477 (50.9)	$\chi^2 = 16.061$ $p = 0.000$
	일부시인	144 (32.4)	212 (43.0)	356 (38.0)	
	부인	64 (14.4)	40 (8.1)	104 (11.1)	
계		444 (100.0)	493 (100.0)	937 (100.0)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비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한 비율(54.5%)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음주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율(25.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2 사건 당시 음주여부에 따른 검거 경위

(단위: 건(%))

		음주여부		계	통계값
		비음주	음주		
검거 경위	현행범	111 (25.4)	240 (49.6)	351 (38.1)	$\chi^2 = 88.796$ $p = 0.000$
	자수	6 (1.4)	9 (1.9)	15 (1.6)	
	피해자 신고	238 (54.5)	130 (26.9)	368 (40.0)	
	제3자 신고	71 (16.2)	84 (17.4)	155 (16.8)	
	경찰 등의 인지탐문	5 (1.1)	19 (3.9)	24 (2.6)	
	기타	6 (1.4)	2 (0.4)	8 (0.9)	
계		437 (100.0)	484 (100.0)	921 (100.0)	

## 제6절 소결

폭력 범죄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규제한 법률에 따라 그 특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남자나 여자나, 당사자들끼리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음주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30대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20세 이하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전과가 없거나 1회에 불과한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

았다. 불기소된 범죄자 중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경우 불기소처리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인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극단값들이 많았다.

남성들은 20대와 30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들은 20세 이하와 50대-60대 가해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여성들은 갈등여부, 호감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전부터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은 남성에게는 모욕이나 비하로 인한 갈등과 업무상 문제로 인한 갈등 더 많았던 반면, 여성에게는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가 원인이었던 갈등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들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의를 원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여성들은 갈등이 오래 지속된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고, 싸움 이후에도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 이전에 상호작용이 없었거나 당일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으나, 30대 이상의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우와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역시 30대에 비해 많았다. 20대 이하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전 서로 아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전과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

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사건 중에 협박, 위협, 도구사용 등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으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비율도 2/5가량 되었다.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과 싸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모르는 사람과 싸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대와 40대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주자들은 애정문제, 가정불화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갈등의 제공자는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경우 가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술을 마시고 싸운 경우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싸웠다. 이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술을 마시고 싸운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제5장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 제1절 현장관찰의 진행 과정

### 1. 현장관찰 전 준비사항

#### 가. 연구방법의 선택

경찰단계에서 발견되는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행하기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들 수 있다. 설문조사법을 택한다면, 경찰관들의 표본을 추출한 후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들이 업무 중 흔히 발견하는 폭력의 유형과 원인 등을 조사하면 되는데, 이는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정확한 폭력실태파악에 가장 적당한지 의문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설문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을 꺼릴 이유가 있다면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탁종연, 2006)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접한 폭행사건의 상당수를 비공식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을 외부인에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경찰관들이 얼마

나 성실히 설문에 응해 줄지도 의문이 들었다. 물론 기존의 경찰학연구를 보면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히 타당한 응답을 구한 경우도 많지만,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대체로 낮고, 특히 질문주제가 민감할 경우 솔직한 답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되, 이런 한계점을 인식하여 주된 연구방법인 참여 관찰법을 보완하는 보조적 도구로만 사용하였다.

심층면접법은 설문조사법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끌어내기 좋은 방법이다. 면접 전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연구의 취지를 분명히 인식시킨다면 보다 사실에 가까운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김영천, 2010). 또한 연구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관습, 태도 등에 대하여 내부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깊이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여전히 폭력실태연구법으로 진실에 접근하기 가장 적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경찰관 개개인이 응답하는 사실도 자신이 인지하는 현실과 객관적인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도 모르는 인지적 왜곡(perception bias)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면접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리방식 등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경찰문화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비밀주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단기간의 면접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사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방법들이 모두 폭력범죄의 현실을 경찰관의 입과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조사한다는 점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도 보조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하였다.

다른 연구방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참여관찰법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장기간 나가서 연구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김영천, 2010; Spradley, 2009), 이것은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으로 주제의 민감성이나 비밀주의 때문에 피연구자가 사실대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번 폭력실태 연구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흔히 접하는 폭력 사건을 범죄피해조사나 공식범죄통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참여관

찰법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폭력 사건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제3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관찰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관찰이라는 용어보다는 현장관찰이라는 용어로 본 조사의 방법을 지시하였다.

사실 참여관찰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폭력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적으로는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의 폭력 사건들까지 폭력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관찰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은 만인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고 설사 그런 환경이 인위적으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폭력 사건에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은, 폭력 사건을 일선에서 다루는 경찰과 함께 있으면서, 경찰이 인지하는 순간 그 기회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를 시행한다면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생생한 상호작용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타인의 언어를 통하는 것 보다는 연구자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관찰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 나.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관찰방법은 범죄학 분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다. 연구진 역시 양적 연구를 주로 활용해왔고, 질적 연구를 한 경우에도 심층면접 위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현장관찰방법에 정통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관찰방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 연구진들은 범죄학분야에서 현장관찰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학자는 물론, 인류학분야에서 현장관찰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자 등 5명을 자문회의에 초대하도록 하였다. 자문회의에 앞서 이들에게 이메일로 참여관찰의 목적과 현장관찰지 양식 등을 미리 송부하여 충실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연구진은 2010년 7월 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의 사회는 연

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이 공동으로 맡았고, 자문단에게 연구의 목적 등을 간략히 다시 설명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장소 선택, 관찰방법, 참여관찰지의 구성 등 구체적인 연구방안을 간략히 소개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문회의가 연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보조원들도 자문회의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자문학자들은 연구진에게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제시해준 주된 연구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관찰은 구조화된 관찰지보다는 반구조화된 관찰지를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연구진 중에서도 반구조화된 관찰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가 있었으나, 현직 경찰인 다른 공동연구원은 지구대나 파출소가 차분히 앉아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조화된 관찰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하지만, 자문단 대부분이 그러한 관찰지로는 현장의 풍부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반구조화된 관찰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진도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관찰지의 내용을 다시 전면 수정하였다(덧붙임 참조).

자문단이 제공한 두 번째 조언은 연구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라는 것이었다. 애초 연구진은 서울 1곳, 경기 1곳, 지방 1곳 등 3개 경찰서에서 각 3곳의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관찰하려고 계획하였다. 자문단은 이런 장소 선택은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진이 임의로 선택한 각 경찰서가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차라리 서울이나 경기 등 한 곳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였다. 그 조언은 타당한 것이었지만, 연구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행정적인 이유가 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동연구원의 개인적 인맥으로 경찰서장을 접촉하여 연구 장소를 선정했고, 이미 공문을 해당 경찰서에 발송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진은 적어도 서울, 경기, 지방의 경찰관서에서 발견하는 폭력의 실태나 대응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밝혀내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세 번째 조언은 관찰 장소를 파출소 내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애초에 경찰이 접하게 되는 폭력 사건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하거나, 순찰 중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를 경찰관서로 인계하거나 혼방하는 순간까지를 관찰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경찰관과 같이 순찰을 다니고 순찰차에도 동승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문단은 그와 같이 관찰 장소를 넓게 잡는 것이 연구 인력과 비용적 제한을 감안해 볼 때 다소 과다한 욕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모든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파출소나 지구대 안에 상주하면서 관찰하는 편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진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공동연구원은 그렇게 관찰 장소를 제한할 경우, 경찰관서에 오지 않고 현지에서 해산되는 경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리지 못하였고, 현지에서 연구를 일단 시작하고 나서 현장 경찰관의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출동상황부터 관찰하도록 잠정 결정하였다.

자문단이 제시한 네 번째 조언은 심층면접 등으로 참여관찰방법을 보완하라는 것이었다. 즉 삼각화(triangulation)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전문가인 한 자문위원은 관찰 장소를 파출소와 지구대 안으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그 의견이 자체로도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관찰 장소를 넓게 잡을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제안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관찰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후 심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문회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관찰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바꾸고, 심층면접을 추가하는 것은 연구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다. 연구보조원의 선정과 훈련

현장관찰방법은 연구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연구진이 직접 모든 관찰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

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1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수개월간 관찰을 해야 하는데 연구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을 뿐 아니라 연구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연구보조원을 이용하여 관찰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보조원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보조원을 선정할 때는 폭력실태와 처리방식을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전·현직 경찰관 출신 학자들은 전문지식이 있어도 편견 없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질적 연구를 많이 한 여타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은 연구경험은 풍부하더라도 법과 경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찰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경찰학 또는 범죄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후보자를 찾았는데, 범죄학 연구가 활발한 모 대학 사회학과와 범죄학전공 대학원생들은 모두 일정상 거절하여, 다른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1명, 박사수료자 1명, 박사1명, 외국대학 형사사법학과 박사수료자 1명 등 총 4명을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보조원을 선정할 때 함께 고려한 사항은 이들이 파출소와 지구대 현장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쉽게 경찰관과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는 지였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다른 후보자들 중 너무 나이가 어려 보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폭력사건을 관찰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들 연구보조원에게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정을 위한 면접을 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인들이 이에 관심과 연구의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에 동석하도록 하여 애초에 연구방향과 방법이 전문가들의 제언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체험토록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찰 방법 및 관찰 장소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교육이 이뤄졌다. 연구하기 직전에는 중점관찰사항과 주의사항을 별도 문건으로 제작하여 읽도록 하였다(덧붙임 참조). 이 내용에는 경찰관에 대한 호칭, 라포 형성방안, 그리고 관찰기록 방법 및 보고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지에 도착하여 연구시작하기 직전 및 연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연구

보조원들이 대부분 박사학위를 거의 마쳤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논문을 출판한 경력도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처음 작성한 관찰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관찰한 내용을 이 연구를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관찰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피관찰자들의 언어, 행동, 그리고 감정 등이 충분히 기록되지 못하였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다시 모여 관찰지 작성을 보다 생생하게 하도록 추가적 설명을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한두 번의 시행착오 후에는 관찰내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현장 들어가기

### 가. 현장관찰 장소 선정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폭력 사건을 관찰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관찰해야 할지의 문제가 남았다. 모든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의 일선 경찰관서를 모집단으로 하고 이를 대표하는 상당한 수의 표본 경찰관서를 관찰 장소로 선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표본설정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우선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제약이 있으므로 세 곳 이상의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각 경찰서에는 통상 4개에서 10개 정도의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으므로 그중에서 2-3곳 정도를 관찰 장소로 선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전체적으로 3개의 경찰서에서 총 8곳의 지구대나 파출소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표 5-1 참조). 방문할 경찰서 세 곳 중 두 곳은 대도시의 경찰서로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폭력 사건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농촌지역을 한 곳 선택한 이유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유형과 처리과정은 도시지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빗나갔다. 무엇보다 농촌지역 경찰서에 속한 두 개의 파출소와 지구대는 폭력사건 자체가 너무 드물게 발생하여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곳의 폭력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경찰들의 처리행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면 자문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도시 지역, 특히 서울 등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그곳에서나마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에서 관찰할 3개 경찰서 8개의 지구대 또는 파출소는 다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3곳, 주거지역 2곳, 업무지역 1곳, 농촌지역 2곳으로 나누었다(〈표 5-1〉 참조). 현직 경찰관인 연구원과 경찰관출신 연구원은 상업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이 보다 많이 발생하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 상업지역을 3곳 포함시켰고, 주거지역이나 업무지역을 관찰대상에서 배제하면 혹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지나치게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도 3곳을 선택하였다.

**표 5-1 참여관찰 경찰관서의 특성**

광역지역특성	세부지역특성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
대도시	상업지역	1경찰서	A지구대
		2경찰서	B지구대
		2경찰서	A파출소
	주거지역	1경찰서	C지구대
		2경찰서	B파출소
	업무지역	1경찰서	C파출소
농촌	농촌지역	3경찰서	D지구대
		3경찰서	D파출소

#### 나. 공문보내기와 협조구하기

대도시 경찰서 두 곳과 농촌지역 경찰서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서를 갈 것인지의 문제가 남았다. 통상 질적 연구에서는 연

구자들을 연구지로 안내해주고 접근을 허가받도록 도와줄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이 중대한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연구원 중 한명이 현직 경찰간부였기 때문에 그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연구 개시되기 한 달 전 이 연구원은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경찰서장이나 생활안전과장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들에게 먼저 전화로 연구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연구책임자와 함께 직접 방문을 하여 연구허락을 요청하였다. 방문을 받은 경찰간부들은 연구의 목적에 대체로 공감하였고, 연구결과물에서 관찰 장소나 연구 참여자들의 실명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는 모두 연구를 허락해주었다.

연구에 협조해준 경찰간부들은 연구개시의 조건으로 약간의 행정적인 요구를 하였다. 그것은 국책연구기관의 공식연구이므로 관련된 공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연구기간, 방문파출소와 지구대, 연구 참여자 명단 등을 담은 공문을 3곳의 경찰서에 발송하였고, 각 경찰서에서는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에 그 공문내용을 다시 알려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었다.

사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바로 현지에 가서 연구를 하기 전 실제 현지인들과 사전에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제까지 단계에서는 실제로 연구를 도와줄 생활안전과, 지구대, 파출소의 직원들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연구를 개시하면 이들과 라포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저항마저 예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체 연구진은 해당 경찰서의 지구대와 파출소 관할 부서인 생활안전과에 전화연락을 통해 연구 첫날 방문약속을 잡은 후, 식사 또는 음료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장과 직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연구목적 등을 다시 설명하게 되어 연구를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다. 일단 경찰관들이 연구진들을 낯설어 하지 않고 묻지 않는 질문까지 나서서 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다만, 대도시 경찰서 두 곳에서는 모두 이런 약속을 하지 못하고 경찰관서에서 간단한 음료만 나누는 수준이어서,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문했을 때 경찰관들이 다소 어색해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현지의 경찰관들과 처음부터 라포형성을 시작해야 했다.

### 3. 현장관찰

#### 가. 윤리적 고려와 관찰자 지위규정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은 윤리적 위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사건의 당사자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연구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연구의 중단과 같은 사태나 신체적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기본요건은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Spradly, 2009; 김영천, 2010).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경찰관과 폭력당사자들을 모두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먼저 각 경찰관서의 책임자들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었고, 해당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어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원 등의 신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연구내용에 대한 고도의 기밀유지를 약속했지만, 직접 관찰대상이 된 경찰관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연구에 참여한 현장의 경찰관들은 상급기관인 경찰서의 공문이 자신들의 파출소나 지구대에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참여가 강제가 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비록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연구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꺼이 폭력사건 현장으로 연구원들을 안내해 주었지만, 소수의 경찰관들은 그다지 편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현직 교수 등이 단지 폭력 사건을 관찰하러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아마도 자신들의 사건처리과정의 비리 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추후 경찰조직이나 개인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진은 연구의 취지와 사후 결과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설명했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들과는 순찰차 동승을 피했고, 나머지 대다수의 경찰관들과 동승하며 관찰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관찰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찰을 꺼려했던 경찰관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처리한 폭력 사건도 결국은 대부분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최종 처리되었기 때문에 연구진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더 큰 문제는 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이들 폭력당사자들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감정이 매우 격해있는 사람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알린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원들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관찰을 하였다. 즉, 폭력당사자들에게는 연구원의 신분을 구경꾼 또는 기자 등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물론 연구보고서의 어디에도 관찰자의 신상을 밝힐만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에 다소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사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구해 추후 면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든 허락해주기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과정에 얻은 정보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나. 라포형성

연구 참여자들이 현지의 실상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김영천, 2010). 특히 이번 연구처럼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관이나 범죄자들을 관찰할 때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기 전 연구진과 연구참여자가 식사를 같이하게 된 경우에는 쉽게 호형호제까지 하는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대도시 경찰서에서는 연구현장에 방문했을 때 경찰관들에게 연구취지 설명부터 라포형성 등 일체의 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라포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문하기 전 도넛과 음료를 구입하여 경찰관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관들은 이런 작은 호의를 즐겁게 받아들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도 야식을 대접하

겠다고 직접 끓인 라면, 삼계탕, 떡볶이, 수박 등을 연구진에게 권하였는데, 이런 간단한 회식자리가 긴장을 푸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리포형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주로 전·현직 경찰관 연구원들이 맡았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전·현직 경찰관으로서 이 폭력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연구결과가 경찰조직이나 경찰관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원 중 한명이 현직 경찰간부라는 점은 참여자들이 의심을 푸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연구진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알려주어 이들의 경계심을 풀도록 유도하였다. 경찰관들은 연구원이 전직 경찰로서 현재 교수로 일하는 사실 등을 들으며 흥미로워했고, 과거 경찰경험 등을 같이 반추하면서 연구원이 완전한 타인이 아니라 일정부분 내부자라고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참여자들이 평소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였다.

아, 경찰대학 출신이셨군요. 몇 기예요?

그래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교수되니까 어때요..좋아요?

과거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즘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한 식구니까 뭐 숨길 것도 없겠네요.(A 파출소장)

다른 연구원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리포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직접 관찰을 담당한 연구원들이 모두 경찰학 및 형사사법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이며 유명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이 경찰관들이 경계심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들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다소 나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자세를 낮추었는데 이것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아 그러니까.. 모두 박사님들이시네요.(B 경찰관)

형님으로 생각할 테니 잘 가르쳐 주십시오.(C 연구원)

무슨 말씀일..우리가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B 경찰관)

#### 다. 관찰기간, 시간 및 방법

소수의 인원으로 폭력 사건의 실태를 유형별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여건상 관찰은 5주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기간을 잘 분배하여 사용해야 했다. 첫 주는 농촌의 경찰서에서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폭력사건 수도 얼마 되지 않아 연구에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주와 셋째 주는 대도시의 경찰서 한곳, 넷째 주와 다섯째 주는 다른 대도시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표 5-2〉 참조). 연구원들은 해당되는 주에 담당 파출소 또는 지구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였다.

표 5-2 경찰서별 관찰일정

		관찰일자				
		7.5-7.10	7.12-7.17	7.19.-7.24	7.26-7.31	8.2-8.7.
1경찰서	A지구대	A팀				
	B파출소	B팀				
2경찰서	A파출소		A팀			
	B지구대		B팀			
	C지구대			A팀		
3경찰서	A지구대				B팀	
	B파출소				A팀	
	C파출소					B팀

구체적인 관찰시간은 폭력 시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녁9시부터 새벽3시까지로 정하였다. 물론 다른 시간까지 모두 관찰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한정된 연구 인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야간시대에 집중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연구를 실제 진행하다보니, 새벽 3시 직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의 처리가 아침에야 끝나 관찰시간이 초과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연구원들은 비록 낮에는 휴식을 취하였지만, 새벽까지 관찰하느라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느꼈다.

관찰은 2인 1조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관찰사례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연구원 한명이 경찰관 한명과 동행하면서 관찰하도록 계획했으나, 이런 방법은 무리가 있다는 점이 금방 드러났다. 무엇보다 연구원 혼자서 폭력 사건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관찰해야 할 폭력 사건에는 가해자, 피해자, 경찰관 등 최소 세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세 당사자들은 종종 두 명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홀로 관찰을 할 경우 최소 세 명에서 많게는 여섯-일곱 명의 언어와 행동을 담아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찰조 편성을 2인 1조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 관찰연구에서 채택한 참여의 유형은 수동적 참여로 하였다. 수동적 참여란 연구자가 현장에 있기는 하되, 관찰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깊이 관련을 맺거나 관찰 대상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서,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구경꾼이나 방관자적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Spradly, 2009: 75). 사실 현직 경찰관이 아닌 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은 수동적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이 현장에 있으면서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는 행위 등을 했지만, 일단 폭력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는 어떤 식의 관여도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관찰만을 하도록 하였다.

수동적 참여를 할 때 핵심이 되는 요소는 효율적인 관찰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Spradley, 2009: 75). 하지만, 연구원들이 어디에서 관찰한 지는 연구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미정으로 남아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진은 연구원들이 경찰관을 선정한 후 그가 도보 또는 112순찰을 할 때나 파출소 내에서 근무할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경찰관 뿐만 아니라 지구대나 파출소장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했다. 현직 경찰관인 공동연구원도 112순찰차에 동승하면서 관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농촌지역의 생활안전과장은 관찰직전 회식자리에서 순찰차 동승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말하여, 우리는 파출소나 지구대 안에서만 관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진이 세 개의 경찰서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에게 혹시 순찰차 동승이 가능하지 공손하게 묻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흔쾌히 순찰차의 동승을 허락하

였다.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연구진은 경찰관 1명을 계속 따라다니는 방법보다는 112순찰차에 동승하여 현장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관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통상 3시간 동안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을 한 후에는 보통 파출소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경찰관을 지정한 후 따라다니면 현장에서의 관찰시간이 하루에 2-3시간에 불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었다.

순찰차를 중심으로 관찰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순찰차에 동승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았다. 작은 파출소의 경우에는 순찰차량이 한 대 뿐이므로 어떤 차량에 동승해야 하는 지 고민이 없었다. 하지만 중간크기 이상의 파출소나 지구대의 경우에는 두 대가 넘는 순찰차가 있어서 동승차량을 선택해야 했다. 현지 경찰관들에게 문의를 해보니, 각 순찰차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관내 전역을 무작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폭력범죄가 다발하는 지역을 다니는 순찰차에 주로 동승하며 관찰을 실시하였다.

#### 라. 압축된 현지노트와 관찰보고서 작성

폭력사건은 적어도 두 명의 관련자들이 격렬한 육체적 감정적 경합을 하는 상호작용이므로, 일반적인 질적 연구보다도 관찰하기 더욱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명의 연구원이 함께 관찰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신체적, 언어적, 감정적 표현을 모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관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논의되었다. 이상적으로는 녹음이 되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관찰을 하고, 이를 사후에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관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폭력현장에서 범죄행위를 녹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의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해당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에게서 촬영허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처리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법처리 과정을 민간인인 연구원들이 기록으로 보관한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에 허가를 구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폭력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위험

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관찰방법은 압축된 현지노트를 이용해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나중에 관찰보고서로 재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압축된 노트는 참여관찰 중 직접 관찰내용을 어구와 단어, 미완성의 문장 등으로 요약해서 기록하는 현지노트의 일종으로 이번 연구처럼 현지인의 활동을 현장에서 바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Spradley, 2009: 89). 연구원들은 기자수첩크기의 노트를 연구현장에서 상시 휴대하면서 폭력 사건을 접한 순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연구의 주요사항을 계속 기록하였다. 이 압축된 현지노트에는 관찰보고서에 들어갈 주요 목차를 대략적으로 적어 놓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피해상황, 태도, 언어, 그리고 경찰관의 태도 등을 빠르게 키워드 위주로 적었다. 기록이 누적됨에 따라 폭력사건별로 공통된 내용이 많다는 점이 알게 되었고, 노트작성도 좀 더 수월해져 갔다. 기록한 양은 사건별로 달랐지만 적게는 2쪽에서 많게는 5쪽에 이르렀다.

일종의 확장된 현지노트로 볼 수 있는 관찰보고서의 작성은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보고서는 압축된 노트를 바탕으로 하여 관찰한 내용을 연구주제에 맞게 현지에서 기록하지 못한 내용을 회상의 방법을 통해 보완·재구성한 것을 말하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은 관찰이 끝난 후 피로도가 크지 않을 때는 근무 직후, 피로도가 큰 날은 취침 후 다음날 낮에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찰을 두 명이 동시에 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관찰내용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겼다. 모든 연구원이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서 연구내용에 대한 상당한 교육과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조에 속한 두 사람이 관찰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하였다. 하지만 두 명중 한 사람이 놓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연구원의 관찰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피해자, 가해자, 경찰관 등의 태도부분이었다. 이런 차이는 주로 관찰자가 누구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비록 관찰 전에 관찰자는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관심에 따라 시점이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A연구원은 경찰관의 입장에 가깝게 사건을 바

라보는 반면,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찰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B연구원은 주로 폭력당사자 쪽에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B연구원은 경찰관에 대한 당사자들의 태도를 중립적이었다고 볼 때, A연구원은 다소 불손하고 감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폭력 사건이 처리된 이유 등을 해석할 때도 해당자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이 더 컸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런 차이점을 좁히기 위하여, 공동으로 관찰한 연구원들은 1차적으로 각각 작성한 관찰보고서를 토대로 대화를 나누었고 계속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에는 관찰보고서에 색깔을 달리하여 각자의 의견을 별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관찰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관찰내용이 유사해 최종적으로 관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완성된 보고서는 인터넷에 개설한 카페에 파일형태로 게시하여 연구책임자와 다른 연구원들도 함께 보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심층면접과 기록검토

##### 가. 심층면접

이 연구가 참여관찰을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선택했지만, 연구진이 관찰한 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폭력사건에 대한 보다 폭넓고 충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폭력사건을 직접적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경찰관들은 그간 자신들이 직접 처리했거나 다른 경찰관들이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실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접의 형태로 얻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면접은 크게 관찰시 비공식적인 면접과 관찰이 끝난 후 추후면접 등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진은 관찰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인 면접을 하였다.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폭력사건의 대체적인 특색과 처리방식 등을 질문하였는데, 이들이 전해주는 내용은 관찰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관찰을 끝낸 직후에도 폭력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

어보았다. 사실 어느 정도 친밀함이 형성된 후에는 경찰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폭력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대체로 경찰관들은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신들의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고충과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데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숨기는 기색이 없었다. 더 나아가 곧 교수가 될 박사급 연구원들과 연구원들에게 폭력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 파출소와 지구대의 개편의 장단점, 교대근무의 문제점,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경찰의 성과관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거침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폭력관찰연구가 끝난 후에 연구원들은 경찰이 처리하는 폭력사건의 실태나 처리방식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지식이 경찰관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재확인하고 싶었다. 공동연구원은 연구원들에게 자신이 관찰했던 파출소와 지구대를 다시 방문하여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했던 경찰관과 폭력사건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할 때는 3명의 연구원이 폭력사건처리의 열쇠역할을 하는 팀장급 경찰관 1명과 중간이하의 경찰관 1명 등 2명씩을 면접하도록 하였다. 팀장급을 한 명씩 포함한 이유는 관찰을 하면서 이들 경찰관들이 모두 폭력사건의 처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계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중요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중간 이하의 경찰관들은 나이도 상대적으로 적고 폭력사건을 다루는데 핵심역할은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폭력사범을 직접 다루는 등 굵은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면접에 대한 특별한 사례는 하지 않았으며,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약 20분에서 30분에 걸쳐 시행했다. 면접내용의 기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지고 갔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수기로 현지노트에 면접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폭력당사자들에 대한 면접은 시행하지 못했다. 일단 폭력당사자들은 폭력사건 당시에 대부분 음주상태이거나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는 물론 직후에도 면접을 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들을 추후에 면접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폭력사건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든 그렇지 않던 간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은 경찰관들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 나. 기록검토

관찰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경찰관들은 거의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폭력 사건을 접한다는 것과 많은 폭력사건을 공식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단순 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건화 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식처리하지 않는 것이 불법적인 행태는 아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관찰 전에 기대했던 것이나 선행연구(탁종연, 2006)에서 보고되었던 것보다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비공식적으로 종결되어 다소 놀라웠다. 연구진은 관찰한 내용이 혹시라도 경찰관들의 행동변화나 잘못된 표집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을 찾았다.

다행스럽게도 경찰관들은 순찰근무를 하면서 112신고나 파출소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과 처리결과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부분철’에 수사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기록을 비교하면 경찰관들이 신고 받은 사건 중 어느 정도를 공식 처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냈다. 연구진은 근무일지 등 서류를 기꺼이 공개해준 4곳의 지구대 및 파출소의 기록을 일일이 현지노트에 기록하였고, 그 내용은 후술하는 연구결과에서 제시할 것이다.

### 5. 연구의 타당도 점검

질적 연구도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Lincoln과 Guba(1985)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신뢰성 준거들로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찰을 했는지 여부, 삼각화 기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김영천, 2010:543이하 재인용). 아래에서

이번 연구에 사용한 신뢰도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가.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찰

본 연구가 충분한 기간 동안 관찰을 했는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연구에서 순수한 관찰기간만 5주로 정한 것은 연구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을 만족시킬 만큼의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애초에 연구진은 5주 정도의 시간동안 연구진과 함께 4명의 연구보조원을 참여시켜 관찰을 한다면 넉넉한 사례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오산이라는 점이 곧 드러났다. 먼저 폭력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단 1인 관찰에서 2인1조 관찰로 팀 구성을 바꾼 것이 관찰 사례수를 작게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방문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수 자체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찰서는 물론이고 대도시에서도 하루에 발생하는 폭력사건 수가 1-2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에는 한 건도 일어나는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연구진에는 전·현직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고, 연구보조원들도 금방 경찰무전에 익숙해져 경찰관들과 같이 무전을 계속 들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폭력사건을 숨겼다고 보기 어려웠고 결국 운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경찰관들은 우리가 관찰하겠다고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사건이 없다고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번에 관찰한 사례가 20여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를 관찰하기 보다는 적은 사례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깊이있는 이해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우리도 사례 수에 집착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

### 나. 삼각화

Lincoln과 Guba(1985) 등은 질적 연구의 신뢰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삼각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구방법의 통합, 연구자의 통합, 그리고 자료의 통합을 거론

하다(김영천, 2010). 이번 연구는 삼각화를 통한 신뢰수준 담보가 비교적 잘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연구진은 참여관찰 외에도, 심층면접, 그리고 기록 검토 등 여러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참여관찰을 시행한 것은 다른 연구방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직접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관들은 연구진이 이미 관찰을 통해 폭력의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심층면접에 응할 때에도 보다 사실에 가깝게 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구자의 통합은 연구진의 구성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 연구의 핵심인 참여관찰의 경우 한 명의 연구원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2인1조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관찰보고서의 작성도 두 명의 연구원이 각각 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호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었을 경우 토론을 통해 의견의 접근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같이 기재하는 등 연구원 개인의 오류에 의한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도록 애썼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세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각각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애썼다. 다행스럽게도 각 연구 방법을 통해 수집한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여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였다. 다음 장의 연구결과에서는 각 자료의 내용을 연구의 문제별로 통합하여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 6. 연구자료 정리방법

### 가. 연구자료 축소

관찰을 마친 후에는 방대한 양의 현지노트와 관찰보고서를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남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료 축소는 현지노트를 토대로 관찰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현지노트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피해상황, 태도, 언어, 그리고 경찰관의 태도 등이 열쇠 말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연구진은 관찰이 끝난 후 귀가하여 노트의 내용을 기초로

기억을 되살려 관찰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나. 자료 재구축

총 19건의 관찰보고서와 면접기록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간단하지 않았다. 먼저 관찰보고서 내용의 정리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작업을 한 것을 기초로 시작하였다. 관찰보고서를 읽어가면서 연구를 시작 전 지정했던 주요변수, 예를 들어, 폭력의 일시, 장소, 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 처리결과 등을 엑셀프로그램의 행의 제목으로, 각 사례를 열로 지정한 후 마치 양적연구의 코딩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딩을 한 것이다. 물론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주요 변수의 내용은 길고 자유롭게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싸움의 원인이나 합의의 원인, 혹은 공식처리의 원인에는 각 사례별로 있었던 내용을 관찰보고서를 이용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한 코딩작업을 하게 되자, 각 사례의 정리가 다소 쉬워졌다. 폭력의 원인, 폭력사건의 처리결과와 그 원인 등 핵심적인 주제별로 나눠보니 각 사례는 크게 2-3개로 분류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전체 사례는 프로그램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공식사건으로 처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등을 쉽게 분류가 되었고, 그런 사건들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바로 드러났다. 즉 일종의 교차분석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본 후 주로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에 비해 음주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도 바로 밝혀졌다.

코딩작업이 끝난 후에는 엑셀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폭력의 실태자체를 묘사하는 부분의 정리는 비교적 단순하였다. 폭력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발생시간과 장소 등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결과 부분에서 그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폭력자체의 원인과 처리결과의 원인 등을 정리할 때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참조하였다. 폭력의 원인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참고한 폭력의 하위문화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의 틀에 맞추어 실제로 음주폭력문화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음주행위가 사건의 핵심적 촉발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부정적 자극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런 자극은 어떤 것이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경찰관들과의 면접내용과 엑셀파일을 토대로 관찰보고서를 몇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자, 폭력이 일어나게 된 부정적 자극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뉘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폭력사건의 처리의 결과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찰보고서와 엑셀에 코딩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경찰관들과의 면접내용과 연구진의 경찰관으로서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경찰관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 어떤 사건이 공식 처리될지 여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의견은 본 연구의 관찰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 7. 연구진의 주관성

연구자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에 결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구진 대부분이 전·현직 경찰관 또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연구수행은 쉬웠지만, 반대로 그런 관심과 경험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연구자가 가진 경찰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연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행스럽게도 연구의 핵심인 폭력사건의 원인분석에서는 경찰 관련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경찰관들에게는 누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할 뿐, 폭력의 원인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폭력사건의 처리결과와 그 원인은 경찰관들의 입장에 가까워졌을 때 다소 경찰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관찰을 진행하다보면서 이러한 생각도 기우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폭력사건의 처리는 경찰관들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폭력의 당사자들의 결정, 즉 합의의 유무에 주로 방향이 정해졌고, 경찰의 입장은 경찰관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때에만 중대한 요소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이 친 경찰이든 반 경찰 성향이든 그러한 관찰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연구책임자는 그러한 관심과 경험이 거의 없는 입장이어서 연구가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찰 보고서와 연구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제2절 연구결과

### 1. 언제 어디서 싸우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관찰된 폭력사건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시간적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관찰을 제한했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만을 관찰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6시간의 관찰시간을 통해서도 뚜렷한 발생시간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폭력사건은 자정이 가까운 야심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밤 10시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단 두건에 불과했으며(9번, 10번 사건), 통상적으로 밤 11시 30분정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발생 시간은 정확히 폭력이 시작된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폭력이 시작되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도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시작되어 신고 되기까지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이 같은 발생 시간 추정은 대략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4곳의 근무일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폭력사건의 신고는 밤9시부터 자정까지(23%) 전 시간에 비해 급속히 늘다가, 자정부터 새벽3시(30%)에 절정을 이르고, 새벽3시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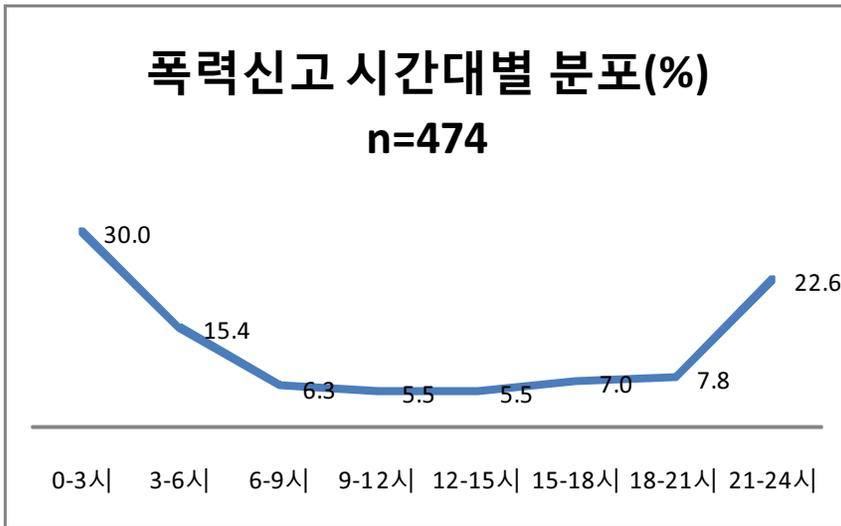


그림 5-1 2010년 7월 4개 자·파출소에 신고 된 폭력사건의 시간대별 분포도

폭력사건은 왜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주로 일어날까? 이것은 사람들의 음주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상 음주를 저녁 7-8시에 시작하므로, 취기가 올라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할 시간대가 대략 밤 11시경이 되는 것이다.

평일의 경우에도 시간대 별로 폭력사건이 나누어집니다. 평일 24시 이전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로 발생하는 단순폭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24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만취가 된 상태기 때문에 첫째, 술값시비, 둘째, 모르는 사람들끼리 발생하는 폭력, 셋째,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합니다.(30대 후반 경장)

이런 정황해석은 후술하는 폭력사건 빈발 장소와 당사자들의 음주상태와 연결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사실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폭력 사건들이 술을 마시는 장소 및 그 인접장소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단란주점(18번)이나 호프집(12번, 19번)과 같이 음주전용 업소나, 횡집(13번)이나 국밥집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7번, 11번)에서 직접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나머지 경우도 술을 파는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이나 주변 노상(1번, 2번, 3번, 4번, 9번, 10

번, 16번)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관찰지의 경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연구진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폭력사건이 주로 어떤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였다. 방문한 거의 모든 지구대·파출소마다 폭력이 빈발하는 특정한 골목 또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00대학 먹자골목”, “00 로테오거리”, “00사거리 술집골목” 같이 술을 마시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담겨진 이름인 경우가 많았다.

(관내도를 보여주며) 여기 보이는 데가 ...들이 주로 모이는 00골목인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긴 했는데, 옛날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칼 들고 설치고. 많이 좋아졌어요.(50대 초반 경위 팀장)

우리 지구대 관할이 술집 등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관내 지역별로 보면, 먹자골목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대 후반 순경)

## 2.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별과 나이대로 분석해보면 폭력은 비교적 젊은 남성들의 범죄라는 점이 드러났다. 우선 폭력범들은 거의 전부 남성들이었다. 이번에 관찰한 폭력 사례 중에서 여자가 주된 가해자인 경우는 채권자로서 돈을 떼먹고 도망간 채무자를 우연히 발견한 단 한건(12번)에 불과했으며,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단란주점 여사장인 경우(18번)와 동거녀였던 경우(6번) 등 단 두 사례에 불과했다. 다만 이런 폭력 범죄에서의 성차가 다소 줄고 있다는 경찰관도 있었다.

과거에는 남성들 간의 폭력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의 폭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20대 후반 순경)

폭력의 당사자들은 성별로는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만,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볼 때 20

대 가해자가 대략 30%, 30대가 20%, 40대가 40%정도였고, 피해자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이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만 싸움을 벌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약 60%정도의 사건은 두 당사자의 나이 차이가 5-6살이나 그 이하로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였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당사자 간 10살(4번, 5번, 7번, 9번, 15번), 심지어 20살 이상(9번, 17번, 18번)의 나이차이가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폭력범의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피해자와의 나이차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30살을 넘은 가해자는 단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차가 5살 이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20대의 폭력범들은 주로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싸웠다. 가해자가 20대였던 사건(1번, 2번, 3번, 8번, 16번)에서는 피해자도 동갑이거나 다섯 살 이하의 차이를 가진 거의 동년배였다.

가해자는 대체적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연상인 경우가 약 2/3선에 달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연령에 의한 사회적 권력 관계가 폭력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버릇없는 대학후배를 때린 20대 대학선배(1번), 흡연중인 비행청소년을 훈계하려다 폭력을 행사한 30대(7번), 같이 술 먹다 연령 차이에 대한 대접을 안 하다고 6살 어린 후배를 때린 40대 남자(13번), 젊은이가 운전하는 차가 자신을 치려고 했다고 난동을 부린 50대(17번), 대학생이 입주한 원룸의 창이 깨진 것을 배상 못해 준다고 행패를 부린 60대 집주인(19번) 사례 등은 자신들의 나이가 많지 않았다면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다. 주의할 점은 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절반정도의 사례가 양 당사자가 모두 폭력피의자인 쌍방폭력사건 혹은 '쌍피사건'이었다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주된 가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간주했으므로 이 같은 해석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폭력 범죄는 어떤 인적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연구결과 폭력 범죄는 대부분 잘 모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가벼운 인적관계를 갖고 있었다. 절반 이상의 경우, 폭력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사건 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이들은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힌 두 사람(2번), 택시를 기다리던

커플과 한 남자(3번), 골목길을 걷던 사람과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사람(4번), 노래방 단속중 경찰관과 노래방 사장친구(5번), 옆자리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두 손님(7번),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가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8번),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과 운전자(9번), 골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근처에 살던 주민(10번), 단란주점의 사장과 손님(18번) 등과 같이 이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인적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관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동네에서 흡연을 하던 청소년과 동네 주민(15번), 술집에 가끔 오는 손님과 사장남편(11번), 집주인과 새로 이사 온 세입자(17번), 술집에서 행패부리는 사람과 말리던 사람으로 나중에 동네 선후배임을 알게 된 경우(19번) 등이 그러한 사례였다. 면접에 응한 경찰관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일선에서 보게 되는 가장 흔한 유형의 폭력이라고 하면 아마도 모르는 사람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인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는 싸우더라도 대부분 화해하고 마는 사건들이고 사건화되는 폭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이겠지요. 또 택시기사 폭력 정도가 빈번한 층에 속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과거에 비했을 때 별 차이 없이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55세 경위, 팀장)

굳이 .. 나누자면 타인간의 음주 시 폭력이 40%, 지인간의 음주 시 폭력이 30%, 가정폭력이 10%, (승객에 의한)택시기사 폭력이 20% 정도로 생각됩니다.(20대 후반 순경)

반면, 주거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모르는 사람들 간의 폭력보다 아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이 좀 더 많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제가 근무하는 관할이 주로 주거지역이다 보니 사건들이 약간 편중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공휴일에는 70-80% 가량으로 가정폭력이 많았습니다...평일의 경우에도 시간대 별로 폭력사건이 나누어집니다. 평일 24시 이전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로 발생하는 단순폭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24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만취가 된 상태기 때문에 첫째, 술값시비, 둘째, 모르는 사람들끼리 발생하는 폭력, 셋째,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택시와 관련된 경우는 주로 요금시비와 부당요금 관련된 내용들입니다.(30대 후반 경장)

사전에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당사자 간 대학 선후배인 경우(1번), 동거

관계(6번), 채권·채무자 관계(12번), 중·고교 동창(14번) 등 다양했는데, 재미있게도 당사자들이 20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즉, 20대의 경우에는 이미 잘 알던 사람과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흔한데, 3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폭력사태를 벌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폭력범들의 나이와 인적관계를 같이 정리하면, 20대의 남자들은 자신들과 나이가 비슷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컨대 친구나 선후배 등과 싸워서 경찰관서에 가게 되는 사례가 많고,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나이대나 인적관계와 관계없이 누구와도 쉽게 싸움을 벌이고 경찰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경찰이 알게 된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써, 30대 이상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료나 친구와 같이 인적관계가 깊은 경우에는 싸우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번 연구에서 관찰한 사건들은 폭력의 방식이나 피해결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가벼운 폭력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다. 우선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 이 넘는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단 세 사례에 불과했고(3번, 13번, 19번) 모두 명이 들거나 피부가 긁힌 정도의 피해를 입는 데 그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피해가 경미했던 것은 무엇보다 가해자들이 사용한 폭력방식이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 또는 발길질을 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한 사례는 각목을 이용한 사례(9번), 불판을 이용한 사례(13번)와 조명 등을 사용한 사례(19번) 등 세 사례뿐이었고 다른 사례들은 모두 육설과 함께 맨몸으로 당사자 간 싸움을 한 사건이었다. 물론 심한 주먹질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3번)도 있었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상해를 입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폭력피해의 양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관이 반드시 형사입건을 해야 하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력죄에 해당되는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한 많은 사건들이 법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비공식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폭력피해자들은 피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신고할 확

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김은경 외, 2009), 경찰단계에서 관찰한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은 실제 대부분의 폭력사건들은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경미한 폭력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 3. 왜 싸우는가?: 음주와 시빗거리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폭력사건은 피해자의 빌미제공에 의한 우발적인 감정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은 폭력당사자간 인적관계와 음주여부를 통해 추론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폭력은 사건 이전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가벼운 인간관계 밖에 없는 사이에서 발생했다. 즉 지구대에서 발견되는 폭력사건은 지인들간의 묵은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들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조우하여 우발적인 이유로 인해 폭력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폭력사건이 우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더 중요한 단서는 당사자들의 음주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동거녀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폭력사건의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그중 절반은 매우 술에 취해 뒤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나머지 가해자들도 통상 소주 1병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였으므로, 별거 아닌 사소한 다툼에도 평상시보다 더 쉽게 흥분하게 된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들 역시 음주를 한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가 폭력당시에 만취했거나 상당히 취한 사례가 5사례, 어느 정도 취한 경우가 6사례나 되어, 60%이상의 사례에서 피해자가 주취상태에 있었다. 반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는 6사례에 불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다수와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는 웃어넘길 사소한 시빗거리가 폭력의 원인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술이 폭력사건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심층면접에서 경찰관들도 폭력사건이 대체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

라는데 동의하였다.

제가 근무하면서 접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타인간의 폭력 사건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정이 격해 지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별 문제 없을 것들도 술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00지구대의 특성상 술집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러한 술집의 주고객이 20대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다거나, 서로 지나가다가 어깨가 살짝 접촉하는 등 사소한 감정싸움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싸움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40대 후반 경위)

대부분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또는 지인들 간에 발생한 폭력입니다. 양쪽 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되어 단순히 눈만 마주쳐도 폭력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쪽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6세 경장)

우리 지구대 관할이 술집 등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관내 지역별로 보면, 먹자골목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대 후반 순경)

이상의 관찰내용과 면접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폭력의 원인으로 술을 마셨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폭력사건의 발단이 된 것일까?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한 사건도 있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도발 및 유도로 볼 수 있는 일 혹은 부정적 자극(Agnew, 1992)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의 빌미 제공행위는 크게 i) 장유유서(長幼有序)로 정의되는 나이의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 ii)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공중도덕의 위반, iii) 자신의 영역침해, iv) 기타 넓은 의미의 질서와 정의에 위반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몇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손아래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것이 원인이 된 경우이다. 이런 사례로는 대학 선후배간 같이 음주를 하다 버릇없다고 후배를 때린 사건(1번), 동네 선후배간 연령문제로 다투다 싸운 사건(13

번), 같이 술 먹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모욕했다고 싸운 사건(14번), 흡연하는 청소년을 훈계했는데 버릇없이 대든다고 때린 사건(15번) 등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예로, 대학 선후배 사이의 위계질서 위반이 폭력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도00(B, 23세, 00대학생)은 2010. 7. 13, 02:35경 같은 과 동문 5명(남자선배 2명, 여자선배 2명, 동기생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무례한 언사를 하였다. 이에 선배들이 똑바로 행동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도00이 말을 듣지 않자, 남자선배 중에 한명인 가해자 00이 주먹으로 예의 없이 행동한 피해자 도00의 눈을 한차례 가격한 사건이다. 피해자 도00도 역시 주먹으로 선배를 한차례 반격했고, 이에 다시 가해자 A가 주먹으로 후배 도00을 한차례 더 가격했다고 한다.

피해자 후배: 맞아서... 너무 아파서... 눈이 터질 거 같아요

경찰관: 맞긴 맞았어? 싸웠어? 싸웠냐고?

피해자: 선배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싸웠어요. 제가 맞았어요.

눈이 터질 듯이 아파요

가해자 선배: 저 새끼가 싸가지 없어서 내가 좀 때렸어요.

피해자 후배: 고소해 주세요. 아니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봅시다.(1번 사건)

또 다른 예로,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한 명이 다른 친구의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되어 싸움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원래 동창사이로 올 초에 모 전자회사 냉장고 설치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월급과 10만 원 정도의 채무관계로 서로 말싸움과 상대방을 손으로 밀치는 정도의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A가 피해자의 할아버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어떠한 내용인지는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A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하여 폭력으로 비화되었다.

피해자: 저놈이 뭔데, 나를 때려, 왜 나를 때리냐고... 엉엉

경찰관1: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좋게 화해 하는 것이 어떠니?

피해자: 아니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맞은 게 분한 게 아니라, 우리..우리 돌아가신 불쌍한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모

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 그게 분해서 저놈 용서할 수가 없어요.(14번 사건)

또 다른 예로, 30대의 가해자가 10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흡연)를 훈계하려다가 반발을 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강00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00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었는데, 평소 그 골목에서 비행행위(흡연 및 고스톱 등)를 일삼아오던 10대 청소년들(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욕설과 훈계를 몇 차례 한 바 있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가해자 강00은 친구 장00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들이 또다시 00초등학교 인근에서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듯한 기세로 달려가자 피해자 서00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으로, 이후 가해자 장00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위협을 하였으며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한다.

가해자 장00: 어린놈들이 나이 많은 형들이 말을 하면 고분고분하게 들어가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이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집에서도 이따위로 엄마 아빠한테 대하나?

한편, 피해자 가운데 특히 서00은 나이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피해자들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자신을 때린 가해자들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서00: 나이만 많으면 다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큰소리야. 아저씨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말을 해보세요.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밀쳤잖아. 또 방금도 때렸고, 아니야?(15번 사건)

폭력행사의 빌미제공 행위 중 두 번째 유형은 피해자의 공중도덕 위반행위였다. 특히 차량운행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차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고 때린 사건(4번),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신을 칠 뻔 했다고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9번), 단지 차량이 역주행 했다고 다짜고짜 훈계에 폭행을 한 사건(16번)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한잔 한 후 귀가 중에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김OO의 차량을 발견하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차량의 백미러를 밀치고,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16번 사건). 가해자 권OO가 피해자 김OO에게 관한 시비를 붙인 것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도 낮아 보이고 덩치도 작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관: (현장 도착 후 의경으로부터 대강의 상황을 전해들은 뒤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감) 어디 다친데 없어요?

피해자: 모르겠어요. 머리가 멍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피해자: 제가 편의점에 납품을 하고 차를 몰고 길을 나가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차를 막고는 백미러를 치고, 저를 끌어내려서 뺨도 때리고 목살잡고 이마로 들이받고 그랬습니다.

가해자: 이 사람아 내가 이유도 없이 그랬다고? 당신이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 하니까 그런거 아냐. 그리고 나 차로 들이받으려고 안했어?(16번 사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자동차가 (무단횡단 한)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9번 사건). 가해자 송OO은 사건 당일인 2010년 7월 21일 새벽00시 40분 정도에 00역 1번 출구 앞의 횡단보도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 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나OO의 차가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신을 치어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피해자 나OO의 차를 정차시킨 후에 시비를 건 후 나OO의 차(삼성 르노 3000cc)의 왼쪽 앞부분을 발로 걷어차 부분적으로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피해자 나OO수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OO는 자신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의자 송OO이 신호도 아닌데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좀 비켜달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뺨히 쳐다보다가 다가오면서 시비를 붙이고 차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고 폭행을 했다고 한다.

가해자: 저 노무새끼들은 콩밥을 먹어야돼 .. 내가 무단횡단 좀 했다고 말이야 ... 사람을 차로 쳐서 죽일라고 그래 ... 너희 같은 놈들은 죽어야 돼 .." (9번 사건)

또 다른 예로는 단지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최00(회사원)은 사건 당일인 2010년 7월 15일 저녁 11시 53분경 건대입구역 뒤쪽 먹자골목에서 거래처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는 소주를 한 병반 정도 마신 상태라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기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오자 자신의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피의자 강00(무직)일행들이 “차가 빵빵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최00차의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가게하고 갑자기 차문을 열어 뒷자리에 탑승을 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최00과 가해자 강00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자 최00이 112에 신고하였다.(4번 사건)

폭력의 빌미가 된 행위의 세 번째 유형은 사생활과 공간적 영역을 침해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길가다 어깨를 부딪치고 욕설을 했다고 시비가 된 사건(2번), 택시를 기다리는 여자 친구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보복을 한 사건(3번), 국밥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괜히 동석을 요구하며 시비를 건다고 때린 사건(7번), 자신의 집 앞에서 전화를 시끄럽게 한다고 시비가 붙어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10번) 등을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예로, 한 여름 밤 아무 이유 없이 여자 친구의 뺨을 때린 사람을 보복폭행사건이 있었다. 2010년 7월 15일 새벽 김00(여)은 남자친구 최00과 함께 음주 후 00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노상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00(자영업)가 다가오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김00(여)의 뺨을 한차례 가격하였다고 한다. 이에 김00가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남자 친구인 피의자 최00가 여자 친구를 먼저 택시에 태운 후, 나가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한 나00을 심하게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여자친구 김00: (자신을 때린 나00을 지칭하며)..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데 정말..어이없어서 ...

가해자 겸 남자친구 최00: 경찰관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남자시잖아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는데 그걸 참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가해자 나00: 저도 남자고 ... 제가 먼저 잘못을 했고 ... 이런 일로 저도 경찰서 불러 다니고 싶지 않구요 ... 조용히 합의 봅시다.(3번 사건)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0년 7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00대학교 뒤편 먹자골목에서 친구들 3명이 음주 후 거리를 걷던 중에, 마주오던 외국인 000(영어강사)과 어깨가 살짝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싸움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때 이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욕을 하여, A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를 모르던 친구 B와 C는 A가 따라오지 않자 뒤돌아보니, 외국인과 친구A가 서로 뒤엉켜 있었다고 한다. 이들도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돕기 위해 외국인 000을 둘러싸고 4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외국인 000도 또한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또 비슷한 예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에 짜증을 낸 것이 발단이 되어 싸움으로 변진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김00(34세)은 사건 당일인 2010년 7월 21일 저녁 11시 40분쯤 음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00동 00골목을 들어서던 중 피해자 이00(24세)이 자신의 집 앞에서 목소리 크게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는 우리 집 앞이고, 집 주변에서 이렇게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전화통화를 하면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전화통화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이00이 “당신이 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로 시비가 시작되었고, 결국 서로간의 폭행으로 발전한 것이다.(10번 사건).

폭력의 빌미가 된 행위의 마지막 유형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동거녀가 계속 술을 먹고 다닌다고 폭행한 사건(6번), 빚 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 다닌 채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폭행한 사건(12번), 술값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술집주인과 웨이터를 폭행한 사건(18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술은 마시고 만취한 가해자 00은 자신이 마신 술값이 대략 20-3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술집주인(피해자)이 제시하는 술값이 70여만 원이라는 것에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을 놀았고 양주 발렌타인 12년산을 2병 마셨기 때문에 70여만 원이라는 술값은 잘못 된 것(바가지)이라고 주장하였다.

가해자: 야 나 씨발 이게 말이 돼 내가 양주 두병 먹었어, 근데 70만원이라니 이거 바가지에 사기야!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그 친구가 19:40경부터 노래빠에 와서 약 4시간 동안 놀았으며, 발렌타인 17년산을 3병 마셨고,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룸안에서 잠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술값이 당연히 70만원 더 되지 양주 2병만 해도 500이 저놈이 미쳤지 17년산 두병을 먹어 놓고는 12년산이라고 우기네! 그래서 내가 거기 테이블도 안 치우고 그대로 두었으니까 경찰관들 가서 사진 찍어둬...야 이 미친놈아 내가 너 만한 아들이 있어 어딜 감히 손을 대 너 같은 놈은 그냥 콩밥 먹어야 돼.(18번 사건)

이상에서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유형 4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행위 중 형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폭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이런 빌미제공은 범죄행위를 유발한 행위(provocation)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단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유유서 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공중도덕 위반, 자신의 영역침해, 기타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 생기는 부정적 자극(Agnew, 1992)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들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작은 시빗거리에도 폭력적 대응이 필요한 것처럼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소위 피해자들도 이런 빌미를 일회 제공함에 그치지 않고 시비가 폭력으로 발전하도록 계속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즉,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난 후 가해자가 바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지만, 약 절반 정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시비를 걸자 피해자들도 같이 시비조로 응대하고 결국 상호간에 폭행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 4. 경찰에 알려지게 되는 과정과 이유

폭력이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1/3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경 외, 2009).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폭력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 것일까?

이번 연구결과 경찰관들은 주로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폭력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건 중 신고를 통해 접한 사건이 17건이었고, 나머지 2건은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9사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신원미상의 주민이나 지나던 택시기사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의한 신고사례가 5건이었으며, 가해자가 신고한 경우도 3건에 달했다. 이런 신고자 비율이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3자나 가해자의 신고비율이 실제로 이렇게 높다고 하면 현행 범죄피해조사에서 피해자 자신이 신고여부만을 묻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신고의 방식은 주로 112 범죄 신고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된 모든 사건에서 112신고가 이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화로든 국번 없이 112번만 누르면 바로 해당지역 112범죄 신고센터(혹은 지령실)에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 방식이 선호되는 것 같았다. 다른 방법으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의 일반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신고를 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해당 파출소나 지구대의 위치나 전화번호도 모르고 번거롭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최근 파출소와 지구대의 관할지역이 자주 변경되고 전화번호도 자주 바뀌어 직접 전화신고를 하려고 해도 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실제로 연구진이 근래 관할이 변경된 몇몇 파출소와 지구대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에도 114 전화번호 안내에서도 예전 전화번호를 알려줘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경찰관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요즘 누가 파출소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냥 112에 신고하면 그만인데,  
요즘에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50대 경감, 파출소장)

시민들은 왜 폭력사건을 신고했을까? 신고자가 피해자, 제3자, 가해자인지에 따라 이유가 다를 것이다. 먼저 피해자의 경우 경찰관과의 대화내용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주로 폭행피해를 중단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9건의 사례 중에서 원룸 집주인에게 욕설피해를 당하는 수준의 가벼운 피해를 당한 사례(17번)와 가해자가 도망친 사례(7번)를 제외한 7건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가해자들과는 달리 대체로 침착하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설명하고 처벌요구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 (다른 피해자에게) 야 너 휴대폰 깨진 건 어떡할 거야? 억울하지도 않아?..  
(경찰관에게) 경찰 아저씨 나 먹살 잡고 우리 부모님 욕 까지 듣고 발길질 당하고 억울해요. 처벌해주세요. 꼭 처벌해야 해요.(15번 사건)

피해자: 내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저거 처리해줘. 저런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를 다 뜯어 고쳐야해.. 다시는 못 그러게 정신을 썩 빼 놓아야해.. 내가 우리종업원두 불쌍하고 내 팔자가 불쌍해서라도 저걸 기만 안두지 그럼 안두지(18번 사건)

다만 이중에서 4건에서는 나중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가해자가 잘못을 빌거나(15번), 자신까지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4번), 또는 경찰이나 타인들의 중재 등(17번, 18번)으로 처벌요구를 철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애초의 태도는 분명히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자신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화 하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실제 피해자가 신고한 총 9건 중 단 3건만이 쌍방폭행으로, 나머지 6건은 모두 가해자의 단독폭행으로 다뤄졌다.

신원미상의 주민 등이 신고한 다섯 사례에서 이들의 신고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만, 이들이 폭력사건을 목격하고 더 이상의 폭력피해가 중단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전화기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해자가 신고를 한 이유이다. 경찰관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해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폭행사건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자수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류가 모호하기 때문에

생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신고한 총 3건 중 2건은 두 상대방이 모두 처벌되는 소위 쌍방폭행 사건으로서 여기서는 가해자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였다(10번, 12번). 즉 가해자는 순수한 의미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피해가 더 컸다고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사례에서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운전자를 폭행하고도 애초에 운전자가 자신을 차로 치려고 했다고 신고한 경우(9번)가 있었으나 이 경우도 자신을 교통사고 미수범 정도의 피해자로 착각한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5. 경찰관서에서의 폭행 당사자들의 태도와 대응

폭력행위의 당사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지는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이는 태도를 살펴보면 폭력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술을 덜 마신 탓에 다소 흥분했더라도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가해자들은 꽤 취해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과격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총 19사건 중 적어도 16건 정도의 사건에서 흥분하여 피해자와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가해자들은 이들이 이렇게 위협한 태도를 보인 기본적인 원인이 음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 한명을 빼고는 모든 가해자들이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전형적인 예를 들면, 만취상태에서 여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의 사례에서, 가해자는 파출소 도착 당시부터 몸을 지탱하지도 못한 상태로 피해자와 경찰관에 대해서 계속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가해자: 돈 있으면 다녀?, 너네 부모는 너 같은 새끼 낳고 미역국 먹고 챔피언이다. 아이 씨발놈애!  
경찰관: 000씨, 000씨, 그만 좀 해요.

가해자: 아이 씨발 저 좃 같은 새끼 아우 존나 씨발 새끼

경찰관: 시끄러워요 일을 못하겠네.

가해자: 이래서 경찰이 욕먹는 거야! 민주경찰 좃같은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돈이 그렇게 많냐?, 너 강남에서 봐 죽어 너 아주..

경찰관: 야 너 정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가해자: 이게 민주경찰이나? 저 새끼 사과 안하잖아. 아 씨발!(8번 사건)

## 6. 합의한 이유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에 있어 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폭력피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는 법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의 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의 경우, 폭력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나타내면,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찰된 총 19건 중 절반이 넘는 10건의 폭력사건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8건은 비합의, 1건은 분명한 의사표시 없이 종결되었다. 폭력은 당사자에게 신체적·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과반수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합의에 이른 이유는 i) 가해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요청, ii) 피해자 스스로의 불이익 예상, 그리고 iii) 제3자 또는 경찰관의 합의유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었다. 물론, 이 중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2-3가지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여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 이르는 세 가지 경우 중,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주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 담배를 피우며 모여 있는 비행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30대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례에서, 가해자의 적극적인 사과로 인해 합의가 이뤄졌다.

피의자 장00: 그래 형이 잘못했다. 응? 니들도 나이 먹어보면 이런 일 겪을 수 있어. 형이 잘못했다.

피해자 서00: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미안한 태도를 보여달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그럼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예?!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피의자 장00: (마지못해 서00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자 이제 됐냐?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나이 먹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  
이제 된 거 아니냐. 좋게 좋게 끝내자. 나가면 형이 술 사줄게.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음.

가해자 장00: (거의 울듯하며) 이런 씨발.. 내가 저런 새끼들한테 이게 뭔 짓이야. 그냥 갔어야 했어. 그냥 갔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다른 피해자 김00가 친구의 휴대폰 액정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하여 다른 가해자 강00이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합의하게 되었다.(15번 사건)

또한 비록 쌍방폭행으로 다뤄지는 사건일 경우라도, 폭력의 책임이 주로 가해자 쪽에 있을 때,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과하여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예컨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피해자의 차가 시끄럽다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폭행을 행사한 사례에서, 가해자 강00는 처음에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고 횡설수설하면서 고자세로 피의자를 비난하였으나, 경찰관이 나중에 지구대로 연행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지구대로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처리하려고 하였다.

가해자: 아고 ... 뭘 이런 일 가지고 사건화를 해요 ... 그냥 난 사과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사과만 받으면 돼요 ... 전 사건 같은거 하고 싶은 생각 없고 .... 그냥 ... 사과만 받으면 되는 데 참 . 야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하고 끝낼 게 ..

(피해자 최00이 끝까지 사건화를 요구하자)

그래 알았다 ... 내가 잘못했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참아야지 ... 너도 기분 풀고 ... 미안해 알았지 ... 이봐, 젊음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치 ..(4번 사건)

또 다른 예로, 길거리에서 전화를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다가 시비가 되어 10살 정도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 김00은 나이가 34살로서 사건화 될 경우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

려고 하였다. 특히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되어 지구대로 온 상태여서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해자: (주된 피해자 이00에게 손을 내밀고) 동생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고 가자. 응?  
 (경찰관에게) 합의를 해야지요. 근데 저 사람이 잘 할려고 할래나 참 ...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냥 감성적으로 자꾸 저러니깐 참. 애고 그때 그냥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 왜 내가 그냥 넘어가지고 애고 ..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왔구요. 애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는데.. 참.. 빨리 종결짓고 집에 부모님 모시고 가자지요. 부모님께 죄송스러워 죽겠네요 ...(10번 사건)

많은 폭력사건에서 합의가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가해자의 사과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피해자 자신이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피해자들도 최소한 방어차원에서라도 약간의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위 “쌍방폭행”으로 본인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이때 피해자 자신에 대한 법적 불이익 예상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상쇄시키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시키고 차를 타고가다 어이없이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최00은 처음에 강력한 사건화를 원하였지만, 비록 방어목적이라도 자신도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서 자신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결국 합의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뭐라구요? 이게 쌍방이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쌍방이에요 ... 나 참 어이 없구만 ...  
 경찰관: 이봐요 최00씨 우리나라 법은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 단지 결과만 놓고 본단 말이에요 ... 지금 문제는 저 강00씨(가해자)도 자신이 최00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 그니깐 쌍방이고 사건화를 하면 둘다 경찰서 형사계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아시겠어요 ..  
 피해자: 머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 참 어이없네... 참나  
 경찰관: 저도 지금 최00씨 심정 이해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한 대라도 때렸으면 무조건 쌍방이에요 ... 아시겠어요 ... 그니깐 잘 생각하고 하세요  
 피해자: 그럼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다시 경찰서 가서 다시 조사받아야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경찰관: 사건화하면 조금 있다가 서류 꾸미러 경찰서 가셔야 되죠.

피해자: 참 미치겠네! ..(4번 사건)

비슷한 예로, 골목길에서 전화를 시끄럽게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피해자 이00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무척 억울해 하면서도, 쌍방폭행이 되면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남고 취업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이봐요 ... 김00씨(가해자)... 진짜 남자대 남자로 대화합시다 정말로 제가 때렸어요? 전 정말 한 대도 안 때렸거든요 ... 그것만 인정하면 저 그냥 여기서 합의하고 조용히 갈게요. 저 정말 억울해서 그래요 ... 전 정말 안 때렸는데 자꾸 제가 때렸다고 하니깐 저 ... 미쳐버리겠다구요 ... 솔직히 제가 언제 때렸어요 ... 전 절대 안 때렸거든요 ...”  
(경찰관에게) 저도 아직 학생이고, 벌금에 폭력전과 만들어서 저한테 좋을 게 없다는거 잘 알거든요 ...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로 발목 잡히면 억울하잖아요 ..(10번 사건)

같은 맥락에서 동창들끼리 금전문제와 할아버지 모욕문제로 싸운 사건에서도 처음에 주된 피해자는 할아버지에 대한 무례한 언사로 흥분하여 적극 처벌의 의사를 밝혔으나, 나중에 경찰관이 정식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하게 되었다.

경찰관: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좋게 화해하는 것이 어때니?

주된 피해자: 아니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맞은 게 분한 게 아니라, 우리 우리 돌아가신 불쌍한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 그게 분해서 저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때 친구인 C가 경찰관을 계속 욕하고 비아냥거리자.).

경찰관: 이놈의 자식들 지금 뭐하는 거야... 젊은 대학생들이라고 어떻게든 좋게 해줄려고 내가 계속 화해를 시켜줘도 서로 자기 생각들 밖에 안하고(주된 피해자를 향해), 그리고 너는 또 뭐하는 놈인데 여기서 간죽거리(C를 향해 말함), 너희 같은 놈들은 정말 한번 혼내줘야 해, 이놈들 사건보고서 내가 작성할 거야, 김순경 나와 내가 작성하게... 아주 똑같은 놈들이구만,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이 모양이야. 어떻게든 좋게 처리해 줄려고 했더니, 저놈(C)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구먼.

주된 피해자: (이에 주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경찰관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벌의사 없습니다.

경찰관: 됐어, 너희 같은 놈들은 한번 혼이 나줘야 해, 그래야 정신 차려, 어른들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 해줬는데... 어디 젊은 놈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주된 피해자 : (또 다시 울먹이며) 정말 잘 못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14번 사건)

많은 폭력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세 번째 이유는 제3자들이 합의를 유도하는 중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재자들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거나, 해당 사건의 담당경찰관들이었다. 이들은 당사자들에게 사건을 공식화했을 때 생길 불이익을 상기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등 사건의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노래빠’에서 술값시비로 술 취한 고객에게 행패를 당했던 술집 여사장도 자칭 남편이라는 중재인의 만류로 결국 합의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내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저거 처리해줘.

저런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를 다 뜯어 고쳐야해”

다시는 못 그러게 정신을 쏙 빼 놓아야해”

중재자(남편으로 자칭한): (술값이 계산된 카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동네장사를 하면서 이러면 안 좋다.

동네에서 물장사하려면 이런 거로 감정 싸움하면 안 돼

가해자: (어느 정도 술이 깨면서, 자신이 파출소에서 사건화가 되는 것을 느끼고) 죄송합니다..(18번 사건)

마찬가지로, 골목길에서 전화를 시끄럽게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피해자 이00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무척 억울해 하면서 처벌의사를 굽히지 않을 때 그의 대학 학과선배와 동기들이 사건을 공식처리 할 경우 피해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용하였다.

피해자의 과 선배: 00아 ... 그냥 좋게 끝내라 ...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가자 응 ...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깐 선배 말 들어 응

...

피해자의 동기: 그래 00아 ... 그냥 가자 머 저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니 ...그냥 액땀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자 응 ... 그게 낫겠다 .. 너가 한 대도 안 때리고 맞는 거 우리가 다 봤으니깐 너무 억울해 하지 말고 응 ...(10번 사건)

같은 맥락에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차를 타고가다 어이없이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최00에게도 담당경찰관이 공식처리 될 경우 생길 불이익을 상기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였다. 이런 경우 경찰관은 단순히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중재를 유도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경찰관: 사건화 하면, 서로 피곤해 지는 거예요 ... 최00씨 그렇게 심한 외상도 없고 단지 술 먹고 생긴 시반데 ... 머 하러 사건화 해서 벌금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왜 그래요 ...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좋게 넘기면 되지 ... 이런 사건일수록 젊은 사람이 참는 게 좋아요 ... 이런 단순 시비사건으로 사건화 하면 우리나라 전과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겠네 정말 ...(4번 사건)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모두 당사자중 일부가 강력하게 정식 사건화를 요구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통상 사건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피해자이거나, 쌍방폭행의 경우라도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i)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ii) 감정적 양금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가 굳은 경우, iii) 경찰관 자신이 피해를 당해 범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법적처리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길가에서 우연히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외국인 영어강사와 싸움을 벌인 대학생들은, 상대방 외국인이 합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배상을 받지 못했이라며 강력하게 사건화를 요구하여, 결국 그 사건은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대학생 피해자: (자신의 깨진 스마트폰을 가리키며)아 씨발, 이게 얼마짜린데요, 저 새끼한테 물어내라고 하세요 ... 저새끼가 이렇게 만든 건데 ... 나 이거 돈 못 받아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 집에 안가 ... 씨발 ... 이게 얼마짜린데 .  
오 그래, 저 양키세끼 뵈줄라고? 그냥 넘어 갈라고 하는구만 ... 오 그래 ... 함 해봐 ... 씨발 내가 청와대 민원 넣고 해서 너희들 씨발 다 죽어버릴 라니깐  
경찰관: (연구진에게) 보세요, 박사님들 저 미친 녀름들 이거 사건화 안하면 청와대 민원 넣겠다고

지랄하잖아요. 만약 그럼 저희 몇 달 동안 엄청 고생해요 ... 그래봤자 쌍방사건이고 한 쪽에서 사건화를 원하기도 하고 하니깐 .... 머 우리야 그냥 경찰서 형사과로 연락해서 이첩해버리면 되니깐 ....(2번 사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없던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폭행에 대한 합의를 해주겠다고 협상을 하다 폭행 가해자가 응하지 않자 정식사건화를 요구하여 결국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가 되었다.

경찰관: (연구진이 신고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보험처리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나갈 거 같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해자한테 맞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일부러 신고 한거야. 그러니까 사고난거 하고 본인 폭행당한 거하고 해서 서로 통치자는 거지. 그놈이 좀 악은 놈인 거 같아.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또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험처리 해도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잖아.

현장 출동 경찰관: (연구진과의 대화를 듣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으니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자고 권유했다고 하더라(8번 사건)

유사한 사례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 횡단하던 가해자가 시비를 걸고 차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나00는 자신이 별로 다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폭행에 대해서는 별로 사건화를 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가해자가 배상의사를 보이지 않자 파손된 차량수리비는 받아야겠다고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저도 남자고요 ... 뭐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 ... 치료비 달라 말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 단지 저는 제 차 파손된 거에 대해서 수리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든요 ... 이 차 오늘 공업사에서 찾아온 건데 이렇게 되니깐 정말

경찰관: 일편은 ...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차가 파손이 되었는데 ... 누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어요 ... 그리고 가해자 역시 경찰서 가서 정식절차 받기를 원하고 ... 또한 현장의 모든 목격자들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왔는데도 시비 걸고 폭행하잖아요 ..(9번 사건)

이와 유사한 경우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채권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채무자이자 피해자는 폭행사건을 기회로 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으

려고 시도하다가 채권자의 반응이 없자 정식사건 처리를 요구하였다.

피해자: 나는 절대로 합의 못한다 ...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나 인간말종 만들지 않았느냐 ... 난 절대로 합의 안한다 ... 알아서 해라 .. 그때 때릴 때는 신나게 나 잘 때렸잖아 ... 그치 그럼 그에 대한 대가도 치루어야지 안 그래 ... 이제 와서 합의해 달라는 이유가 먼데 ... 난 정말 모르겠다 ... 난 절대 그렇게 못한 다 ..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나 맞은 거 하고 그 1000만원하고 없는 걸로 합시다. 사실 나도 값을 만큼 갠잖아. 원금 2천에 이자만 천만 원 줬잖아...  
(이때 가해자 정00 뒤도 돌아보지 않자 피해자는 정식 사건화를 요구함)(12번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상대방이 반드시 법적 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폭력사건이 진행되면서 생긴 감정적 앙금이 지구대에 와서도 가라앉지 않거나, 음주로 인해 정식사건화를 할 때 생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 주로 나타났다. 쌍방폭행의 경우 당사자 모두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두 사람이 자진해서 순찰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탄 경우도 있었다. 경찰관의 출동이 늦어져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폭력 행사와 흥분 상태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였음에도 자신들이 먼저 차에 탄 것으로 보아 명백히 처벌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13번 사건)

유사한 사례로 무단횡단을 하다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가해자 송00은 자신이 무단횡단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차로 치어 죽이려고 했다며 강경하게 비난하면서 이런 행위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정식사건화를 요구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주된 가해자: 구속시켜야 돼 ... 저런 건방진 새끼들은 ... 유치장 가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 어디 감히 ... 전 절대 안 봐줍니다 ... 구속이야 ... 구속 ...니노무 새끼들이 인생을 알아 ... 저놈들은 최소한 3일 이상을 구류로 살아야 돼 왜 선량한 사람을 죽일라 그래 ... 00서로 보내 ... 유치장으로 보내야 된다니깐 ...어디 감히 ... 무단횡단 좀 했다고 ... 사람을 처 죽일라고 그래 ... 어디 감히 ... 난 절대 안봐줘 ... 사람에게 욕지거리 하고 말이야... 니들은 구속이야 구속 ... 난 절대 안봐줘 ... 나도 유치장에서 살테니깐 니네들도 살아야 돼 .. 저 차수리비 기껏해야 10만원이

야 10만원 ... 10만원 내가 줄게 ... 수리비 준다니깐 .하지만 난 니들 절대 용서 못해 . 어디 감히..(9번 사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식사건화 되는 세 번째 경우는 경찰관이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였다. 경찰관들은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욕설과 비아냥거림에 시달리면서 어느 정도의 공무집행 방해는 참아 넘기려는 경향도 있지만, 지나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지나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집단 폭행 한 가해자 중 한명은 사건현장(술집)에서 지구대로 이송을 피하기 위해 출동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고 몸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광분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사건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지구대에서 한 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큰소리로 자신들의 주장만 늘어놓아 무전을 받을 수 없는 등 지구대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폭행죄에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정식사건화 하였다.

가해자: 경찰관들한테 서운해요 ... 도움이 필요해서 신고한 건데 ... 오자마자 수갑부터 채우고 ... 뭘 어쩌라는 건지 ... 억울한 건 우린데.. 사람이 억울하면요 ... 뭐든지 다한다고요 ... 아 세요 ... 뭐든지 한다고요 그래서 때렸어요 ... 거기 손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수갑을 채워요 ... 경찰관아저씨가 나한테 수갑을 왜 채워요 ...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

경찰관: 저희가 누구 편을 들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니깐 그냥 앉아 계세요. 아시겠어요 ! 경찰관이 누구 편을 들어요. 그런 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 자꾸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라고 했죠 ... 왜 이러시는 거예요.자꾸 .... 당신들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해.. 자꾸 신고 떨어지고 있는데 ... 다른 일 못해서 더 큰 사고 나면 당신들이 책임질거야 응!

다른 경찰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공집방(공무집행방해)까지 다 처리해(12번 사건)

유사한 사례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무전취식을 하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순찰차에 연행되는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가해자의 지나친 언행과 폭력으로 즉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처리를 하였다.

가해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기 시작함)  
경찰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가해자: 니가 뭔데 담배도 못태우게 해. 씨발. 나 담배 피울거야.  
경찰관: 뭐? 씨발 경찰한테 막 욕해도 되는 거야? 어디서 욕지거리야.  
가해자: 그래 씨발놈아. 나는 담배 피울거다. 개새끼야.  
경찰관: 아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조수석에서 등을 돌려앉아 담뱃불 붙이는 행동을 저지함.)  
가해자: (계속해서 담뱃불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  
경찰관: (담배를 낚아채서 버림)  
가해자: 이 씨발놈이(다시 담배를 꺼냄)  
경찰관: 이 사람이 정말 담배피우지 말라니까.  
가해자: 자꾸 나한테 반말할거야? 경찰관이.  
경찰관: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지. 어? 빨리 담배 집어넣어.  
가해자: (계속 담뱃불 붙이기를 시도)  
경찰관: (두 번째 담배도 낚아채서 버림)  
가해자: 방금 나 쳤어? 이 씨발놈이.  
경찰관: 내가 언제 쳤어.. 그리고 자꾸 욕할 거야?  
가해자: 방금 나 쳤잖아. 나 안 참아. 이 개새끼를..  
경찰관: 내가 언제 당신 쳤다고 그래?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뺏은 것 뿐이지.  
가해자: 이 씨발(경찰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침)  
경찰관: 아 이씨발놈이. 경찰관을 폭행해?  
(뒤돌아서 가해자의 우측 뺨과 귀 위쪽을 손바닥으로 한 두 차례 가격함)  
가해자: 아 방금 나 쳤어. 그대 경찰이 사람을 친다 이거지. 이 개새끼야..  
(벌떡 일어서서 경찰관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함. 이 과정에서 관찰자와 피해자가 강력히 저지하였으나 가해자가 순식간에 가격을 하였음.)  
경찰관: (지구대에 도착한 후)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다들 보셨지요. 이자식이 경찰관을 폭행한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으니 너는 오늘 잘 걸렸다. 오냐 ... 때릴 때는 좋았지 ... 하지만 보자 이놈아 ...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잘 알게 해주게 자식아 ..(11번 사건)

하지만, 경찰관들이 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사건화 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폭력범들이 관찰자가 듣기 거부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심지어 밀치는 등 가벼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보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가해자를 만취상태에서

폭행하여 지구대에 연행된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와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음에도 경찰관들은 처벌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배를 권하면서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경찰관: (가해자가 계속 욕하자) 시끄러워요 일을 못하겠네.

가해자: 이래서 경찰이 욕먹는거야! 민주경찰 좇같은..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돈이 그렇게 많냐?

너 강남에서 봐 죽어 너 아주

경찰관: 야 너 정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가해자: 아 씨발 이게 민주경찰이나? 저 새끼 사과 안하잖아. 아 씨발

경찰관: 박00씨 담배 피워요? 잠깐 나갑시다.

다른 경찰관: 야 우리가 무슨 죄냐? 왜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가해자: 사과 해야지 사과를 안하잖아 다 씨발

경찰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 가면 더 자세하게 진술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자세히 해

가해자: 씨발 다 한때야 한때

관찰자: 저 정도의 난동을 공집방(공무집행방해) 처리 안 하십니까?

경찰관: 저 정도면 양호 한 거예요. 저런 걸로 처리하면 다 처리해야지. 내일 술 깨고 나면 다 후회 할 걸 뭐 (8번 사건)

## 7. 경찰의 처리방식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사건이 폭력사건으로 공식화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이 정식으로 폭력사건으로 처리되려면, 먼저 i) 경찰관이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ii) 일어난 일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폭력행위로 인식하고, iii)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폭력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계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한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의 일선 경찰관들은 거의 몇 건의 폭력사건을 접하였지만, 이 중 소수의 사건만을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은 사건화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매우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관들이 신고 받거나 인지한 폭력사건을 공식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i)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발견되지 않는 경우, ii) 가해자가 도주한 상태이

고 피해자도 명확하게 처벌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iii) 신고된 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공식처리 사례는 마지막 합의의 사례,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소위 형법상 “처벌불원의 의사”를 나타내어 더 이상 공식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들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신고 받은 사건이 공식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막상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장난으로 신고했거나, 폭력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했는데 두 당사자가 모두 도망쳤거나, 폭력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를 했으나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모두 사라진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형사사건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럴 때 경찰관들은 근무일지 사건의 조치결과 문항에 “이미 해산” 또는 “불발견”으로 표시한다. 실제로 4개 파출소와 지구대의 근무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경우가 전체 폭력신고사건의 대략 1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정식처리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 폭력의 가해자는 현장에 없고 피해자는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이다. 이번 관찰연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처벌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파출소로 돌아왔다 (7번 사건).

경찰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잘 모르니 함께 주변을 확인해 봅시다.

피해자: (술에 취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어떻게. (국밥집 사장에게) 알잖아, 나 그냥 맞은 거? 그 사람 몰라?(7번 사건)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폭력범을 검거해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관은 폭력사건이 발생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소위 “폭력사건 발생보고”라는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형사계로 서류를 보내는 등 공식처리를 한다고 한다. 이상의 경우들은 경찰관들이 가해자를 직접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례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도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관들이 폭력사건을 정식처리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폭력피해가 정식폭력으로 처리하기에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나타낸 경우였다. 흥미로운 것은 소위 “단순시비”로 개념화되는 경미사건에서는 경찰관들이 나서서 화해를 유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폭력당사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사건화로 인한 행정적 불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관들은 폭력행위로 정식 처리될 경우, 당사자들이 치러야할 법적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해자가 수사과 재판을 받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술 먹고 육하고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전과자의 꼬리표가 붙는 것이 당사자의 장래에 큰 해가 된다고 보고, 특히 싸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일 때 강하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해서 귀가하던 사람의 차를 시끄럽다고 가로막고 시비를 걸어 단순 몸싸움을 벌여 쌍방폭행으로 연행된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당사자들에게 비사건화를 적극 권유하였다.

경찰관: 사건화 하면, 서로 피곤해 지는 거예요 ... 최00씨(34세) 그렇게 심한 외상도 없고 단지 술 먹고 생긴 시빈데 ... 뭐 하러 사건화 해서 벌금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왜 그래요 ...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좋게 넘기면 되지 ... 이런 사건 일수록 젊은 사람이 참는 게 좋아요 ... 이런 단순 시비사건으로 사건화 하면 우리나라 전과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겠네 정말 ...(4번 사건)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전화를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다가 시비가 되어 34살 가해자가 10살 정도 어린 피해자를 심하지 않게 폭행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은 본 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가벼운 시비로서 당사자 서로 간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전혀 없다는 점과 당사자들이 젊다는 점(34세, 24세)을 고려하여 일찌감치 사건의 합의를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찰관: 이봐요 ... 당사자 선생님들 ...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서로 얼굴 붉히고 말하시지 마시구요 ... 좋게 해결해야지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 분들끼리 ... 사건화하면 서로 좋을 게 없어요 ... 벌금나오고 폭력전과 생기고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요 ... 지금은 분에 못 이겨서 이러죠 ... 내일 아침에 술깨고 정신차리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아

세요 ...

정 원하시면 사건화 해드립니다 ...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게 있는데요 ... 사건화 해서 벌금내고 폭력전과 올라가고 하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아직 다들 30대 중반 미만의 젊은 사람들인데 뭐하러 인생을 힘들게 살려고들 그래 ... 보아하니 상처도 약 조금 바르면 되는 정도네 ... 좋게 끝내세요 ... 참 왜들 그러는지. 다. 이 노무 술이 완수야 정말 (10번 사건)

경찰관들이 화해를 유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식으로 폭력을 사건화 하면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탓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최근 KICS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찰관들도 있었다.

경찰관: (화해시키는 데 성공한 후 관찰자에게) 예고 ... 다행이네 ... 저런 단순사비까지 사건화 하면요 ... 저희 절대 일 못해요 ... 저런 일들은 비사건화처리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요 ... 그게 서로 상대방들에게 좋은 거예요. 아니 괜히 전과하나 늘려서 뭐가 좋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4번 사건)

경찰관들이 항상 폭력사건을 화해·조정시키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폭력행위가 중대한 경우, 경찰관들은 화해의 유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통해 사건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는 주로 경찰관들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이거나, 가해자의 범죄성이 심각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처벌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등이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노래방 단속을 하다가 노래방 사장의 형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자 지체 없이 정식처리를 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인 경찰관(경위)은 사건 당일인 2010년 7월 16일 새벽 01시 20분경 00역 뒤쪽 먹자골목 00 노래방에서 불법보도영업(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는 것)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도방 영업건의 당사자인 방00을 조사하기 위해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때 갑자기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의자가 노래방 사장을 도울 목적으로 경찰관의 양 손목을 잡고 위력을 사용하여 30여 차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한 가해자는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을 비난했고 경찰관들은 전혀 응대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였다.

가해자: 야 임마 ... 뭐 ... 공무집행 방해 ... 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 야 임마 ... 나이 처먹고 참 ... 사람새끼가 아니네 .. 당신 이름 뭐야 ... 이 씨발놈아 ... 그래 함 해봐 ... 누가 이기나 해보자 ... 야 내가 한게 공무집행 방해란다 ... 내가 뭐했다고 참 나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 너 ... 경찰이면 다야 임마

피해자 경찰: (피의자의 반응에 일절대응하지 않으며) 안 돼 ... 술 먹고 한 행동이라고 봐주면 안 돼 ... 술 먹고 한 행동들도 책임을 져야지 .. 다른 건 몰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돼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목부분하고 등이 아파 죽겠어 ... 아직도 통증이 심하다니깐 ...

동료경찰관: 저런 건들은요 ... 무조건 사건화 해야 돼요 ...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몰라요 ... 그리고 나중에 또 경찰관들 우습게보고 경찰관들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니깐요 ...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아간에 엄청 바쁘고 힘들거든요 ... 그런데도 이런 공무집행방해 건들은 힘들더라도 사건화 해야 되요..(5번 사건)

피해자가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폭행행위가 심각한 경우에 경찰관들은 엄정하게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동거하는 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고한 사건에서, 당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들은 화해를 권유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향후의 안전을 위해서 정식사건으로 처리하는 낫겠다며 사실상 처벌의사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 단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찰관: 저기요 ... 서00씨 저희가 그럴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사건화를 원하면 해드리고 아니면 지금 바로 저 남자분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니 ... 때리라 말라까지 관할할 권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경찰관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경찰관: 좀 전에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서 아가씨가 처벌을 원하시면 저희는 사건화 하여 처벌 하도록 하는 것이구요 ...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집에 가시는 겁니다 ..

피해자: 지금 이렇게 집에 가면 또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요 ..

경찰관: 그렇기는 하죠 ... 폭행이나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습관성이니깐요 ... 아가씨 심정은 잘 알지만 저희가 그럴 권한까지는 없어요 ...

피해자: 그럼 처벌해 주세요. 그게 니을 것 같네요 ..(6번 사건)

이상에서 경찰관들은 폭력사건 처리방식을 살펴보았는데, 경찰관들이 폭력사

건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상당수 사건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발견되지 않아 폭력사건으로 처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주로 비공식처리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나 상호간에 처벌불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정식사건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모두 현장에 있고 범죄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주로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경찰관들이 알게 된 폭력사건 중 정식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 비율은 경찰지휘부의 정책에 따라, 혹은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의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지역의 대도시 지구대에서조차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낮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경찰서까지 가는 폭력사건은 전체 사건의 10%도 채 안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물론 성과주의하고 실적제도 도입하면서 부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좋게 하고 넘어갈만한 사안도 요즘은 피해자 피해정도가 크거나 화해의지가 좀 없다 싶으면 바로 사건처리 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폭행사건도 실적점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은 공식처리 되는 건수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하다못해 지인 간 폭행이 합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산해도 지도장 발부를 하거든요. 지도장도 발부하면 그 만큼 점수를 받게 되니까....그래도 경찰서로 넘어가는 건은 여전히 15% 정도도 안되요.(50대 경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한 모든 폭력 범죄를 지구대나 파출소로 전부다 끌고 오면 자체에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공무집행 방해 수준의 경찰관에게 덤비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만 데리고 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약 70-80%의 사건은 현지종산 처리하였으며, 약 20-30%의 사건을 파출소까지 가져왔습니다.(20대 순경)

4개 지구대와 파출소의 근무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이 같은 진술을 사실로 드러냈다. 폭력당사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383건 중에서, 형사계연계(9%) 또는 발생보고(1%)를 한 경우, 즉 정식으로 처리한 사건은 10%를 조금 넘는 39건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훈방처리, 즉 현장정리(74%) 또는 지도장을 발부(7%)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3 4개 파출소와 지구대의 7월 한 달간 폭력신고사건 처리결과

조치결과	빈도(건)	비율(%)
현장정리	285	74.4
지도장 발부	28	7.3
자진해산	3	0.8
신고취소	28	7.3
형사계인계	34	8.9
발생보고	5	1.3
계	383	100%

### 제3절 소결

#### 1. 폭력의 원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적 폭력사건의 전개순서를 그려보면 <그림 5-2>와 같다. 먼저,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흥분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즉, 우리가 관찰한 모든 사건의 가해자들이 음주상태였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가해자가 주취상태에 이른 것 자체가 폭력행사의 동기부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가 폭력유발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 혹은 부정적 자극을 한 것이 폭력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다. 그런 행위는 반드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피해자가 음주상태나 흥분상태에서만 저지르는 행위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공무집행, 정상적인 운전, 단순한 어깨 부딪힘과 같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활동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유발행위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술기운에 흥분상태에 놓인 가해자에게 이런 부정적 자극은 즉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또는 바로 폭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대응폭행을 행사한다면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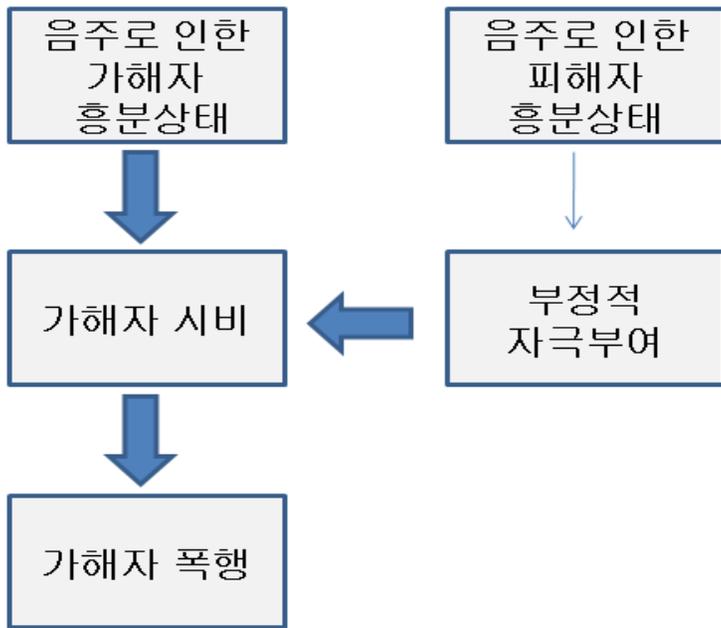


그림 5-2 폭력사건의 발생순서도

\* 굵은 선은 강한 인과관계표시, 얇은 선은 약한 인과관계표시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해볼 때 우리는 경찰관들이 통상적으로 접하는 “거리의 폭력”의 원인을 크게 거시적 원인과 미시적 원인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거시적 원인은 한국 사회, 특히 젊은 남성들의 사회에서 폭력이 다른 사회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이유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는 특히 음주와 이에 수반한 행동에 관해 다른 주류문화와 구별되는 가치체계와 행동규범을 포함할 수 있다. 주류문화에서는 술에 취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언어사용과 폭행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하위문화에서는 음주를 오히려 권장하거나 심지어 강권하며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 관용적이다. 즉, 이렇게 술 권하는 문화에는 술로 인해 생긴 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는 폭력적 행동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술 마시고 한 실수 혹은 “주사(酒事)”에 대해 끝까지 처벌을 고집하는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이라는 식의 사회적 비난마저 가해진다. 이번

연구에서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심지어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마저 술을 마시고 한 실수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는 왜 폭행사건이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야간에 술집 또는 그 근처의 거리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를 잘 설명해준다. 여성의 음주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음주는 청장년의 남성들이 주로 하는 문화적 행위이다. 특히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거나, 1회 음주량이 7잔 이상(여성은 5잔)으로 주취상태에 이르는 비율은 남성이 28.3%인데 반해 여성은 8.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성 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질병관리본부, 2008:23). 더군다나 음주를 한 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류사회에서조차도 여성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르는 일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이다. 반면 젊은 남성들은 음주폭력의 하위문화 속에서 서로 술을 마시도록 권장하고 심지어 강권하며, 이로 부수적으로 생기는 폭력행사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남자로 나타난 것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폭력의 하위문화가 대도시 빈민가의 거리에 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는 야간에 술집거리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의 음주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이 음주를 시작하는 시간은 학업이나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이며 술에 취하게 되는 시기는 통상 저녁 9시에서 10시를 넘기게 되므로 이런 밤 시간이 바로 음주폭력의 하위문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하위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음주장소로 술집이나 술과는 식당을 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야심한 시간, 술집거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적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설

명할 수 있는데,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이 부정적 자극을 받을 때 폭력사건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관찰 결과 야간의 술집거리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직접 계기는 술 취한 사람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푸대접 혹은 부정적 자극은 크게 i) 나이의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 ii)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공중도덕의 위반, iii) 자신의 영역침해, iv) 기타 넓은 의미의 질서와 정의에 위반하는 행위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언뜻 보면 공중도덕 위반이나 정의에 위반행위는 자신에 대한 대접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공중도덕 위반행위도 실상은 자신에 대해 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신을 제대로 보호 해주지 않는 행위 등 넓게 보면 자신의 영역이나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은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의에 위반되는 행위도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분노에 의해 저질러진 것 등을 일컫는 행위로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폭력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나이대접” 혹은 “어른대접”에 대한 갈등이라는 것이다. 사실 연구에서 나타난 네 가지 부정적 자극 중 2, 3, 4번째 자극들은 다른 문화에서도 통상 상대방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폭력의 하위문화에서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문화적 명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Anderson, 2000). 하지만, 첫 번째 유형 즉 나이의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어린 사람이 예의 없게 행동한다고 이에 대해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갈등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의 밤거리에서 자주 발견되는 폭력은 음주폭력의 하위문화와 주취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 자극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젊은 남성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음주강권 및 주사허용의 행위규범은 폭력에 대한 기본적 바탕 혹은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음주로 인해 폭력이 동기부여된 자들에게 나이대접을 제대로 안하거나,

공중도덕을 어기거나 공정하지 않게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범행의 직접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리의 폭력은 거시적 측면에서 음주폭력의 하위문화와 미시적 측면에서 부정적 자극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사회적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정적 자극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밤거리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폭력사건의 처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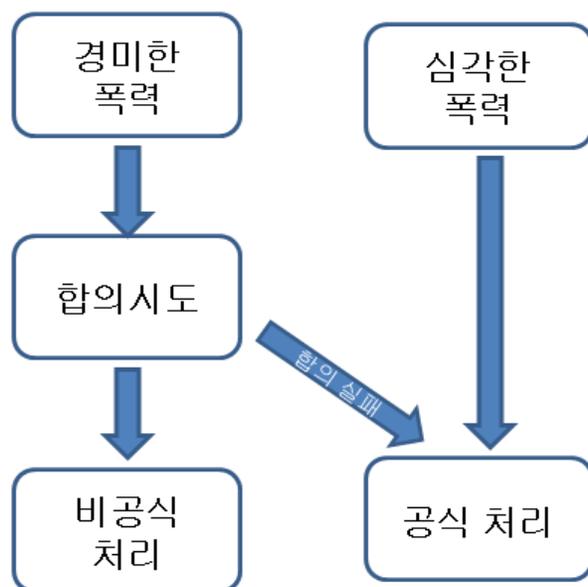


그림 5-3 일선 경찰의 폭력사건 처리순서도

경찰이 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목격한 경우, 범죄의 심각성여부 판단, 합의의사 확인 또는 시도,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최종처리 결정 등 3단계의 의사결정단계를 거쳐 정식폭력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의사결정 모델을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5-3>과 같다.

먼저 경찰관들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 공식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규칙 1). 만일 폭력의 내용이 경찰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혹은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면 당사자들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거나 합의를 유도하지 않고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폭력이 사소한 시비이거나 가벼운 폭력사건일 때는 일단 합의 시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둘째, 경찰관들은 범죄의 내용이 덜 심각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스스로 합의를 하게 하던가 혹은 자신들이 나서서 합의를 유도한다(규칙 2). 경찰관들은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특히 당사자들이 젊은 사람들인 경우 정식사건처리 후 받게 될 벌금, 전과기록 등 결과가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기회를 준다. 즉 이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사건의 화해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폭력사건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가해자의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정식사건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셋째, 경찰관들은 당사자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었지만, 당사자 중 한쪽 이상이 강하게 정식폭력사건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즉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폭력사건으로 처리한다(규칙 3). 즉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폭력사건은 중재를 시키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찰관들의 폭력사건처리가 화해유도 위주로 가는 것은 경찰관들도 대부분 청장년의 남성들로서 음주폭력의 하위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도 술 마시고 저지른 가벼운 폭력을 정식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위문화의 행위규범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

### 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자조사 통계의 오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공식범죄통계나 범죄피해조사에서 발견되는 폭력사건의 모습과 일선경찰관들이 목격하는 폭력과는 다소 괴리가 존재함이 당연해 보인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폭력피해자가 신고한 범죄 중 다수가

일선 경찰의 처리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폭력사건의 발생율과 공식범죄통계에서의 폭력의 발생율의 차이가 단순히 신고율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경찰의 공식사건 처리비율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 처리율을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연구가 있었지만(황지태, 2010), 보다 정확한 경찰의 폭력사건 처리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의 문항변경이나 경찰관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식범죄통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모습은 현실보다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나듯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죄피해가 심각할 때 범죄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여 경찰이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폭력사건이 특히 심각하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당사자들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공식범죄에게 누락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폭력의 모습은 신고단계와 일선 경찰의 처리단계에서 두 번씩 경미사건이 걸러지고 남은 중대한 사건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4. 의의 및 한계

이번 연구는 경찰학 분야에서 보기 드물게 직접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진의 경험이 보다 풍부했다면 더 나은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한계는 연구기간에 있다. 연구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면 5주가 넘는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했지만, 그 기간은 일선 경찰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폭력사건의 실태와 그 처리방식을 모두 살피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심도 있게 관찰한 폭력사건이 19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경찰관서에 6일 동안 관찰을 하였기 때문에 3부제로 근무하는 각 순찰팀을 두 번 밖에는 보지 못하게 된 것도 아쉬

움이 남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다양한 경찰관서를 관찰하기 위해 교육지책으로 1주의 시간만을 배정했지만, 이렇게 몇 번 만나지 못할 때에는 연구진과 경찰관들 사이에 라포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이 관찰한 시점이 한 여름 동안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혹시 계절적 요인이 관찰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게 되었다. 통상 질적 연구는 관찰내용을 내부자의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통상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연구의 기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짧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관된 문제로 연구원의 수도 좀 더 많아야 했다는 판단이 든다. 물론 총 7명의 연구진이 일반적인 경찰학분야 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단기간에 참여관찰에 의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수를 좀 더 늘려 관찰 사례 수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 제1절 경찰관 설문조사의 목적

우리는 제5장에서 참여관찰,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방법을 통해 폭력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소수의 관찰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한 내용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6개 지구대와 파출소에 관찰한 내용이 다른 경찰관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확실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을 양적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질적 연구를 통해 관찰하고 이론화한 폭력실태가 경찰관들이 평소 인식하는 폭력의 모습과 유사한 지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은 경찰관들이 처리한 폭력사건의 모습과 처리결과, 그리고 평소 이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폭력의 실태와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 제2절 연구방법

### 1. 표본

이 연구는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폭력사건의 실태와 처리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폭력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야 했다. 폭력사건은 통상 생활안전부서 특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처리하므로 이들을 모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 전체의 목록과 연락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선 생활안전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략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편의적 표본을 구해야 했다.

우리가 선택한 표본은 특정한 경찰교육기관<sup>3)</sup>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였다. 2010년 ○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의 교육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를 잘 해주어 여러 교육과정에서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응답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증정하였고, 총 317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 응답지를 검토한 결과 성의 없게 응답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고, 자신이 직접 시민으로부터 신고 받아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파출소 등에서 이미 입건해 온 사건에 대해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총 297건의 설문응답을 조사에 활용하였다.

〈표 6-1〉은 설문에 답한 경찰관들의 인적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3-40대(92%), 남자(92%), 경사(75%)였으며, 절반가까이가 대졸이상의 학력(49%)을 소지하고 있었다.

3) 응답한 경찰관들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시기 및 교육기관명은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

표 6-1 응답 경찰관들의 인적 특성 및 근무부서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73	91.9
	여자	24	8.1
	계	297	100
연령	21-30세	15	5.1
	31-40세	159	53.7
	41-50세	114	38.5
	51-60세	8	2.7
	계	296	100
학력	고졸	41	13.9
	전문대, 대학중퇴, 대학재학	110	37.2
	대졸	142	47.8
	대학원이상	3	1.0
	계	296	100
계급	순경	18	6.1
	경장	22	7.4
	경사	224	75.4
	경위	32	10.8
	경감이상	1	0.3
	계	297	100
현 근무부서	생활안전	186	62.6
	형사	22	7.4
	수사	31	10.4
	경비	14	4.7
	교통	25	8.4
	경무	4	1.3
	보안 정보	6	2.0
	기타	9	3.0
	계	297	100
현 경찰서 급지	1급지	205	69.3
	2급지	35	11.8
	3급지	56	18.9
	계	296	100

이러한 특성은 일선 경찰관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대체로 1급지 경찰서(69%),

생활안전 부서(63%)나 형사 및 수사(18%)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근무부서의 분포도 경찰의 전체적인 인력배치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본 표본이 비록 편의적 표본이기는 하지만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설문대상으로 경찰관들을 선택했지만, 이 연구는 폭력에 실태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분석단위는 경찰관들이 아니라 폭력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떤 폭력사건을 분석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많게는 하루에도 수건의 폭력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하루에 처리한 사건 모두 답하도록 할 수도 있겠으나 설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처리한 한 사건에 대하여, 그것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최근에 접한 사건에 대해 응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지 제일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장 최근에 접한 사건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덧붙임 참조). 이들이 접한 사건들은 대체로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발생 시기는 1달 이내 가 가장 많았다(41%), 다음으로 1년 이상(34%), 6개월 내(15%), 1년 이내(11%) 순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1년 이상 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회상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발생 시기를 폭력의 내용과 처리방식에 대해 교차 분석해 보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어 그대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설문내용

설문지를 통해 경찰관들의 기본적 신상정보 외에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였다. 첫째 자신이 가장 최근에 접한 폭력사건의 모습 및 처리결과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발생시간, 장소, 폭력의 원인과 피해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특성 및 태도, 그리고 사건의 처리결과와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전형적 폭력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 등을 질문하였다. 경찰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전형적인 폭력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으로,

만약 설문내용이 타당하다면 개별폭력 사례의 내용을 종합한 것과, 이들의 인식한 전형적 폭력의 모습이 대략 일치할 것을 기대하였다.

### 제3절 연구결과

#### 1. 폭력의 시간과 장소

〈표 6-2〉는 297명의 경찰관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최근 접한 폭력사건의 발생 장소와 발생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절반이 넘는 폭력사건들이 직접 술을 파는 곳, 즉 음주영업장소(39%) 또는 식당(16%)에서 발생하였고, 그 외에는 길거리(32%)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적으로 볼 때 폭력사건은 대부분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시에서 24시에 발생한 사건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46%), 자정부터 새벽3시까지 발생한 사건도 상당해(22%), 야심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70%에 육박했으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발생한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80%를 넘어섰다. 즉,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실만 갖고도 폭력은 주로 야간에 음주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6-2 가장 최근에 접한 폭력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간

		빈도(명)	비율(%)
폭력발생장소	음주영업장소	115	38.7
	길거리	94	31.6
	식당	47	15.8
	주거시설	20	6.7
	편의점	12	4.0
	기타 (교통수단, 학교 등)	9	3.0
	계	297	100%
폭력 발생시간	0시-3시	65	22.2
	3시-6시	13	4.4
	6시-9시	4	1.4
	9시-12시	5	1.7

	빈도(명)	비율(%)
12사-15시	16	5.5
15-18시	15	5.1
18사-21시	39	13.3
21사-24시	136	46.4
계	297	100%

경찰관들도 평소 접하는 폭력의 모습은 이런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술을 판매하는 음주영업장소(76%)와 식당(6%)을 지목했고, 다음으로 길거리(13%), 주거시설(3%) 등을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생략).

## 2.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

폭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일까? 이를 답하기 전에 폭력사건은 1대1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2명 이상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여러 명이 싸웠을 경우 가장 주된 피해자와 가장 주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볼 때 경찰관들이 접하는 폭력은 대부분 사회 중·하류층의 청장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97%가 남자로 드러났고, 나이대로 나눠보면 30대가 37%, 40대가 29%, 20대가 21%로 청장년층이 전체의 88%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직장인이 단일 직업군 중에서 23%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일용직 19%, 무직19%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38%로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3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특성

(단위: %)

		가해자	피해자
성별	남	97.0	85.8
	여	3.0	14.2
	계	100.0 (n=297)	100.0 (n=296)
나이	11-20세	2.0	2.0
	21-30세	21.5	23.2
	31-40세	37.4	36.0
	41-50세	29.0	30.0
	51-60세	9.1	7.4
	61세 이상	1.0	1.3
	계	100.0 (n=297)	100.0 (n=297)
직업	직장인	22.9	24.9
	일용직	18.9	15.2
	무직	18.5	14.5
	자영업자	13.8	14.8
	기타(교사, 주부, 운전기사 등)	9.8	14.8
	학생	5.1	6.4
	모르겠음	11.1	9.1
	계	100.0 (n=297)	100.0 (n=297)

폭력은 인적특성이 비슷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범죄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Wolfgang & Ferracuti, 1967; 김은경 외, 2009). 본 연구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특성이 매우 흡사하게 드러났다.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 중·하류층 청장년의 남자들로 나타난 것이다. 피해자들의 86%가 남자였으며, 나이대로 볼 때 30대가 36%, 40대가 30%, 그리고 20대가 23%로 전체의 89%가 청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직업적으로 볼 때 직장인이 25%로 가장 높았으나, 일용직과 무직이 각각 15%와 15%로 30%에 달했다.

〈표 6-4〉는 구체적으로 폭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폭력은 주로 한두 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질을 하여, 상대방에게 2주 이하의 약간의 피해를 입히는 '경미한 쌍방 폭행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경찰관들이 접하는 폭력의 대다수는 양

쪽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찰관들이 해당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규정한 경우가 78%에 달했고(표 생략), 실제 가해자들의 71%가 폭력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따라서 여기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다는 것을 의미할 뿐,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는 음주와 폭력간의 밀접한 관계일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 무려 93%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경우도 84%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가해자들은 조금 취한 것이 아니라, 만취 또는 상당히 취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73%), 이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다(61%). 따라서 폭력은 음주가 기본적 배경원인이라는 음주폭행의 하위문화이론의 가설은 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폭력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폭행방법은 가해자의 경우 주먹질(68%)나 멱살잡이(10%), 또는 손바닥으로 때리기(9%)를 주로 하고, 피해자는 주먹질(42%)은 다소 덜하고 멱살잡이(25%)로 좀 더 하면서 대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무기사용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중에서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소수였고(19%), 피해자는 더욱 드물었다(8%). 가해자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는(7%), 막대기나 파이프(5%)로 밝혀졌고 칼을 사용한 경우(2%)는 별로 없었다. 피해자가 자주 사용한 무기도 병(3%), 막대기(3%), 칼(3%) 순이었는데 그 비율은 가해자보다 확실히 낮았다. 피해정도는 대부분 경미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62%), 아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5%),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28%), 큰 피해를 입은 경우(6%)는 전체의 1/3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피해가 없거나(29%), 경미한 피해(62%)를 입는 수준에 그쳤다.

표 6-4 폭력의 구체적인 모습

(단위: %)

		가해자	피해자
인원수	1명	64.0	55.9
	2명	30.6	32.7
	3명	2.4	7.4
	4명 이상	2.7	4.0
	계	100.0 (n=296)	100.0 (n=297)
음주상태	만취	11.4	7.4
	상당히 취함	62.0	53.9
	조금 취함	19.9	21.9
	전혀 안취함	6.7	16.5
	계	100.0 (n=297)	100.0 (n=296)
폭행방법	주먹질	67.5	42.2
	역살잡이	10.3	24.9
	손바닥으로 때리기	9.1	5.1
	기타	7.1	2.2
	발길질	3.2	1.4
	밀침	2.8	9.0
	폭행안함	0.0	15.2
	계	100.0 (n=252)	100.0 (n=277)
사용무기	무기 사용 안함	81.0	92.4
	병류	7.0	2.9
	막대기, 파이프	5.3	2.9
	기타	4.6	2.2
	칼	2.1	0.7
	계	100.0 (n=284)	100.0 (n=277)
피해상태	피해 없음	28.7	4.7
	약간 피해	62.2	61.5
	상당한 피해	8.4	28.0
	큰 피해	0.7	5.7
	계	100.0 (n=296)	100.0 (n=296)

### 3. 폭력의 원인

〈표 6-5〉는 폭력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폭력사건(90%)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여관찰에서 본 것 같이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언쟁이 발단이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폭력의 다른 이유로는 원한(4%), 권력과시(2%), 이유 없음(2%) 등이 일부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이런 폭력은 적어도 경찰들이 근무하면서 발견하는 폭력사건에서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5 폭력의 원인과 당사자 관계

		빈도(명)	비율(%)
폭력의 주된 이유	우발적	268	90.2
	원한	13	4.4
	권력과시	7	2.4
	이유 없음	5	1.7
	기타	4	1.3
	계	297	100%
당사자 관계	모르는 사이	166	56.1
	기타 아는 사이	48	16.2
	아는 형 동생	42	14.2
	부부	15	5.1
	친구	12	4.1
	직장동료	10	3.4
	직장상사/부하	1	0.3
	동거가족	2	0.7
	계	297	100%

폭력이 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원한이나 권력과시 등이 이유가 되기는 어렵고, 주로 우발적으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결과, 당사자관계는 모르는 사이가 가장 많았고(56%), 다음으로 기타 아는 사이(16%), 아는 형 동생 사이(14%), 부부(5%), 친구(4%)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당사자들의 음주상태와 함께 생각해 보면, 경찰관들이 목격하는 일반적인 폭력의 모습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4. 당사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

폭력범들이 경찰관들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했는지는 이 연구의 핵심적 연구사항은 아니지만, 이들의 행동을 통해 폭력현장에서의 흥분상태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6에 나타난 것과 같이 폭력의 당사자들은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상당히 흥분한 상태이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흥분상태를 넘어서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매우 불손하거나 불손한 경우가 무려 76%나 되었고, 보통이 19%, 공손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나왔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매우 불손하거나 불손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 보통이 32%, 그리고 공손한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폭력당사자들은 불손한 정도를 넘어 경찰관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경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3%나 되었고, 욕설이나 헐박을 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57%, 공격을 안 한 경우는 40%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이와 비슷하였다. 경찰관을 물리적으로 폭행한 경우는 2%였지만, 욕설이나 헐박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51%나 된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감안해볼 때 경찰관들이 이들을 발견하기 전에 상호 더 심한 욕설과 헐박이 오고 갔으리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표 6-6 폭력당사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

(단위: %)

		가해자	피해자
태도	매우 공손	0.3	2.0
	공손	4.7	11.1
	보통	18.6	32.4
	불손	42.6	40.9
	매우 불손	33.8	13.5
		100.0 (n=296)	100.0 (n=296)
공격여부	공격 인함	39.8	47.4
	욕설	52.3	47.1
	헐박	4.9	4.0
	물리적 폭력	3.0	1.5
		100.0 (n=264)	100.0 (n=296)

## 5. 폭력의 처리결과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가장 최근에 접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표 6-7>은 폭력사건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놀랍게도 경찰관들이 접한 사건들의 대부분(83%)이 정식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훈방(6%)되거나 지구대에서 훈방(8%)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sup>4)</sup>

폭력사건은 주로 당사자의 합의여부에 따라 처리결과가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으로 폭력사건화 되는 이유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고(49%), 다음으로 당연히 (31%), 피해가 중대해서(13%), 공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5%) 순으로 나타났다. 훈방이 된 이유로는 피해가 경미해서(5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합의가 되어(43%), 지역사회 압력(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관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여부와 피해의 심각성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표 6-7 폭력사건의 처리결과와 이유

		빈도(명)	비율(%)
처리결과	정식처리	245	82.5
	현지 훈방	18	6.1
	지구대 훈방	23	7.7
	가해자 모름	2	0.7
	기타	9	3.0
	계	297	100.0

4) 이런 차이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폭력사건을 훈방처리 했다고 답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률체계상 1대 1로 싸워 경미한 피해만 입은 사건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되어 훈방할 여지가 있으나, 상체가 상해에 이르거나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해죄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훈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설문에 응할 때에도 폭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더라도 이런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빈도(명)	비율(%)
정식처리이유	합의 안 됨	104	48.8
	당연히	65	30.5
	피해중대	28	13.1
	공권력도전	10	4.7
	기타	6	2.8
	계	213	100.0
훈방이유	피해경미	21	53.8
	합의 됨	16	41.0
	지역사회 압력	1	2.6
	기타	1	2.6
	계	39	100.0

경찰관들이 주로 피해의 심각성여부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재확인해 보았다. <표 6-8>에서 보이듯, 사건의 처리여부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00% 정식처리 되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88%, 약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81%, 피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57%만이 폭력사건으로 정식입건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가해자의 피해정도도 유사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가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00% 정식처리 되었고,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92%, 약간 피해를 입은 경우 84%,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76%가 정식처리 되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사건의 처리결과에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8** 피해자와 가해자의 폭력피해 정도와 폭력사건의 처리결과 (단위: %)

	피해자 피해 정도*				계
	피해 없음	약간 피해	상당한 피해	큰 피해	
정식처리	57.1	83.1	93.6	100.0	85.7
훈방	42.9	16.9	6.4	0.0	14.3
계	100.0 (n=14)	100.0 (n=177)	100.0 (n=78)	100.0 (n=17)	100.0 (N=286)

	가해자 피해 정도**				계
	피해 없음	약간 피해	상당한 피해	큰 피해	
정식처리	80.2	87.1	92.0	100.0	85.7
훈방	19.8	12.9	8.0	0.0	14.3
계	100.0 (n=81)	100.0 (n=178)	100.0 (n=25)	100.0 (n=2)	100.0 (N=286)

\*  $\chi^2=17.093$ ,  $p<0.01$ ; \*\* $\chi^2=3.378$ ,  $p>0.05$

경찰관들이 사건이 처리할 때는 당사자들의 태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8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의 태도와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해자의 태도가 불손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식 처리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불손했을 경우에는 정식입건 되는 비율이 86%였지만, 불손했을 때는 83%, 보통일 때 76%, 공손했을 때 71%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인 가해자는 단 한명에 불과했으며 그는 정식처리 되었다. 결국, 가해자의 태도에 따른 처리결과 차이는 당사자들의 피해정도에 피해서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폭력사건의 처리결과와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6-9 가해자의 경찰에 대한 태도와 폭력사건의 처리결과

(단위: %)

	가해자의 경찰에 대한 태도*					계
	매우 공손	공손	보통	불손	매우 불손	
정식처리	100.0	83.3	79.2	85.4	89.6	85.6
훈방	0.0	16.7	20.8	14.6	10.4	14.4
계	100.0 (n=1)	100.0 (n=12)	100.0 (n=53)	100.0 (n=123)	100.0 (n=96)	100.0 (N=285)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태도**					계
	매우 공손	공손	보통	불손	매우 불손	
정식처리	100.0	90.0	81.9	88.0	84.6	86.4
훈방	0.0	10.0	18.1	12.0	15.4	14.0
계	100.0 (n=5)	100.0 (n=30)	100.0 (n=94)	100.0 (n=117)	100.0 (n=39)	100.0 (N=285)

\*  $\chi^2=3.198$ ,  $p>0.05$ ; \*\* $\chi^2=2.973$ ,  $p>0.05$

당사자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언어적 혹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6-10>은 당사자들이 경찰관들에 대한 공격정도와 처리결과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놀랍게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설, 협박,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식처리여부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경찰관들이 절반이 넘는 폭력 당사자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욕설을 당하고 있어, 이런 언어적 폭력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여부나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0** 당사자들의 경찰관 공격정도와 정식처리결과

(단위: %)

	가해자의 경찰관 공격정도*				계
	공격 안함	욕설	협박	물리적 폭력	
정식처리	83.1	88.9	72.7	75.0	85.3
훈방	16.9	11.1	27.3	25.0	14.7
계	100.0 (n=124)	100.0 (n=126)	100.0 (n=11)	100.0 (n=4)	100.0 (N=265)
	피해자의 경찰관 공격정도**				계
	공격 안함	욕설	협박	물리적 폭력	
정식처리	79.2	86.8	72.7	75.0	82.5
훈방	16.2	10.9	27.3	25.0	14.3
계	100.0 (n=130)	100.0 (n=129)	100.0 (n=11)	100.0 (n=4)	100.0 (N=274)

\*  $\chi^2=3.115, p>0.05$ ; \*\* $\chi^2=3.510, p>0.05$

## 6.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경찰관들은 폭력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표 6-11>을 살펴보면, 경찰관들은 폭력의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음주판매를 제한(34%), 다음으로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30%), 그리고 적극적 처벌(21%), 해악의 홍보(10%)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사건이 주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음주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

해결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6-11 폭력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빈도(명)	비율(%)
폭력 감소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	음주판매 제한	95	34.1
	의사소통방식 변화	84	30.1
	적극적 처벌	59	21.1
	해악의 홍보	27	9.7
	기타	14	5.0
	계	279	100.0
바람직한 경찰해결 방법	합의 불처벌	165	55.7
	관계없이 처벌	116	39.1
	기타	15	5.1
	계	296	100.0
불처벌이 바람직한 이유	경미하기 때문	84	35.4
	빠른 보상 때문	75	31.6
	가혹한 처벌 때문	64	27.0
	기타	14	5.9
	계	237	100.0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접한 폭력사건들은 주로 합의를 유도해 처벌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폭력의 바람직한 경찰해결방법으로 합의 불처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56%), 합의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비율보다(40%)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합의를 유도해 처벌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이유는 주로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불처벌이 바람직한 이유로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35%), 빠른 보상(31%), 가혹한 처벌(27%) 등을 들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사건이 경미한데 정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가 전과기록과 벌금을 부과 받게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정식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 제4절 소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실태 설문조사는 앞서 실시한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경찰의 한 교육기관에서 추출한 일선 경찰관 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경찰관들이 주로 접하는 폭력의 모습은 연구진이 대도시의 6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했던 모습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폭력의 모습은 술에 취한 청장년 남성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술 마시는 장소에서 술에 취할 시간에 주로 벌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93%, 피해자의 84%가 술에 취해 있었고, 만취 또는 상당히 취한 경우도 거의 70%수준이었다는 점은 폭력의 핵심적 배경원인이 바로 음주에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폭력의 실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발견은 폭력이 대단히 동일(homogeneity)이 강한 범죄라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성별, 나이, 직업, 심지어 음주상태까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거의 중·하류층의 청장년 남성들로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쌍방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즉, 이들 폭력범들 대부분은 술에 취해 밤거리를 떠돌며 함부로 시비를 거는 이 시대의 가없는 남성들이었던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경찰의 처리방식도 같이 질문하였는데,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발견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현장관찰이나 심층면접에서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관이 접한 사건의 절반 이상을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훈방조치하고 있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경찰관들의 대부분이 사건을 정식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진에 대한 신뢰도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아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탓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설문조사에서도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경찰관들이 특정한 폭행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할지의 여부는 폭력피해의 심각성과 당사자의 합의에 주로 의해 결정되고, 당사자들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좌우되지 않

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조그만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좀 더 큰 표본을 사용하고, 응답자들에게 조사의 취지와 비밀보장을 강조하여 좀 더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주폭력의 하위문화이론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정확히 폭력이 어떤 발단, 혹은 부정적 자극을 계기로 발생하는 지까지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제7장

# 요약 및 결론



# 요약 및 결론

## 제1절 연구요약

### 1. 공식통계상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공식통계상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는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길거리나 업무지구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남성 20대 또는 30대가 많으며,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폭력범죄를 인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매우 많으며,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다.

이처럼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사한 변수값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세 개의 법률은 규제하는 행위 내용이 크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 법률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점은 공범유무와 범죄자의 연령분포이다. 그러나 이 두 변수 역시 세 개의 법률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범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폭처법의 규정상 공범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가 모두 같다 하더라도 공범의 존재는 폭처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연령분포가 다른 것은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경향이 강한집단이 10대들이기 때문에 폭력이 행사될 경우 함께있던 또래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할 뿐이다.

그런데 조금 허무하기는 하지만 공식통계는 실제 폭력범죄의 극히 일부만을 반영할 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내용이다. 즉, 공식통계를 통해 폭력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식통계 내부만을 보았을 때에도 기타 또는 미상으로 처리된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실제적 결측값이 상당한 수준이며, 연구진이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거나 일선 경찰관들을 면접하여 얻은 자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음주와 관련된 변수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 관찰 및 면접에서는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음주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공식통계상에서는 이에 비해 과소측정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통계와 현장의 상이성은 미기록사건과 미신고사건이 기록된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의 특성

수사 및 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입건하여 처리한 사건들로서 주로 봄이나 여름에 발생하며, 심야나 새벽시간(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범이 있는 범죄이며, 또 이들 중 1/3가량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은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순수 가해자는 회사원과 학생이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무직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순수 가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과횟수가 많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순수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화가난 상태(분노)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사소한말다툼이 폭력행위로 발전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나 행위들은 순수 가해자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정보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에도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형사사법기관의 공식기록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숨은 범죄들 때문이다.

### 3. 폭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폭력범죄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규제한 법률에 따라 그 특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 당사자들끼리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음주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30대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20세 이하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전과가 없거나 1회에 불과한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범죄자 중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경우 불기소처리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인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극단값들이 많았다.

남성들은 20대와 30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들은 20세 이하와 50대-60대 가해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여성들은 갈등여부, 호감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전부터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은 남성에게는 모욕이나 비하로 인한 갈등과 업무상문제로 인한 갈등 더 많았던 반면, 여성에게는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가 원인이었던 갈등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들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의를 원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여성들은 갈등이 오래 지속된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고, 싸움 이후에도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이 전에 상호작용이 없었거나 당일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으나, 30대 이상의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우와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역시 30대에 비해 많았다. 20대 이하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전 서로 아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전과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사건 중에 협박, 위협, 도구사용 등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비율도 2/5가량 되었다.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과 싸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모르는 사람과 싸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대와 4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주자들은 애정문제, 가정불화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갈등의 제공자는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경우 가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술을 마시고 싸운 경우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싸웠다. 이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술을 마시고 싸운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 4.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본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한국의 폭력사건은 거시적으로는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은 술에 취한 젊은 남자들이 술집이나 술집거리에서 야간에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위문화의 독특한 가치체계와 행위규범에 따라 술을 마시고 가벼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있을 수 있는 실수로서 상대방의 용서만 구하면 기본적으로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조차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의 폭력사건은 주로 술에 취한 당사자에게 부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나이에 대한 대접을 소홀하게 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정의에 위반하여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때 폭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나이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때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다.

## 5.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경찰관들의 처리방식은 기본적으로 화해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우선 자신들이 인지한 폭력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심각성이 높은 사건은 바로 공식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거나 직접 합의를 유도하고, 실제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벼운 경고나 지도장 발부 등만 할 뿐 공식적인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결과나 면접내용을 종합해볼 때 경찰관들이 인지한 사건 중 정식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0%이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 제2절 결론

### 1. 음주폭력의 하위문화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일반적인 폭력사건의 실태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음주행위를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용인하고, 장려하고, 심지어 요구하는 특수한 형태의 하위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음주는 학교, 직장, 군대, 사고모임 등 성인남성들이 주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음주행위는 구성원의 가입, 탈퇴, 축하, 위로, 업무의 성공, 실패,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이뤄진다. 만일 성인 남성이 이 문화적 행위규범을 어길시 상당히 심각한 제재를 감내해야 한다. 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학교친구, 직장동

료, 거래처 직원, 상사 등의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억지로 음주를 하게 되고, 끝까지 거부하면 따돌림, 승진불이익 등 다양한 사회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신입생환영회에서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술 마시다 죽은 어린 학생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인남성들의 음주행위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 후에 저지르는 실수, 특히 폭력행사에 대해 다른 문화에서와 다른 부차적 가치부여와 행동규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폭력행사에 대한 가치판단은 미국의 폭력의 하위문화에서처럼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극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는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폭력의 사용이 요구되거나 용인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폭력행사가 있을 수 있는 실수로 혹은 “주사”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화를 내재화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많은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폭력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큰 죄의식도 갖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자도 폭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폭력행사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행위규범을 따라야 하고, 이를 끝까지 문제 삼으면 오히려 그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즉, 음주행위를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한편, 음주 후에 저지르는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소극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문화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는 음주자가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용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사회적·법적 처벌을 받을 확률은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장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음주 후에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용인 또는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사회 일부에 음주폭력의 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음주폭력의 하위문화이론’에 대해서는 추가적 참여관찰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간 많은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음주를 통한 긴장의 증폭

폭력행위의 원인을 미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로버트 애그(Robert Agnew)가 발표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로버트 머튼의 아노미 긴장이론(1939)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범죄행위의 원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우받지 못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 또는 긴장에서 찾는다.

애그뉴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했거나 그럴 것이 예상될 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물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 자극이 주어지거나 예상될 때이다. 만일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런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적 자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는데, 그중에서도 분노와 좌절 같은 반응들은 특히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하지만,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 감정을 범죄외의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폭력은 절도나 강도같이 가해자 혼자서 저지르는 일방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좋지 못한 자극을 받을 때 폭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자극의 구체적인 유형은 자신에 대한 언어적 또는 물리적 도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 등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밤거리에서도 먼저 밀침, 폭력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멸시, 모략, 욕설, 모욕과 같은 언어적 자극을 받은 경우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특히 음주를 한 후에는 이런 자극에 대

해 특히 더욱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음주상황이 되면 부정적 자극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음주를 통한 긴장의 증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현장관찰을 통해 포착한 현실을 개념화 한 것으로서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 제3절 제언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향후 범죄피해조사에서 몇 가지 개선할 점도 도출되었다. 우선 폭력피해자에게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같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경찰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폭력사건의 신고는 당사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택시기사나 일반시민과 같은 제3자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찰이 그 폭력사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누가 경찰에게 알렸는지를 별도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선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일선 경찰관들은 거의 매일 폭력범죄를 접하면서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없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가 경미하거나 가까운 지인들간의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입건하지도 못하고 사건을 무화시키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 경찰의 사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 경찰의 경우 사건 발생을, 검거율 통계와 함께 수사율 통계도 함께 추산하고 있다. 즉 경찰에 접수된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영역과 권한을 명확히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에따라 경찰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경·박정선·최수형(2009),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문음사.
- 박형민(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질병관리본부(2008),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 탁종연(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한국경찰연구. 5.2:59-80.
- 황지태(2010),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율간의 비교분석:2008년도 주요범죄  
압수추정” 형사정책연구, 21.3:7-52.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1),  
47-87
- Anderson, Elijah(2000), *The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Spradley, James. P. [신재영 역](2009),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Wolfgang, Marvin E., & Ferracuti, F.(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in criminolog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The Trend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Violent Crimes in Korea

Hyung–Min Bark · Hwang, Jeong In · Tark, Jong Yeon

The violence crime has not been defined according to criminal law, and it means various kinds of crimes that are accompanied by the violence. Therefore, official statistics does not include the item of violence crime. In this study, the violence crime consists of injury, assault and violent behavior to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nd to be punished.

Investigation into actual conditions of violent crimes may be not easy. Not only official statistics survey but also crime damage survey can be commonly used. Official statistics has large amount of hidden crimes to exclude most of violence crimes and to produce bias because of reporter's wrong memory and distortion at crime damage survey and limitation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this study, various kinds of ways were used to investigate types and actual conditions of violence crimes in the society, for instance, official statistics,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of violence cases, observation on-the-spot and questionnaire of policemen, etc. In particular, observation on-the-spot was rarely used in the criminology and it was used to limitation of conventional type of research methodology. So, the authors visited police boxes

five weeks to observe characteristics of violence criminals and processing process. The authors could understand policemen's activities on-the-spot better to experience violence crimes.

## 1. Occurrence of Violence Crimes at Official Statistics

Number of violence crimes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temporarily increased in 2000 and 2001. Since 2002, the number decreased little by little. The crime occurred in summer more frequently than other seasons, and it did less frequently in winter. The crime occurred at streets and business districts the most frequently, and it mostly occurred accidentally. When an offender was drunken, number of criminal act constantly increased. And, number of the case that ex-convict committed the crime increased.

Many of the victim wer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they were recently attacked by unknown persons.

The prosecutors of criminal case cognize violence crime according to a victim's report and investigate the case when the offender is not in prison.

## 2. Characteristics of Violence Crimes at the Records of Criminal Court

The criminal and judgment records showed that prosecutors of criminal case booked a criminal, and that the crime often occurred either in spring or in summer and at midnight and early morning (from 9 o'clock in the evening to 3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 crime often occurred at streets, and one third of the crime was committed by unknown person. About one third of the criminals had a partner, and one third of the crime was committed by both men and women.

The ratio of men offender was very much high. The offenders exercised violence unilaterally, and many persons exercised violence each other to be offender as well as victim. The ones who were offenders as well as victims often wer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pure offenders often were company employee and students, while the ones who were offenders as well as victim often were the ones who had no job or self-employed. The pure offenders often were ex-convict, and they sometimes exercised violence with no drinking. And, the pure offenders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did not know before, and the ones who were offenders and victims at the same time often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did not know before.

Most of the offenders exercised violence with anger (rage), and trivial quarrel led to be violence behavior at the highest rate. The pure offenders exercised almost same level of violence that the ones who were offenders and victims did.

### 3. Types of Violence Crimes

The violence crime cannot be defined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violence behaviors, and it may vary depending upon whether both offenders and victims knew each other and were drunken.

The criminals in their thirties were often convicted, and the ones with two times or more previous conviction were often convicted. 20-years old or less criminals often were not convicted, and the ones who had no previous conviction or no more than one time previous conviction often were not convicted. The criminals who were not convicted often made efforts to control and suppress situation at the time of violence, and offenders did not suffer from damages or suffered from minor damages. When the offenders wanted to

agree with the victims actively, they often were not convicted: And, many offenders admitted of violence crime totally or denied it strictly.

The offenders often were 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women in their twenties, fifties and sixties. And, men offenders had relatively more previous conviction. Men offenders often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did not know before, while women offenders did against the ones whom they knew before regardless of conflicts and good impression. The offenders suffered from conflicts because of following reasons: Men had conflict of contempt and abasement, while women had problems of family troubles and debt. Men actively made effort to agree with the victim after violence, while women offender often wanted to convict actively on the contrary and passively wanted to agree with the victim even at mutual agreement. As such, women kept conflict for a long time, and could not control hostile feeling easily after quarrel. The offenders in their twenties or less mostly committed violence crime against the ones who did not react each other before or met on the day of crime, while the ones in their thirties or more did against the ones whom they reacted each other before. The offenders in their twenties or less often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victim even when either prosecutors or policemen investigated the case, and the former made efforts to control or suppress the situation or avoid the situation more than the ones in their thirties did. The offenders in their twenties or less were often arrested either on-the-spot or by third party's report, while the ones in their thirties or more were done by the victim's report. The offenders who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met before the case had previous conviction at high rate, while the ones who did against the ones whom they did not meet before had not previous conviction at high rate. The offenders who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met before sometimes made use of threat, menace and tools, and they reported the crime to the police at the rate of two fifth. The offenders who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did not meet before made efforts to control or suppress situation or to avoid situation. The ones who fought with the ones whom they met before wanted to sue the other party actively, while the ones who fought with the ones whom they did not meet before made effort to agree with the other party.

Men fought drunken more than women did, and the one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often did. The ones who fought drunken mostly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did not meet before, while the ones who did not drink often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met before. The ones who were not drunken often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m they met before. The ones who were drunken exercised violence against the ones who had conflict because of love problem and family troubles: At this time, the offenders often gave causes of the conflict. The ones who fought without drink reported the case to the police by themselves at high rate, and the ones who fought drunken grabbed by the throat or hit with hands. As such, the ones who fought without drink wanted to sue actively, while the ones who fought drunken made effort to agree with the other party after fighting.

#### 4. Characteristics of Violence Crimes from point of view of On-the-spot Observation

In Korea, violence accident seemed to occur frequently because of sub culture of drunken violence from macroscopic point of view. Young men who were drunken exercised violence either at bars or at bar streets in the evening. The young men drank in accordance with value system and behavioral norms of sub culture, and they did not feel guilty against minor violence while drunken and thought that they could be pardoned from the other party so that even policemen were also influenced by the culture.

Secondly, the ones who were drunken to be given negative stimulus started to exercise violence. For instance, when the one who was drunken was neglected from the other party considering the former' old age or was attacked his territory or was given negative feeling such as rage because of violation of public virtue or justice, he or she exercised violence. In particular, they exercised violence because of improper treatment considering age that could not be found out in other countries to be uniqu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and to be interesting.

#### 5. Policemen's Attitudes toward Violence Crimes

The policemen reconciliated and arbitrated violence crime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At first, the policemen decided upon weight of violence case. Then, they selected serious case to apply it to an official violence case: On the other hand, they gave both offender and victim an opportunity to agree each other or helped agree each other. When both parties agreed each other, the policemen released either minor warning or written guidance and they did not adopt an official violence case. The policemen were thought to adopt official violence case at 20% or less considering interview and observation.

# 덧붙임 1

## 연구보조원을 위한 참고자료

### □ 주요 연구질문들

- 연구질문1. 경찰이 안 폭력사건 중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 연구질문2. 처리의 결정요인은 어떤 것인가?  
사건 심각성, 합의, 당사자간 관계, 태도, 기타 인적특성, 제3자 개입 중, 부패 등
- 연구질문3. 경찰관의 자기역할인식 (통제자, 화해중재자, 실적거양자) 때문? 그 의미?  
당사자의 경찰에 대한 역할인식기대 때문?

### □ 관찰방법

1. 관찰시 역할은 완전한 관찰자
  - 관찰대상(경찰관 및 사건 당사자들)에게 의식되지 않는 것이 최선임(특히 ‘감시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
  - 위험한 상황, 모욕적 상황에도 절대로 개입하면 안됨. 설령 경찰관이 불법을 행하더라도 참견하거나 내색하지 말 것.  
(\* 단, 연구윤리상 필요한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상황에서 소극적 개입

가능)

2. 관찰장소(scene)는 사건발생 현장부터, 지구대까지 (일단 동승시도)
3. 관찰시간은 저녁9시부터 새벽3시 (적어도 30분전 입장, 마지막 사건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 사건별 관찰은 사건이 들어 온 순간부터 당사자들이 떠나는 시점까지.
4. 2인1조로 한 사건을 공동으로 관찰하고 자세한 업무분장은 예비조사를 통해 정한다.  
두 사건이 오면 나누어 관찰하고, 세 사건이 동시에 올때는 처음 온 두 사건으로 한정
5. 관찰기록화 방법은 일단 노트필기, 단 녹음 등 병행시도
6. 관찰내용은 단순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경찰포함)들의 언어, 표정, 물리적 행동을 통해 표출된 감정, 의미도 매우 중요  
따라서, 영화시나리오를 쓰듯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하도록 노력할 것!!

□ 연구시 주의사항

1. 관계된 경찰관과 Rapport 형성할 것  
가. 관찰 전 겸손하게, 단 이 분야 프로라는 점 주지시킬 것!  
나. 식사, 야식, 술자리 적극 참여
2. 관찰로 인한 경찰의 행태변화 (Hawthorn Effect 등) 에 유의  
- 연구취지 설명, 익명성보장, 결과설명 등 추가적 보조적으로

3. 경찰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지 말것
  - Pygmalion effect 통제 (부패, 멋진 경찰이라는 기대가 피관찰자의 행태에 영향줌)
  
4. 노트기록은 철저히, 그때그때
  - 못한 부분은 다음날 낮 안으로 재차 확인기록-당일 중 지정된 카페에 올리시오!
  - 연구주제에 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하게 기록해야 함!!!-연구보고서에 포함가능!!
  
5. 파출소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상복-양복X
  
6. 돌발상황 발생시- 연구원들에게 즉시 알릴 것!!
  
7. 경찰관 면접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면접'으로 느끼지 않도록 유의.
  - \* 예컨대 화장실에서 함께 소변보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물어보는 방식 등 권장
  - \*\* 학술적·전문적인 용어 사용 자제
  
8. 경찰관들에 대한 호칭의 문제임.
  - 지구대장과 팀장은 '지구대장님' '팀장님'으로 호칭하면 됨.
  - 여타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론 '姓 뒤에 계급'을 붙여 부르면 되나 (ex, 김순경님), 고참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부르는 비공식 존칭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ex, 김 부장님). 애매할 때는 '선생님'으로 호칭해도 무방할 듯. 끝.

## 덧붙임 2

### 지구대 및 파출소 폭력사건 현장관찰 조사표

#### 지구대 및 파출소 폭력사건 현장관찰 조사표 (초안)

기본 관찰내용

1. 사건 발생 및 완료 시간

분쟁 발생 시간	___월 ___일 ___시(24시간 기준) ___분
폭력 발생 시간	___월 ___일 ___시(24시간 기준) ___분
폭력 종결 시간	___월 ___일 ___시(24시간 기준) ___분
사건 접수 시간	___월 ___일 ___시(24시간 기준) ___분
경찰 출동(도착) 시간	___월 ___일 ___시(24시간 기준) ___분
처리 완료 시간	___월 ___일 ___시(24시간 기준) ___분

2. 사건의 발생 장소 (구체적으로 ex. 자기집, 호프집 등)

3. 사건의 발생 장소의 특성 (ex. 외진곳, 사람들왕래 빈번, 혼잡, 어두운 곳 등)

4. 사건 당일 날씨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 인적 특성, 피해, 태도(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 A팀

구분		(가해자 또는 가해자에 가까운 사람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들)			
		1	2	3	4
인적 특성	성별				
	나이				
	복장	(ex. 정장, 운동복, 반바지 등)			
	직업				
	학력				
	말투	(ex. 사투리, 비속어 등)			
	주거상태	(예: 주소불명, 아파트, 주택거주 등)			
	혼인상태				
	음주	(예: 만취, 상당히 취함, 약간 취함, 무음주)			
	범죄경력				
	생활수준				
	팀내 관계*	(예: 동거가족, 기타 친척; 학교친구, 동네친구, 고향 친구, 직장동료; 단순 지인; 타인 등)			
팀간 관계*	(예: 동거가족, 기타 친척; 학교친구, 동네친구, 고향친 구, 직장동료; 단순 지인; 타인 등)				
피해 및 가해	신체피해				
	진단서				
	물적피해	(ex. 옷 찢김)			
	흥기사용여부				
	흥기종류				
	흥기입수방법				
	화해 또는 사건해결 시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				
對 경찰 태도	전체 태도	(ex. 협조적, 반항적, 순응적...)			
	욕설여부				
	신체공격				
	입력행사	(예: 경찰관계자에게 전화 등)			
기타 특이사항		(ex. 장애여부, 외국인 등)			

\* 가장 중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방과의 관계

○ B팀

구분		(가해자 또는 가해자에 가까운 사람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들)			
		1	2	3	4
인적 특성	성별				
	나이				
	복장	(ex. 정장, 운동복, 반바지 등)			
	직업				
	학력				
	말투	(ex. 사투리, 비속어 등)			
	주거상태	(예: 주소불명, 아파트, 주택거주 등)			
	혼인상태				
	음주	(예: 만취, 상당히 취함, 약간 취함, 무음주)			
	범죄경력				
	생활수준				
	팀내 관계*	(예: 동거가족, 기타 친척; 학교친구, 동네친구, 고향 친구, 직장동료; 단순 지인; 타인 등)			
	팀간 관계*	(예: 동거가족, 기타 친척; 학교친구, 동네친구, 고향 친구, 직장동료; 단순 지인; 타인 등)			
피해 및 가해	신체피해				
	진단서				
	물적피해	(ex. 옷 찢김)			
	흥기사용여부				
	흥기종류				
	흥기입수방법				
	화해 또는 사건해결 시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					
對 경찰 태도	전체 태도	(ex. 협조적, 반항적, 순응적...)			
	욕설여부				
	신체공격				
	압력행사	(예: 경찰관에게 전화 등)			
기타 특이사항		(ex. 장애여부, 외국인 등)			

\* 가장 중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방과의 관계

□ 폭력사건의 원인과 규모

1. 사건 관계자 수(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만)

- A팀: 총 \_\_\_\_ 명 (남 \_\_\_\_ 명, 녀 \_\_\_\_ 명)

- B팀: 총 \_\_\_\_ 명 (남 \_\_\_\_ 명, 녀 \_\_\_\_ 명)

2. 폭력의 촉발요인

A팀의 입장	B팀의 입장	경찰 의견

\*관찰자 의견

3. 사건의 공격자와 피해자

	A팀의 입장	B팀의 입장	경찰 판단	관찰자 의견
사건 원인제공자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최초 폭력행사자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주 공격자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주 피해자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____ 팀의 ____ 번

\*관찰자 의견

4. 제3자 개입여부

	A팀	B팀
사건과 간접 관계인		
가족		
변호인		

5. 개입한 제3자의 특성

	A팀	B팀
당사자와의 관계	__팀의 __과 __ 관계	
제3자의 개입 방식 (ex. 화해시도, 분쟁약화 등)		
제3자 개입의 결과 (ex. 사과, 분쟁해결, 별다른 역할 없음 등)		

경찰의 처리

1. 경찰이 알게 된 경로

	112신고	기타 방법 신고
당사자 신고		
가족 등 관계자 신고		
제3자 신고		
경찰 직접 인지		
기타방법 인지		

구체적으로:

2. 신고자의 특성

당사자 신고의 경우	___ 팀의 ___ 번	
가족 등 관계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	___ 팀의 ___ 번과 _____ 관계
	사건 인지 경위	
	나이	
	성별	
	직업	
제3자 신고의 경우	사건 인지 경위	
	성별	
	나이	
	직업	
경찰 직접 인지의 경우	사건 인지 경위	
기타방법 인지의 경우		

3. 경찰의 최초 현장대응

		A팀	B팀
체포	여부		
임의소환	여부		
	임의소환 사유		
비소환 (현장해결)	여부		
	현장해결 사유	(ex. 사건경미, 당사자 화해 등)	
연기	여부		
	연기사유	(ex. 진단서 필요, 응급치료필요, 조사불능(만취 등), 가해자 도주 등)	

구체적으로:

4. 최종 처리

		A팀에 대해	B팀에 대해
정식사건처리(경찰서로 송치)	죄명		
	송치일시		
	송치방법		
훈방	사유		
	인계자		

\* 구체적 처리 경위

기타 행정기록 (나중에 기록)

1. 사건고유번호

관찰자	조사지	일차	사건	조사지

\* 조사지:

- 충남 00경찰서 00지구대: 11    - 충남 00경찰서 00파출소: 12
- 서울 00경찰서 00지구대: 21    - 서울 00경찰서 00파출소: 22
- 서울 00경찰서 00지구대: 23
- 경기 00경찰서 00지구대: 31    - 경기 00경찰서 00파출소: 32
- 경기 00경찰서 00파출소: 33

\* 관찰자

- 박00: 1    - 김00: 2    - 강00: 3    - 장00: 4

2. 추후 추가정보 및 기타 첨부내용

# 덧붙임 3

## 폭력연구 관찰기록표

□ 폭력연구 관찰내용.

- 사건의 개요 (일시, 장소, 주소, 알게 된 방법 등)
- A팀의 인적특성-관찰 (성별, 나이, SES, 관계, 음주상태 등)
- B팀의 인적특성-관찰 (성별, 나이, SES, 관계, 음주상태 등)
- 피해정도-관찰
- 담당 경찰관 -기본정보, 면접 및 관찰
- 폭력의 원인 -관찰 및 받아 적기

당사자 진술 및 태도	경찰관 진술 및 태도	관찰내용

- 당사자들의 전반적 태도 및 사건처리 의견- 관찰 및 받아 적기

당사자 진술 및 태도	경찰관 진술 및 태도	관찰내용

- 처리결과
  
- 관찰자 종합의견-사건이 처리된 주된 이유





12. 범행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경(24시간 기준)

13. 범행장소

- |                   |                       |
|-------------------|-----------------------|
| 1) 노상             | 8) 요식업소/유흥업소          |
| 2) 가해자의 집         | 9) 시장/상가/편의점          |
| 3) 피해자의 집         | 10) 공공장소              |
| 4) 가해자의 근무지       | 11) 교통시설내             |
| 5) 피해자의 근무지       | 12) 숙박업소              |
| 6) 가해자 피해자 공동의 집  | 13) 공범자의 집            |
| 7) 가해자 피해자 공동 근무지 | 1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14. 범행 발생시의 상황

- |                      |                       |
|----------------------|-----------------------|
| 1)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음주   | 6) 가해자와 제3자간 다툼       |
| 2) 가해자와 피해자간 대화(비음주) | 7) 피해자와 제3자간 다툼       |
| 3) 가해자와 피해자간 다툼      | 8) 가해자가 일하는 중         |
| 4)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일함   | 9) 피해자가 일하는 중         |
| 5)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마주침 |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15. 범행 당시 제3자의 존재여부

- 1) 없었음      2) 있었음      3) 미상

16. 범행 당시 제3자가 있었던 경우 제3자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 |                   |                     |
|-------------------|---------------------|
| 1) 가해자의 가족        | 7) 가해자의 직장동료        |
| 2) 피해자의 가족        | 8) 피해자의 직장동료        |
| 3)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가족 | 9)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직장동료 |
| 4) 가해자의 친구        | 10) 가해자의 이웃         |
| 5) 피해자의 친구        | 11) 피해자의 이웃         |
| 6)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친구 | 12)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이웃  |

- 13) 가해자와 안면있는 사이
- 14) 피해자와 안면있는 사이
- 15) 가해자 피해자와 안면있는 사이
- 16) 전혀 모르는 사이
- 17) 기타(구체적으로 )

17. 범행 당시 제3자의 역할

역할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
가. 범행의 동기나 계기를 제공			
나. 싸움을 부추김			
다. 싸움을 막으려고 하거나 말림			
라. 가해자 비난			
마. 피해자 비난			
바. 방관			
사. 제3자를 부름			

18. 사건 이후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제3자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 1) 가해자의 변호인
- 2) 피해자의 변호인
- 3) 가해자의 가족
- 4) 피해자의 가족
- 5)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가족
- 6) 가해자의 친구
- 7) 피해자의 친구
- 8)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친구
- 9) 가해자의 직장동료
- 10) 피해자의 직장동료
- 11)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직장동료
- 12) 가해자의 이웃
- 13) 피해자의 이웃
- 14)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이웃
- 15) 가해자와 안면있는 사이
- 16) 피해자와 안면있는 사이
- 17) 가해자 피해자와 안면있는 사이
- 18) 전혀 모르는 사이
- 19) 기타(구체적으로 )

19. 사건 이후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제3자의 역할

역할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
가. 화해 시도			
나. 합의 시도			
다. 분쟁 악화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표 II  
(가해자와 관련된 사항)

장소	기록자	번호		

20. 성 별

1) 남자

2) 여자

21. 연 령

만\_\_\_\_\_세

22. 주거지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 면 등

23. 교육수준

1) 무학

4) 고등학교

7) 미상

2) 초등학교

5) 대학교

3) 중학교

6) 대학원 이상

24. 졸업여부

1) 재학

2) 중퇴

3) 졸업

25. 배우자 유무

가. 있음

1) 미혼이지만 동거

2) 기혼

3) 이혼후 동거

나. 없음

4) 미혼

5) 기혼이지만 별거





37. 성장기에 당한 주된 학대

- |           |           |       |
|-----------|-----------|-------|
| 1) 없음     | 4) 성적 학대  | 7) 미상 |
| 2) 신체적 학대 | 5) 방임, 유기 |       |
| 3) 정서적 학대 | 6) 기타     |       |

38. 학대가해자

- |       |         |       |
|-------|---------|-------|
| 1) 없음 | 4) 친척   | 7) 미상 |
| 2) 부  | 5) 동네이웃 |       |
| 3) 모  | 6) 기타   |       |

39. 현재 가족과의 관계

- |          |              |       |
|----------|--------------|-------|
| 1) 원만한 편 | 3) 원만하지 못한 편 | 5) 미상 |
| 2) 보통    | 4) 기타        |       |

40. 평소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신체적 학대받은 정도

- |        |        |
|--------|--------|
| 1) 없음  | 3) 가끔  |
| 2) 일회적 | 4) 상습적 |

41.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람

- |           |            |            |
|-----------|------------|------------|
| 1) 가해자 본인 | 3) 가해자의 모  | 5) 가해자의 자녀 |
| 2) 가해자의 부 | 4) 가해자의 형제 | 6) 기타      |

42. 평소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받은 정도

- |        |        |
|--------|--------|
| 1) 없음  | 3) 가끔  |
| 2) 일회적 | 4) 상습적 |

43.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

- 1) 가해자 본인                      3) 가해자의 모                      5) 가해자의 자녀
- 2) 가해자의 부                      4) 가해자의 형제                      6) 기타

44. 평소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적 학대받은 정도

- 1) 없음                                  3) 가끔
- 2) 일회적                              4) 상습적

45.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

- 1) 가해자 본인                      3) 가해자의 모                      5) 가해자의 자녀
- 2) 가해자의 부                      4) 가해자의 형제                      6) 기타

46. 평소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도

- 1) 없음                                  3) 가끔
- 2) 일회적                              4) 상습적

47. 평소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도

- 1) 없음                                  3) 가끔
- 2) 일회적                              4) 상습적

48. 평소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정도

- 1) 없음                                  3) 가끔
- 2) 일회적                              4) 상습적

49. 과거 정신질환, 약물복용 여부

역할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
가. 정신질환 경력			
나. 마약류복용			
다. 본드 등 흡입			

50. 범행 시 상태

가. 음주

- |                   |                 |
|-------------------|-----------------|
| 1) 전혀 마시지 않았다     | 3) 취했으나 의식은 있었다 |
| 2) 약간 마셨다(취하지 않음) | 4)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 |

나. 본드 등

- |             |          |
|-------------|----------|
| 1) 복용하지 않았다 | 2) 복용하였다 |
|-------------|----------|

다. 마약류

- |             |          |
|-------------|----------|
| 1) 복용하지 않았다 | 2) 복용하였다 |
|-------------|----------|

라. 정신상태

- |       |         |
|-------|---------|
| 1) 정상 | 2) 정신이상 |
|-------|---------|

마. 감정상태

- |       |        |
|-------|--------|
| 1) 좌절 | 3) 두려움 |
| 2) 분노 | 4) 기타  |

51.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 1) 원만하였다
- 2) 원만하지 못했다
- 3)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다(당일 만남 사이 포함)
- 4) 미상

52.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 1) 좋은 편
- 2) 보통

- 3) 나쁜 편
  - 4)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다(당일 만남 사이 포함)
  - 5) 미상
53.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 존재여부
- 1) 갈등이 있었음
  - 2) 갈등이 없었음
  - 3) 사건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다(당일 만남 사이 포함)
  - 4) 미상
54.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
- |           |             |              |
|-----------|-------------|--------------|
| 1) 애정문제   | 4) 학대       | 7) 일, 업무상 문제 |
| 2) 가정불화   | 5) 상속이나 보험금 | 8) 금전문제      |
| 3) 모욕, 비하 | 6) 채권 채무 관계 | 9) 기타        |
55. 갈등의 원인 제공자
- |        |        |
|--------|--------|
| 1) 가해자 | 3) 상호적 |
| 2) 피해자 | 4) 기타  |
56. 갈등의 지속 여부
- |        |        |        |
|--------|--------|--------|
| 1) 지속적 | 2) 가끔씩 | 3) 일회성 |
|--------|--------|--------|
57. 범행동기
- |         |                 |
|---------|-----------------|
| 1) 모욕   | 6) 분노           |
| 2) 학대   | 7) 술에 취해서       |
| 3) 질투   | 8) 사소한 말다툼 하다가  |
| 4) 보복   | 9) 돈을 얻기위해      |
| 5) 스트레스 | 10)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

- 11) 싸움을 말리다가  
 12) 다른 사람이 시켜서  
 13) 기타(구체적으로 )

58. 범행시 가해자의 행동

역할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
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			
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다. 말로 피해자를 위협			
라. 피해자를 할کم			
마. 피해자를 물음			
바. 피해자 머리를 잡고 흔들			
사. 피해자의 목살을 잡음			
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림			
자. 피해자를 발로 참			
차. 도구로 피해자위협			
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폭행			
타. 상황을 조정, 진정시키려는 시도			
파.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			

59. 범죄 유발 및 진행 요인

역할	1) 가해자	2) 피해자	3) 제3자	4) 미상
가. 먼저 욕설을 한 사람				
나. 먼저 폭행을 한 사람				
다. 먼저 도구를 사용한 사람				
라. 주된 공격을 한 사람				

60.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 1) 피해 없음                      3) 2-3주 상해                      5) 9주이상 상해  
 2) 가벼운 상해                      4) 4-8주 상해                      6) 기타

61. 가해자의 재산피해의 정도

- 1) 없음                                      2) 있음 (구체적으로: )

62. 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

- |           |                |
|-----------|----------------|
| 1) 없음     | 3) 사전에 준비하지 않음 |
| 2) 사전에 준비 | 4) 미상          |

63. 범행시 사용한 도구

- |               |                                   |
|---------------|-----------------------------------|
| 1) 없음         | 5) 유리병                            |
| 2) 막대기, 몽둥이   | 6) 의자 등 가구                        |
| 3) 칼, 도끼 등 흉기 | 7) 기타(구체적으로:                    ) |
| 4) 돌, 벽돌      |                                   |

64. 범행후 가해자의 태도

- |                 |                 |
|-----------------|-----------------|
| 1)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 4)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
| 2)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 5) 미상           |
| 3)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                 |

65. 가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 |            |       |
|------------|-------|
| 1) 전적으로 시인 | 3) 부인 |
| 2) 일부 시인   | 4) 미상 |

66. 검거 경위

- |           |                  |
|-----------|------------------|
| 1) 현행범    | 5) 경찰등의 인지 탐문    |
| 2) 자수     | 6)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
| 3) 피해자 신고 | 7) 불심 검문         |
| 4) 제3자 신고 | 8) 기타            |

67. 구속여부

- |       |        |       |
|-------|--------|-------|
| 1) 구속 | 2) 불구속 | 3) 보석 |
|-------|--------|-------|

68. 검찰 처리내역

- |         |            |         |
|---------|------------|---------|
| 1) 구공판  | 5) 공소권 없음  | 9) 죄가안됨 |
| 2) 구약식  | 6) 소년부 송치  | 10) 기타  |
| 3) 기소유예 | 7) 가정법원 송치 |         |
| 4) 기소중지 | 8) 혐의없음    |         |

69. 구형량

- |                 |                 |
|-----------------|-----------------|
| 가. 벌금 _____만원   | 라. 보호관찰 _____개월 |
| 나. 징역 _____개월   | 마. 사회봉사 _____개월 |
| 다. 집행유예 _____개월 | 바. 기타_____      |

70. 선고형량

- |                 |                 |
|-----------------|-----------------|
| 가. 벌금 _____만원   | 라. 보호관찰 _____개월 |
| 나. 징역 _____개월   | 마. 사회봉사 _____개월 |
| 다. 집행유예 _____개월 | 바. 기타_____      |

71. 변호사 선임 여부

- |           |       |       |
|-----------|-------|-------|
| 1) 변호사 없음 | 2) 사선 | 3) 국선 |
|-----------|-------|-------|

72. 최종판결법원

- |         |         |        |
|---------|---------|--------|
| 1) 지방법원 | 2) 고등법원 | 3) 대법원 |
|---------|---------|--------|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표 III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

장소	기록자	번호		

73. 피해자 수

\_\_\_\_\_명

74. 피해자 성별

1) 남자

2) 여자

3) 남녀 혼합

75. 피해자의 연령

만\_\_\_\_\_세

76. 피해자의 직업

\_\_\_\_\_ (직접 기재)

77. 가해자와의 관계

1) 부모

6) 애인

11) 안면만 있는 사이

2) 배우자

7) 친구

12) 당일 처음 만난 사이

3) 자녀

8) 직장동료

13) 모르는 사이

4) 형제

9) 일관계로 아는 사이

14) 기타

5) 친척

10) 동네사람

78. 범행시 피해자의 상태

가. 음주

1) 전혀 마시지 않았다

3) 취했으나 의식은 있었다

2) 약간 마셨다(취하지 않음)

4)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



80.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 |           |            |                     |
|-----------|------------|---------------------|
| 1) 피해 없음  | 3) 2-3주 상해 | 5) 9주이상 상해          |
| 2) 가벼운 상해 | 4) 4-8주 상해 | 6) 기타(            ) |

81. 피해자의 재산 피해의 정도

- |       |                           |
|-------|---------------------------|
| 1) 없음 | 2) 있음(구체적으로:            ) |
|-------|---------------------------|

82. 피해자의 감정 상태

- |           |               |       |
|-----------|---------------|-------|
| 1) 처벌을 원함 | 2) 처벌을 원하지 않음 | 3) 미상 |
|-----------|---------------|-------|

83.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

- |           |                |
|-----------|----------------|
| 1) 진단서 제출 | 2)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
|-----------|----------------|

84.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여부

- |           |                |
|-----------|----------------|
| 1) 합의서 제출 | 2) 합의서 제출하지 않음 |
|-----------|----------------|



연구총서 10-10

##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발행 / 2010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봉로 114

(02)575-5285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849-6 93330